

2002년 봄호

언론중재



특 집

미디어정치시대의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 언론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 판결에 나타난 선거보도의 문제점
-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논문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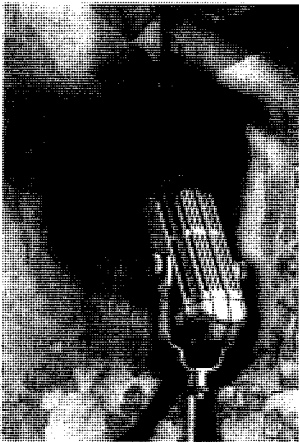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02. 봄

차 례



기간/2002년 봄호 • 제22권 • 제1호/통권82호
 인쇄/2002년 3월 25일 • 발행/2002년 3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이 병 훈
 인쇄인/이 병 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특 집

미디어정치시대의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 4 • 언론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 김서중
- 15 •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 김동규
- 27 • 판결에 나타난 선거보도의 문제점 • 김기중
- 39 •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공정성
확보 방안 • 이준웅

연구논문

- 53 •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 권기훈

기획연재

- 72 •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 주소 • 한영학

언론보도와 인권권

- 82 • 스포츠신문의 연예인 보도와 인권권
보호 • 성동규

통계보고

- 88 • 2001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위원칼럼

- 115 • 언론중재와 판결 • 황성재

해외동향

- 118

자 료

- 124 • 언론중재신청사례
- 136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46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8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법

- 162

언론법제관련문헌

- 166

위원회소식

- 168

중재위원명단

- 170

지상중계

- 172 • On-Line 중재상담실

-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특 집

미디어정치시대의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자유와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

김 서 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 신문학과 조, 동 대학원 박사
- 광주대 출판광고학과 교수
- 한국언론정보학회 총무이사 역임
- 『한국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 (공저)
-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공저)
- 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올해 치러질 두 개의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에 관한 법률(이하 '선거법')에 따라 다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다. 2000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당시에는 언론
들이 기사, 사실, 칼럼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더니 2002년
에는 그런 사실과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선거법의 위헌
논란 등을 감안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법을 신축적으로 해
석하여 운용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개정
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선거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
고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다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
다.

그동안 언론운동단체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선거기간 동안 언론
의 보도 행태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
기하였다. 그런 배경 아래 2000년 2월 16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
거기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 제기되었으며,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정기간행물의 선
거보도 내용에 관해 심의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
닌가. 더군다나 위헌 결정을 받은 사과문 게재 조항이나,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자유
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언론의 왜곡된 보도
행태가 또 다른 권리 즉 국민의 적절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과 견주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우선
언론자유 의미의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자유는 천부 인권의 개
념에 따른 불가침의 영역인가,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
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와 동격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자유
는 보장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언
론에 대한 규제 정책의 도입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에
근거해서 현행 선거법의 선거기사심의 조항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점들을 논해보고자 한다.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와 관련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아직도 있어

I. 언론자유 의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곧 행복이라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각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개인적이고, 불가침적이며, 자연권적인 것이며, 이는 자유주의의 산물이었다.¹⁾ 즉,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년 6월)에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래적(生來的)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고유한 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천부인권으로 본 것은 아니고 법률적 권리로 보았으며, 법률로써 제한(법률유보)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하지만 제3공화국 헌법 이후부터는 천부인권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즉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헌법10조)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행 헌법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천부인권으로 인정하는 것과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발생시키는 법률상의 권리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보는 Mill의 견해가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한 사람만이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킬 권리가 없다. ... 만일 그 의견이 옳은 경우 반대자들은 오류를 버리고 진리를

따를 기회를 빼앗긴다. 또 만일 그 의견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들은 진리와 오류의 충돌이 가져오는 선명한 인상-이것은 오류를 버리고 진리에 따르는 이익과 거의 마찬가지로 큰 이익이다-을 상실하는 것이다.”²⁾

그러나 Locke식의 천부인권 즉 ‘개인의 불가침적 권리’로 보는 견해와 Mill의 견해는 차이가 있다. Mill은 한 사람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의 침해가 된다는 공리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논리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언론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 즉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초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끔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로 오인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사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사가 ‘사회적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 즉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

1)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2-6, 참조.

2) 프레드 시버트, 테오도어 피터슨, 윌버 슈랍 저, 강대인 역, 『언론의 4이론』, 나남, 1991, p.70 재인용.

제 아래서이다. 언론사가 사유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의 다양한 견해 중 일부만이 유통되는 상황이라면 언론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20세기에 이르러 매체의 집중화는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체의 집중화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며, 수용자의 매체 접근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언론의 자유가 다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5·16 군사정권에서 통과된 '신문 및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과 정부의 언론 기업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졌다.³⁾ 이런 조건에서 언론이 사유화되거나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경향을 공유한다면 사회 민주화는 불가능해진다. 언론에 대한 외부 규제의 주장이 대두되는 것은 이런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Mill이 주장하듯이 하나의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보도의 내용을 심의하고자 하는 의도가 혹 보도 내용에 간섭하여 언론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된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선거기사심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그동안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II.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비판들

방송의 경우는 오랫동안 정권의 통제 아래

정부 여당에 유리한 선거보도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민주화의 노력과 정권의 성격 변화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단지 본 글에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의 의미를 따지고자 함으로 신문의 보도 행태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정권의 통제로부터 일정부분 자유로워진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언론은 편파적인 선거보도를 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언론이 객관보도, 공정보도를 하지 못하고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에게 유리한 편파보도를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⁴⁾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서 언론의 왜곡보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정권의 통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성격과 언론과 정치의 유착관계, 그리고 언론의 선거보도 관행 등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2년과 1997년 대선에서도 특정 언론이 특정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다. 즉 언론의 권력화 현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론과 정치의 유착 관계는 그 도를 넘어 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언론만이 아닌 대다수의 언론이 선거보도에서 왜곡 편파보도의 사례들을 남기고 있는 것은 언론의 선거보도 관행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백선거는 우리의 선거보도 관행의 문제점을

3) 주동환, "신문정책과 신문산업의 성장", 김남석 외 편, 『한국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 연암사, 2000, pp.154-157. 참조.

4) 김정탁, "정치사회화 모델에 입각한 한국인의 투표행태 연구 : 제 13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1.

대다수 언론이 왜곡·편파보도의 사례를 남기고
있는 것은 언론의 선거보도 관행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⁵⁾

첫째, 경마식 보도 관행이다. 즉 입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우열의 차'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한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우열'을 차별화시키고, '우열'을 구체화하여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잘 동원되는 것이 여론조사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해석상의 잘못이나, 부정확성, 과장된 제목 달기 등을 통해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둘째, 선거를 입후보자간의 갈등 및 대립구조로 본다는 것이다. 입후보자간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전장구조(戰場構造)'로 보도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연, 혈연, 학연으로 연결된 전국적 대립 갈등 구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라지는 것이다. 셋째, 추문밝히기식의 폭로보도 경향이 높다고 지적한다. 선거를 전체적으로 타락한 분위기로 묘사함으로써 냉각된 선거분위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넷째, 이런 보도 경향을 갖다 보니 선거 쟁점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선거에서 사실상 쟁점이 부족했기보다는 언론이 선거의 쟁점을 못 읽거나, 선거 쟁점 보도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선거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대신, 정치외적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 경향이 있다. 여섯째, 과거에는 여당 중심의 입후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특정 후보가 부각되는 보도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특

정 후보가 중요한 '위치'와 넓은 '지면' 할애를 통해 부각된다는 것이다. 일곱째, 사건의 성격 즉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을 축소, 확대, 은폐하여 보도한다는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시 '노사쟁의', '마유미 사건(KAL기 폭파 사건)', '적군파 침입 경계'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확대 보도되었던 반면, 1992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의 '한택회 사건', '안기부 직원 흑색선전 사건', '군 부재자 투표 부정 사건' 등에 대해서는 축소 보도 경향을 띠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덟째, '미확인', '추측성' 보도가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아홉째, 이런 보도들은 대개 가십성 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 정치적 냉소주의와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들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 선거 양상을 집중 보도하여 공명선거의 중요성보다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유발시킨다.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시민언론운동 단체들이 1992년부터 선거 기간마다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모니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그다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1997년 대통령선거와 2000년 4월 13일 행해진 16대 총선 당시에도 언론의 편파적 왜곡보도는 여전했다고 할 수 있다.

김서중⁶⁾은 16대 총선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지역감정 보도는 물론 경마저널리즘식 보도, 여론조사 보도, 정책 공방 보도, 소수 정당 배제 등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5) 백선거, "한국언론의 파행적 선거보도 관행",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언론 2』, 1992, pp.42-50 ; 백선거, "한국신문의 선거보도경향과 심층구조:제15대 총선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1996년 겨울호, pp.125-130.

6) 김서중, "과거 관행을 되풀이하는 언론의 선거보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 자료집, 2000.

지적한다. 또한 비록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특정 정당에 유리한 보도 역시 일부 신문에서는 찾아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언론은 정치인들의 선거 전략에 발 맞추어 지역 감정의 강화에 기여하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특히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운동을 역이용하여 정당 내 특정 정파들이 권력을 강화한 결과 낙천된 인물들이 창당을 하면서 지역 감정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였다. 이러한 권력 쟁탈의 정상배적 행위에 대해 언론은 적절한 비판을 가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정략적 행위에 놀아나거나 이를 적절히 이용한 언론 상품을 만들어 냈다.

이런 지역 구도의 보도에는 경마저널리즘식 여론조사 보도가 가세했다. 여론조사는 지역구별 후보 지지도 조사에 집중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기보다는 누가 앞서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광판 구실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여론 조사 보도에서 '아성', '티밭'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결국 지역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각종 선거에 단골로 등장했던 색깔론 역시 이를 비판을 하는 듯 했으나 오히려 그 확산에 기여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즉 망국병이라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지만 실제 보도내용에서는 그 발언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성 발언을 그대로 중계해서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근거 없는 색깔론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선거에 임박하면서 각 당은 소위 엄청난 양의 그러나 속 빈 강정식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언론은 이들 공약의 허와 실을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알릴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책에 대한 각 당의 공방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치중하였다. 정책에 대한 평가도 선심성 공약(사실이기는 하지만)이라는 일방적인 비판만 할 뿐 무엇이 선심성이고 무엇이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16대 총선 보도를 요약하면 지역 감정, 여론조사, 정책보도, 색깔론 등 모든 쟁점에서 언론의 주장과 언론 보도의 현실이 따로 놀았다는 점이다. 비록 언론으로서 정치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느낀다 하더라도, 과거의 관행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지역감정 발언을 비난하면서 지역 감정 발언을 전달하고, 정책 대결을 주장하면서 정책 공방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색깔론의 시대착오를 지적하면서 색깔론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관행을 보였다.

이러한 선거보도의 문제점은 언론 외부에서만 느낀 것은 아니다. 언론사 또는 언론노조들은 선거 기간이 되면 선거보도준칙을 만들어 공정한 선거보도를 할 것을 표방하였다. 1992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세 단체가 대통령선거 보도준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선거를 앞두고 보도준칙이 만들어진 것으로는 처음이었다.

이 준칙은 "공정성 유지,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유권자 계도 및 선거부정 감시, 언론의 자기역할 감시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하는 세부적인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은 4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당시 언론 세 단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언론감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1회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문화일보가 2002년 양대 선거를 위해

언론의 왜곡된 선거보도 관행을 감안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가능

20개항으로 구성되는 선거보도준칙을 발표하였다. 준칙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정책대결에 초점을 맞춘 보도, 엄정중립 견지,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이슈 발굴, 도덕성과 국가관, 병역, 세금, 재산 등에 대한 점검, 공약 분석, 지역 감정 조장 비판, '돈 선거' 추적 보도 등등의 항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외부 모니터 제도를 도입, 준칙 실천을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매일이나 중앙일보 역시 경마식 보도, 후보 개인의 홍보성 기사, 색깔론이나 검증 안된 의혹 중계, 정책보다 인물 중심의 경쟁 유도, 소수정당에 무관심한 태도 등을 지양하겠다는 선거보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술한 대로 언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언론의 왜곡된 선거보도 관행들을 감안할 때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부에 의한 선거기사심의는 가능한 것인가. 언론자유 침해는 아닌가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식은 남아 있다.

그동안 신문 보도의 문제점은 명백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명백히 잘못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쳐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보도 행태이지만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선거기간 중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잘못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선거법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선거보도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개정하여 2000년 2월 16일 개정 선거법이 발효되었다. 이 개정의 주요 조항 중 하나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조항이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고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고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선거법의 제8조의 3은 제256조의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와 연관되어 있다. 즉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원래 선거법 개정안은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해 1년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크자, 이는 철회하였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공정보도가 아닌 경우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년간 업무정지 조항을 철회하는 것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징적인 공정보도감시기관으로 인식했던 언론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한 개정 선거법에 문제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은 선거기사심의위원장을 맡았던 이창구 변호사가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과문 게재 조항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부터이다. 이창구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 조항은 언론사측의 이의제기 절차 없이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등 제재를 결정하도록 돼”있어 문제이며, “위헌(違憲) 소지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령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⁷⁾ 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 국회가 열리는 대로 문제 조항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하

라”고 지시했다.⁸⁾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징계결정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로 제한하는 한편 위헌가능성이 제기된 사과문 게재 결정은 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며, 또한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언론인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⁹⁾

이 결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되었으나, 그 이후 선거법 개정 없이 또 다시 2002년 양대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IV. 2000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평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법에 근거하여 전문 21조로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을 제정하고 선거기사심의기준을 공표하여 이에 따라 활동을 하였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 심의를 통해 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위반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등의 게재를 명할 수 있고, 후보자들로부터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거나 반론보도청구를 받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 따라 활동하였다. 물론 이에 불응할 경우 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실형 또는 벌금형을 매길 수 있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선거기사심의위원장의 문

7) 중앙일보, 2000년 3월 2일 1면.

8) 중앙일보, 2000년 3월 2일 1면.

9) 동아일보, 2000년 3월 4일 2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주의나 경고 결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

제 의식과 언론의 문제제기 타인지 위원회는 위원장이 스스로 한정한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조차도 하지 않았다(물론 청구된 사항이 기각할 만한 사항으로서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94건에 대해 주의, 경고 및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위반 94건 중 경고는 58건, 주의는 35건으로 경고가 61.7%를 차지했다.¹⁰⁾

경고 및 주의결정을 받은 93건의 기사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①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76.3%인 71건, ②여론조사보도 요건미비가 15.1%인 14건, ③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이 7.5%인 7건, ④상업광고제한 위반이 1.1%인 1건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특정정보 및 특정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결정을 내렸으며 특정정보 및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 라도 기사크기가 비교적 작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주의와 경고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결정이다.

이러한 평가는 위원회가 발한 주의·경고가 같은 신문사에 같은 유형으로 2, 3번에 걸쳐 내려졌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중앙일간지의 경우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는 여론조사 보도 요건 미비로 각각 3건, 2건, 2건씩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지방지의 경우도 16개의 신문이 공정성·형평성의 위반으로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게다가 그 중 4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신문도 5개 이상이 된다.

이는 결국 주의·경고 조치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물론 절대 수로 보면 주의·경고 수는 많지 아니하고, 이것이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언론이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불공정 보도 행위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이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모든 기사를 완벽히 심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 시민언론운동 단체들에서는 모니터 결과 매일 많은 건수의 왜곡보도된 기사들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3건의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가 각각 취하와 기각으로 결정난 만큼 다른 활동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또한 언론보도의 현실에 못 쫓아가는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위원회는 엄격하게 심의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출발하였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규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심의기준에 대해 과연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즉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 행사를 할 만큼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화해가 아닌(정기간행물등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사과문, 반론보도문, 정정보도문의 게재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이었다.

심의기준은 추상적 원칙을 강조하는 총칙에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 등

10)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2000, p.23.

11) 앞의 책, p.34, p.36 표 참조.

을 선언하고, 기사, 표제 및 사진, 광고 등에 관해 각각의 장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뷰 기사의 경우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견해나 반응을 묻는 기사는 상반된 견해를 가능한 한 균형있게 보도하여야 한다', '인터뷰 기사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인터뷰한 상대방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 게재하여야 한다' 등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귀속되는 것이다. 물론 법은 현실의 모든 상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추상화하여 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법관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의위원들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란 애초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V. 선거법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관련 쟁점 조항

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심의기준에 대해 법은 공정성 또는 공정 여부라는 추상적 개념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정성을 '선거기사심의기준'에 좀 더 상세히 명시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는 사과문 게재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91년 4월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

한 처분'에 관해 사과광고가 인정되어 왔던 과거의 판례를 뒤집었다(89헌마160). 이는 사과광고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사과문 게재 결정 조항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셋째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언론사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배제한 상태에서 선거법 제256조는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실형, 벌금형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직접 실형 또는 벌금형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상 위원회가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술한대로 언론의 선거보도는 지금까지 학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점에서 언론의 자유가 천부인권적 자유로서 신문사에게 부여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자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언론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으며, 제약 대상에는 불공정하고, 왜곡된 기사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의 내용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한대로 법률로써만 그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 제36조 2항). 현재의 위원회 관련 선거법 조항들은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부족하다.

법적인 보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00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위원회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니 사회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법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조항은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야

VI.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 관련 규정은 그 활동의 실질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양삼승¹²⁾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현재의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할 것을 주장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하나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반론보도청구 기능을 흡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에 일정한 성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좀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선거기사에 대한 권한도 확실하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정간물법에 ‘재판상의 화해’에 준하는 ‘중재’를 법적으로 실질적인 중재로 바꾸자는 것이다. ‘중재’라는 개념은 장래에 생길 또는 현재에 이미 발생한 어떤 분쟁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사전에’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로 약속·합의한 이후에만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재인의 중재가 내려진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승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로서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현재의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이에 맞게 수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행의 법률규정에 의하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법원에 제소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정 전치주의가 반론보도청구의 경우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정보도청구도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조정전치주의의 강요가 불필요한 또하나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법원에서의 절차를 피하여 싼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로서 분쟁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는, 결코 논리의 문제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중재위원회의 실무처리 현황이 어떠한지의 실증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선거기간 중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로 통합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삼승의 주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를 담당하며, 선거기간의 피해구제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몫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양삼승의 주장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주장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제안으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과 연관된 위법성 논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그런 제한이 있는 한 위원회의 활동이 신문기사심의에 적극적일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유를 위해서 신문의 기사를 심의하고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를 다룬다는 명분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위법성을 띠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전제 아래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재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지

12)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않은 것에 대해 자동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제256조 2항은 위원회가 선거법의 여타 규정에 따른 불공정 보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심판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원회에 과잉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길이다.

둘째, 게재 결정에 위헌성 시비가 있는 '사과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첫째 제안과 같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보장된다면 오히려 조직을 강화하여 선거보도를 하고 있는 모든 정간물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매체간 공정성을 위해서도 그러하며, 심의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넷째, 현재 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에서 언론인 단체를 배제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 현 위원의 구성에서 보듯 전직 언론인의 참여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은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법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존재가 그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권한 행사를 자제하며, 실질적으로 기사

내용을 심의,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때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서중, "과거 관행을 되풀이하는 언론의 선거보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의 왜곡 편파 보도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 자료집, 2000, pp.3-7.
- 김정탁, "정치사회화 모델에 입각한 한국인의 투표 행태 연구: 제 13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1, pp.9-30.
- 백선거, "한국언론의 파행적 선거보도 관행",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언론 2』, 1992, pp.34-56.
- 백선거, "한국신문의 선거보도경향과 심층구조: 제15대 총선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1996년 겨울호.
- 양상승, "'언론평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 주동환, "신문정책과 신문산업의 성장", 김남석 외 편, 『한국언론산업의 역사와 구조』, 연암사, 2000, pp.151-178.
- 프레드 시버트, 테오도어 피터슨, 윌버 슈람 저, 강대인 역, 『언론의 4이론』, 나남, 1991.
-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언론중재위원회,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백서』, 언론중재위원회, 2000.
- Mill, John Stuart, On Liberty, ed. by George H. Sabine :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1.

특 집

미디어정치시대의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김 동 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 서강대 신방과 및 동 대학원 석·박사
- ☐ 건국대 언론학(신문·방송) 주간
- ☐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공저)
- ☐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공역)

I. 문제 제기

올해는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지자체 선거 등 양대 선거가 있어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인지 언론계의 관심 또한 연초부터 선거로 모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언론사의 후보 공개지지 문제가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특정후보 편들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언론도 이제는 미국처럼 공개적으로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언론구조의 특성상 언론사의 특정후보 지지와 같은 정치적 입장 표명이 자칫 사세 확장이나 이해관계에 기울어져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 입장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논의가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기존 선거보도의 공정성 시비를 통해 살펴보고 나아가 찬·반논의의 핵심 주장과 쟁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의 경우엔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입의 가능성 여부와 성공의 조건들을 법적 측면과 우리 언론 문화의 특성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거보도와 공정성 시비

미국의 경우엔 일반적이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 특정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도 법정소송이 이어질 정도로 번번이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곤 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언론이 역대 선거 특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겉으로는 공정보도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보도를 해왔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회자되었던 일부 언론의 '대통령 만들기'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2001년 말 한국기자협회가 전국의 신문방송기자 503명을 대상을 한 의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7.2%가 언론사의 '특정후보 편들기'를 역대 선거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선거 보도 현장에서 활동 중인 언론인들 스스로가 공정성 시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선거 보도와 관련하여 학계는 물론 언론계 내에서 일관되게 지적해온 문제점 중 하나가 불공정 편파 보도였다.¹⁾

물론 여기서 편파·불공정 시비는 곧바로 특정 정당 편들기, 특정 후보 편들기로 정의된다. 불공정 편파 보도란 외양상으로는 기사의 위치 선정, 표제 및 부제의 크기, 할당 지면의 크기, 사진 첨부, 불균형 등으로 나타나며, 질적으로는 기사 내용에 잠재되어 있는 선호도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기사의 위치나 양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지면 배분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안들을 특정 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이 되거나 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때로는 은폐시키는 것이다.²⁾

이렇듯 편파적인 선거 보도가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된 데는 우리 언론의 전개과정과 그 정치적 성격 그리고 후진적 정치 풍토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³⁾

구체적으로 해방 직후 국내 정치 판도는 좌우익으로 극심하게 대립되었으며 언론 역

시 완전히 정론지로서 좌우로 갈라져 어느 한쪽을 지지했으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전쟁을 거치면서 좌익세력의 몰락으로 정치 판과 언론계가 보수일색이 되자 한국 정치는 정권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나뉘고 언론 역시 같은 보수이면서도 여당지, 야당지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아래서 언론의 공정한 선거 보도는 원천적으로 그 개념조차 성립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4·19 이후 과도정권 아래서 선거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지만 5·16으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계는 다시 과거와 같은 여당지와 야당지의 구도로 전환되었고, 체육관 선거로 상징되는 유신체제 아래서는 아예 선거의 공정보도 문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신군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6·29 선언 이후 실시된 '87·'92·'97년의 대선에서 정치 구도가 민주와 반민주로 변하면서 언론도 과거의 여당지 대 야당지 구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였지만 군부 대 민간 세력, 보수 대 진보 등 미묘한 이념과 색깔론 그리고 지역감정 대립으로 공정성 시비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특히 '97년 선거에서는 특정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 '이기면 관군(官軍)이요 지면 적군(敵軍)'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꼴이 되었다는 평가다.

한마디로 우리 언론의 선거 보도 역사는 걸

1) 권혁남, "텔레비전의 15대 대통령 선거보도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3-5호, 1999, pp.5-7.

2) 백선기, 『보도의 기호학』, 성대 출판부, 1995.

3) 남시옥, "선거 사실 '중립만이 숲은 아니다'", 관훈저널, 2000, 봄, p.203.

우리 언론은 겉으로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중심의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이중적인 보도문화가 관행화

으로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 중심의 편향적인 보도를 해온 '이중성'의 보도문화가 관행처럼 구조화된 과정으로 설명된다. 겉으로는 모든 언론사가 한결같이 엄정 중립을 표명하지만 실제로는 보도 내용을 통해 음·양으로 비공식적 지지를 보내는 방식들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최근의 선거인 '96년 15대 총선이나 '97년 15대 대선에서는 몇몇 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야 정당이나 후보들을 균형 있게 다루어 겉으로 드러나는 불공정보도 시비는 상당부분 줄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함께 정치세력간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더욱더 복잡하고 은밀한 양상으로 편파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97년 대선에서 선거 초기에는 여당후보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으나 이후 여당후보 지지율이 하락하자 언론사들은 여당 편향성에서 벗어나 애써 균형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는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한 줄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⁵⁾

혹자에 따라서 이러한 비공식적 지지나 줄서기를 우리 언론의 전통적인 연고주의나 사인주의적 후견주의로 정의하기도 한다.⁶⁾

그런 연유에서인지 모 신문은 세 차례의 대선 모두에서 야당으로부터 편파보도 혐의로 제소를 당하였으며 또 한 신문은 15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경선 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가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기도 했다.

한편 앞선 기자협회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언론 현장에서는 16대 대선을 1년여 앞둔 최근까지도 이러한 언론사의 특정후보 지지 성향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즉, '언론사의 특정 후보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전국의 신문 방송 기자 503명 중 '그런 편'('심한 편'과 '조금 그런 편'의 응답을 포함)이라고 응답한 기자가 87.1%로 나타나 언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언론사의 특정 후보 지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가 있다면 어느 언론사가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며 한 개의 언론사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에 응답자 438명의 70.8%가 C일보를 지적했으며, 그 다음은 J일보(6.4%), H신문(3.2%) 순이었다. 나아가 '그 다음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4) 한국언론재단, 『한국 언론의 정치·선거보도-대중주의적 보도 개선 방안』, 연구서 99-07, 1999, p.29.

5)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97 15대 대통령선거보도 감시 백서』, 1998, p.237.

6) 심재천(1997)은 97년도 6월의 국내 신문에 등장한 대선 관련 보도 내용 연구에서 신문사마다 나름대로 전통적인 연고주의나 사인주의적 후견주의에 따라 특정 예비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97년 6월 한달 동안의 대상으로 당시의 대통령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보도를 분석한 결과 동아일보가 이한동 후보를 지지하고 조선일보가 최병렬 후보와 이회창 후보에 우호적이며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이 이수성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또한 한겨레신문이 당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설도 기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대통령 선거와 신문보도』, 한국언론학회, 『15대 대통령선거 언론보도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 논문집』, pp.35-50).

7) 기자협회보, 2002. 1. 1일자

보는 언론사는 어디냐'는 질문의 응답을 합했을 때도 C일보가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J일보 42.2%, D일보 13.7%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들과 보도 현장에서의 평가는 선거보도에 관한 한 우리 언론의 편파성과 이중성이 단순히 과거 우리 언론의 역사적 질곡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며 언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꼭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잘 보여준다.

III.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한 논의

1.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최근 선거보도의 이중성과 편파성을 극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개적인 후보지지 허용론이다. 물론 여기서 공개 지지와 같은 정치적 입장 표명이란 사실이나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과 언론계의 필요성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15대 대선이 있었던 '97년 말 수용자 일반과 대선 보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수용자에 비해 보도 담당자들이 그 도입의 필요성을 훨씬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사가 사실을 통하여 특정 후보에 대

한 공개지지 표명을 하고 선거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공정성을 표방하는 보도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일반 수용자는 찬성하는 편(48.3%)과 반대하는 편(51.7%)이 엇비슷하게 나뉘었지만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정치부 기자들은 78.4%가 찬성하고 반대는 21.6%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수용자에 비해 선거보도 경험이 있는 언론인들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특정 후보지지와 같은 불공정보도 성향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차라리 공개적 지지를 통해 선거보도의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언론사의 특정 후보지지 표명에 대한 의견

찬성정도 (%)	매 우 반 대	반 대 하는 편	찬 성 하는 편	매 우 찬 성	통계량
수용자	10.5	41.3	43.5	4.8	$\chi^2=28.05$ df=3 p<.01
기 자	6.8	14.9	63.5	14.9	

출처: 한국언론연구원(1998),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p.87.

2.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

일반적으로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정치적 입장 표명 즉, 사실과 사고를 통한 공개적인 후보 지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⁸⁾

첫째,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제시함으로써 공개적인 토의를 유도하고 독자들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8) 남시욱, 같은 글, pp.215-216.

선거보도의 이중성과 편파성을 극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개적인 후보지지 허용론이 제시되고 있어

둘째, 언론사가 사설로써 자사의 공식 입장을 선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밝히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부수의 증가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독자의 입장에서선 선거에 관한 주요한 정보원인 자기 구독 신문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후보에 호의적인가를 알 권리가 있다.

셋째, 사설로써 당당히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보도에서는 공정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독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효성은 이런 일반적인 찬성론에서 나아가 우리 언론의 이중성 극복을 통한 선거보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개지지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⁹⁾ 지금까지 많은 우리 언론들은 선거 때마다 당파적인 보도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행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지지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에 대한 구실 즉 면죄부만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공개지지 허용은 떳떳하지 못하게 음성적으로 하던 행위를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우리 언론들의 정치적 성향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중적인 모습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없애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개적 지지를 허용하게 되면 선거 보도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공개지지를 하지 않더라도 과거와 같이 편파보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줄거나 그 편파의 정도가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공개 지지를 하게되면 뚜렷한 지지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후보의 정책이나 자질을 보다 면밀히 따지게 될 것이며 보도기사에서는 더욱더 공정성을 약속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적 후보지지는 의견과 사실의 분리라는 객관주의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이 찬성의 논지다.

한편 인터넷 신문사인 <오마이뉴스>는 국내 언론사로서는 최초로 오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름대로의 여러 검증단계를 거쳐 투표 몇 일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계획을 검토 중임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신문사가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언론의 특정후보지지 선언을 불허하고 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언론은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둘째, '이중성의 종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 언론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실제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독자들에게 그것을 감추려 했기 때문에 대신 때마다 왜곡편파보도시비에 휘말렸다고 보고 특정후보 공개지지

9) 이효성, "정책과 자질 평가로 공명선거 가능",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pp.56-62.

10) 기자회견보, 2002. 2. 6일자

는 '이젠 좀 솔직해지자'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 특정후보지지는 후보자들에게는 정책대결을 그리고 언론에게는 정책보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려면 그 기준을 만들 것이며 따라서 후보들의 정책적 차별에 대한 보도가 많아지고, 후보들도 지역감정에 기대거나 이미지를 중시하기보다는 정책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선은 '누가 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후보자 공개지지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¹¹⁾ 첫째,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언론이 지배적인 우리 현실에서 공개적 후보지지를 허용하면 보수적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정치권력에 줄서기 좋아하는 우리 언론이 지지도 조사에서 일등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둘째, 의견(사설, 사시)과 사실(보도)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진실성, 공정성 등의 언론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사설이나 사시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언론 소유주의 강한 통제를 받는 일선 취재기자들이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편파보도를 할 것이고 셋째,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낮아서 언론의 후보지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론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주장이

다.

한편 현직 언론인인 정연주(한겨레 논설주간)도 비슷한 논지 아래 우리 언론의 구조적 여건을 들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보자 공개지지는 매우 위험하며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¹²⁾

무엇보다도 공개지지가 의미가 있으려면 편집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조그만 지방지의 경우는 다르지만 영향력 있는 신문들은 거의 예외 없이 편집이 독립되어 있어 사실을 통해 후보지지를 밝혀도 뉴스제작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특히 신문시장의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는 언론 3사의 경우 사주의 영향력이 소유 경영뿐만 아니라 편집에도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의 지지는 단순히 사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뉴스 제작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후보지지는 오히려 뉴스제작에서의 편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신문사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신문과 진보 성향의 신문 그리고 미국처럼 정당별로 지지하는 신문의 숫자와 영향력이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공개지지가 의미가 있지 그런 균형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지지는 어느 한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셋째, 우리의 토론문화가 공개지지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에

11) 이효성, 같은 글, p.59.

12) 기자회견보, 2002. 2. 6일자

언론의 후보자 공개 지지는
우리 정치현실과 언론풍토에 비추어
부작용이 크다는 견해도 많아

서는 어느 신문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사실을 통하여 지지했다고 해서 그 신문을 그 정당의 '기관지'라고 하지도 않으며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그 신문을 '여당지'로 규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경우엔 아직도 '여당지', '야당지' 식의 이분법 구분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어 공개 지지하는 언론사는 쉽게 특정 당이나 후보의 '기관지'로 규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남시욱 또한 우리 정치와 언론구조의 특성을 들어 공개지지가 이루어질 경우 나타나게 될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¹³⁾ 첫째, 우리의 보수적인 언론 풍토에서는 선택의 위험부담이 많이 따른다는 점이다. 만약 어떤 언론사가 기존의 중립의 보호막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이단시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지지 사실에 반대 의견을 가진 독자들의 반발과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감소의 위험부담이 있다. 아울러 정당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정치와 언론이 모두 보수일색인 풍토 아래서 후보에 대한 신문의 판단기준은 자연이 인물 중심이 되어 지연, 학연, 신문사와의 이해관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합이나 흥정, 매수 등 뒷거래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책임질 줄 모르는 권력'이라는 일부의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 언론사로서는 본격적인 '권력 창출'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지지하

는 후보가 여당이면 어용이란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반대로 야당 후보면 정부 여당과의 갈등을 각오해야 하며 선거가 끝난 후 반대 입장에 있던 정치세력의 보복 가능성도 남아 있어 언론사 경영주에게는 공개지지가 모험이 된다는 설명이다.

셋째, 후보자들끼리 치열한 접전으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판날 상황에서는 언론사의 후보지지 특히 시장점유율이 큰 유력자의 지지가 무시 못할 과급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후보와 정당의 대 언론 로비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의외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3. 현 정치인들의 반응

만약 언론사의 후보 공개지지가 허용된다면 당장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 대선 예비 후보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과 판단을 하고 있는가?

언론사들의 특정후보지지에 대해 현 정치인들의 반응은 찬성론과 신중론 그리고 반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물론 그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 또한 찬성론의 경우 언론의 당파성이나 이중성 극복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신중론의 경우 의견과 보도의 분리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내걸고 있으며 반대론의 경우 한국의 정치 구조나 언론구조의 후진적 특성을 내걸고 있다.

그 구체적인 언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13) 남시욱, 같은 글, pp.216-217.

14) 오마이뉴스, 2002. 1. 19.자 <http://ohmynews.com>.

“언론사가 특정후보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서 사실의 조작이나 왜곡을 통해 암암리에 특정인을 도와 주거나 깎아 내리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2002. 1. 17. 노무현 고문)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입장을 밝히되 사실과 칼럼으로 밝혀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예측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언론은 정치보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언론 스스로도 투명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킹 메이커로서 자임하고, 겉으로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2002. 1. 17. 김근태 민주당 고문)

“사실 법으로는 중립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립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법을 현실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누구를 선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실어준다면 판단은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2001. 10. 7. 한화갑 민주당 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내용)

“지금 상황(당시 10. 2 재보선을 앞 둔)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독자에게 알리는 거죠. 우리 신문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사실을 쓰면 ‘아, 이러저러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구나’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칼럼·사설과 사실(fact)을 보도하는 기사와의 구분 선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지켜내는 것이 소위 일류신문의 전통이죠. 지금 현실 속에서는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대단히 당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쓰거나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이죠.”

(2001. 10. 11. 정동영 민주당 고문
<오마이뉴스>인터뷰 내용)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다만 방송은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지지를 하는 이유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보도는 공정해야 합니다.”

(2001. 1. 18. 이인제 민주당 고문)

“한국 현실상 경영과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사실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2. 1. 17. 유종근 전북도지사)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서는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언론은 어쨌든 공정한 중간 입장에서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빠릅니다.”

(2001. 11. 15. 한광옥 민주당 대표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 현실을 볼 때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2002. 1. 18.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

“지금까지 언론이 어느 편향을 띠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로 지지를 표명해놓고 일반기사까지 편향된다면 참 곤란합니다. 지금 언론계가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요? 언론이 기사를 마치 사실처럼 쓰고

미국 신문들은 특정후보지지 입장을
사실을 통해 밝히지만
보도기사는 객관성을 유지

있는 데...오마이뉴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일반기사에 객관성을 담보할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낫죠.”

(2002. 1. 18.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 저발전된 정당 시스템, 언론과 정부 여당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에서 언론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2002. 1. 18. 김덕룡 한나라당 김덕룡 부총재)

4. 외국 사례

미국이나 유럽에서 언론사의 공개적인 정치적 입장 표명은 큰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선거보도의 전통이 되어 있다.

공직선거 때 특정후보를 사실로 지지하는 미국 언론의 전통은 18세기 말 독립 당시의 정파언론(partisan journalism)에서 기원한다.¹⁵⁾ 이런 전통 때문인지 선거 때마다 특정후보지지 등 정치적 견해를 표명해온 지가 2세기가 넘었으며 특정 후보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표명해도 해당 언론사의 공정성 문제에 별다른 시비가 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선거일 1~2주를 앞두고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으며, <워싱턴 타임스>와 <월스

트리트 저널>은 조지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신문들은 선거 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사실을 통해 분명히 밝히지만 사실의 입장과는 달리 보도기사는 객관적으로 제공하려는 소위 의견과 사실의 분리 전통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 신문은 대부분 지역지이기 때문에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특정후보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제가 발달하여 선거시 정책 대비가 분명해 언론의 공개적 지지의 풍토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신문들도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지지 선언을 한다.¹⁶⁾ 프랑스 <르 몽드>, 영국의 <더 타임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등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유럽은 어떤 특정후보를 지지하기보다 정책별로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더 타임즈>는 지난 97년 총선에서 1면 머릿기사로 노동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국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지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체로 사주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 선거에 앞서 후보들을 만나 검증작업을 거치고 사주와 논설위원들이 토의 과정을 거쳐 어떤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

15) 오마이뉴스, 2002. 1. 19,자 <http://ohmynews.com>.

16) 기자협회보, 2002. 2. 6,자

인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¹⁷⁾ 구체적으로 <뉴욕타임스>지의 경우 사주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논설위원과 편집간부들이 각 후보자들을 불러 정책 설명을 듣고 토의를 거쳐 결정하며,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통적으로 사주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사설 외에 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르 몽드>의 경우는 사원 주주조합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데 토의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이들 언론사들이 후보지지 선언을 하는 시점은 대부분 선거 종반인 1~2주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규정은 없다.

IV. 도입의 가능성 검토

지금까지 후보의 공개적 지지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표명이 왜 화두로 대두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찬·반 논의는 무엇인지 나아가 외국의 경우엔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의 공개적 표명은 기존 선거보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선거보도의 선진화와 정치 발전을 위해 모색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역사적 당위와 현직 언론인들의 지배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하여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이를 수용할만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정치 문화적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

지 않고, 의도는 찬성하나 시기상조라는 입장, 한국 언론의 생리상 오히려 불공정을 강화시킨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 법적 검토

1996년 전면 개정된 신문윤리실천 강령 제9조 2항(정치적 평론의 자유)에서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한국언론이 미국식 후보지지(endorsement) 제도를 채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정법인 선거법 제96조는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해석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이 언론으로 하여금 특정후보지지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제8조 3은 선거기사의 범위 안에 사설을 포함시키고 불공정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고 언론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이의 시행을 명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효성은 언론의 후보지지를 가능

17) 기자회견보, 2002. 2. 6.자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은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 환경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게 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만약 현실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개정이 어렵다면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 사유로 헌법 소원을 낼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박형상은 선거법 상의 공정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 불확정 개념이며 이 개념을 해석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기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그 규제 대상을 “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 내용을 포함한 선거기사”라고만 하여 법문에 비록 사실보도는 예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보도는 물론 사설, 논평 등 의견기사까지 규제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⁹⁾

나아가 남시욱은 언론이 사설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이를 정치적 중립성 어긋 불공정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냐는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표명은 최근 개정된 공선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²⁰⁾

2. 도입의 성공요건

일단 법적인 제약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공개지지 여부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언론사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즉 언론사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

가 없거나 딱히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공적 도입의 관건은 해당 언론사들의 공개지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를 견인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형성 여부이다.

먼저 특정 후보의 공개적 지지와 같은 정치적 입장 표명이 우리의 경우 일종의 언론자유 신장에 해당하며, 역대 선거보도에서 나타난 그 동안의 편파성과 이중성을 극복하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는 인식이 언론사 특히 사주나 경영진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동안 선거보도의 이중성은 많은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에게는 효용성이 높은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몇몇 유력 언론사들은 이러한 이중성을 통해 외양상 언론으로서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내적으로는 권력의 창출이나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소위 정치적 지위를 높이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비록 언론계가 후보자 공개지지와 같은 정치적 입장 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입한다 하더라도 본래 의미를 달성하려면 언론사별로 후보 지지여부를 판단하고 선택할 만한 기준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검증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설이나 사고를

18) 이효성, 같은 글, p.61.

19) 박형상, “선거보도의 법적·제도적 고찰”, 『언론중재』, 2000 봄호, pp.51-53.

20) 남시욱, 같은 글, pp.214-215.

통한 입장 표명과 사실 보도 즉, 의견과 사실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편집권의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개표명이 오용 내지 왜곡되어 오히려 기득권 위주의 권·언 유착만을 강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언론계 경험에 있는 분들일수록 시기상조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혁남, “텔레비전의 15대 대통령 선거보도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3-5호, 1999, pp.5-44.
 남시욱, “선거 사실 '중립만이 금은 아니다'”, 『관훈저널』, 2000년 봄, pp.203-218.
 박형상, “선거보도의 법적·제도적 고찰”, 『언론중재』,

2000 봄호, pp.51-613.

백선거, 『보도의 기호학』, 성대 출판부, 1995.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97 15대 대통령선거보도 감시백서』, 1998.

심재철, “대통령 선거와 신문보도”, 한국언론학회 『15대 대통령선거 언론보도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1997, pp.35-52.

이효성, “정책과 지질 평가로 공명선거 기능-언론의 후보 공개 지지의 득과 실”, 『신문과 방송』 2002년 2월호(374호), pp.56-62.

한국언론연구원,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연구보고서 98-02, 1998.

한국언론재단, 『한국 언론의 정치·선거보도-대중주의적 보도 개선 방안』, 연구서 99-07, 1999.

〈기 타〉

기자협회보, 2002. 2. 6.자.

오마이뉴스, 2002. 1. 19.자 [http //ohmynews.com](http://ohmynews.com).

특 집

미디어정치시대의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판결에 나타난 선거보도의 문제점

I. 들어가며 - 선거보도의 의미

선거보도는 우선 시기적으로 선거시기에 이루어지는 보도를 의미할 것이다. 선거시기란 좁게는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이루어지는 보도로 제한할 수 있고,¹⁾ 넓게는 선거가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의 보도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2001년 말경부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01년 말경부터 선거보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선거보도와 언론 자유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선거보도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시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보도를 선거보도로 볼 수는 없고, 그 내용적 측면에서 넓게는 선거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모든 보도를 선거보도로 볼 수도 있으나, 좁게는 선거참여자들, 특히 정당, 정당관계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관계인에 대한 보도를 선거보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국민의 대표자로 특정인을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선거보도란 정당이나 후보자 등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에 대한 보도라는 좁은 의미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또 '판례에 나타난 선거보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데에도 효율적인 범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발신자의 측면에서 좁게는 '언론' 보도, 특히 방송과 일간지,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보도기관의 조직과 형

김 기 중
변호사

-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 정보법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언론법학회 회원
- ☐ 민변 출판홍보위원장
- ☐ 저술: "표현의 자유와 검열-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21세기 한국 언론 정책 법제 연구』(공동연구)

1) 공직선거및투정선거방법은 '선거방송', '선거기사', '선거보도'라는 용어를 제8조의2, 제8조의3 및 8조의 4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선거심의의 대상이며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인 선거보도의 범위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보도'로 보고 있으므로, 선거법은 선거보도를 '선거일 120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에 관한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 관한 보도'로 보고 있는 듯하다.

태를 갖춘 인터넷신문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에 의한 보도를 선거보도로 볼 수도 있고, 넓게는 정보발신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선거시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신된 것 중 그 내용이 선거관계자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이 일반인에 의한 것이든 선거관계자(예를 들면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것이든 선거보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화된 인터넷과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실상 언론매체가 명멸해 가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보발신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선거보도자를 무시할 우려가 있다. 다만, 정보발신자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인터넷시대에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보도'란 선거가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선거참여자, 특히 정당, 정당관계자(이하 단순히 정당이라고만 할 때는 정당관계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관계인(이하 단순히 후보자라고만 할 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관계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에 대해 보도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춘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이하 정당이나 후보자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선거관계자'라 한다)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도(정보의 제공)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논의의 중심을 언론기관에 두고 개인 또는 선거관계자에 의한

경우는 필요한 경우 따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살펴본다.

II. 선거보도의 중요성

언론의 선거보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에 도움을 주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이며 실질적인 전제이다. 더구나 선거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들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면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공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전력, 재산관계는 물론 심지어 이성관계나 술버릇, 약물중독을 포함한 병력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언론은 이를 보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²⁾ 하지만 선거시기에 이루어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그 정당이나 후보자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거보도의 자율성과 함께 그 보도의 공정성 내지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의 과도한 표출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상 기사심의위원회와 사과명령권, 형사처벌 등일 것이다. 특히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선거시기만 되면 언론은 선거보도에 관한 자율규약이나 공정보도준칙 등을 제정하여 선거참여자나 독자들에게 공정한 보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

2) 뽕원순, "후보자의 사생활보도와 법 윤리적 문제", 『언론중재』 제13권 1호(46호), 1993년 봄, p.19.

선거보도는 그 영향력이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거보도의 자율성과 함께 공정성 내지 공공성이 강조

려고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하다. 이 글에서는 특히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해 사법적으로 문제되었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사법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선거보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관하며 더불어 사법기관의 선거보도에 대한 취급과 시각은 적절한지 여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I. 선거보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사법기관의 태도

1. 명예훼손에 관한 사례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사건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입장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는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사건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강원도의회 의원이었던 원고가 1995. 6. 27. 실시된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던 1995. 4. 7. 이후 15회에 걸친 강원일보의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심판청구³⁾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고발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1. 6. 20.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가칭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도의원 일행은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김영수 영사부장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 강원도 의회간의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이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만, 그 편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는 인사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통일원은 1995. 3. 25. 남북교류추진위원회 대표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았고, 춘천지방검찰청은 4. 7. 위 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와 위 편지내용에 관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강원지방검찰청은 4. 12.부터 4. 24.까지 원고 등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내사하였으나 5. 3.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를 붙여 내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5. 24.부터 9. 6.까지 직접 조사를 하여 9. 25.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였다. 강원일보는 1995. 4. 8. 검찰의 위 4. 7.자 정보보고서를 입수하자 검찰과 경찰에 원고 등 도의원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4. 9.자 강원일보에 "북접촉 도의원 3명 내사",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애도 편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첫 보도하였다. 이후 강원일보는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나 '김일성 애도 편지'와 같은 제목을 사용하여 9. 6.까지 17차례에 걸친 보도를 하였다. 1995. 6. 27.에 실시된 제4대 강원도의회

3) 춘천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카기299판결

의원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측은 위 기사가 게재된 강원일보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던 것이 사안의 개요이다.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피고들에 대해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 이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일관하여 원고를 지지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도 법원은 1심 이래 대법원까지 일관하여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기는 하나,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나 ‘김일성 애도편지’와 같은 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기사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 등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위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게 하는데, 원고 등이 위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 위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은 김일성을 애도하기 위하여 위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낸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언론사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 다만,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강원일보의 위 보도가 선거시기의 특수한 국면에 이루어진 점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보도내용-사실여부-민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라는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적인 논리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1심 판결은 “당시 도의원 선거를 두달 여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편지의 취지와 원고 등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는 원고의 명예를 크게 해하거나 원고가 입후보한 도의원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견되므로 더욱 더 신중히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나아가 원고가 입후보한 1995. 6. 27.자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의해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1심 법원의 결론이 지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도 지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반면 위 보도의 담당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조문과 애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나 일상적인 어법에서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은 아니며, 애도의 뜻이 담긴 인사말이 있는 편지에 대해 ‘사망 애도편지’라고 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5736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판결

선거시기 선거관계자에 관한 보도에 대해
법원은 언론에게 보다 신중한
사실확인 의무를 부과

헌법재판소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지지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별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할 것이다. …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이유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에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제재의 일반원리를 특별히 밝힌 것이므로, ‘사망애도편지’ 사건에 관한 위 대법원 판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⁵⁾

요컨대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사건은 선거시기에 선거관계자에 대한 보도는 선거관계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언론기관에

게 더욱 더 신중한 사실확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 다만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법적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확인되었다는 점⁶⁾. 동일한 보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노무현 사건

또 다른 사례로는 1992. 4.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인 1991. 10. 6. 주간조선에 보도된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 기사에 관한 사건(이하 노무현사건), 1996. 4. 11.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강원도민일보 1면에 보도된 ‘조일현 의원 곧 소환’ 기사에 관한 사건(이하 조일현사건), 2000. 4. 국회의원선거 1년 전인 1999. 3. 31.과 6. 16.에 보도된 주간내일신문사건이 있다. 위 사건은 모두 선거시기에 특정 후보를 다룬 기사에 관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선거보도에 관한 판례들이다. 노무현사건과 조일현사건을 살펴본다.

1991. 10. 6.자 주간조선에는 “통합야당대변

5) 손해배상의 민사판결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사의 의견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서로 다른 점.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할 수 있는데,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사건’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오수영,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헌법재판소 1999. 6. 24.선고 97헌마265-”,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통권 제72호). 하지만 민사책임의 법리와 형사책임의 법리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위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표현행위를 형사별로 규율하려고 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 선거시기에, 그것도 17차례에 걸쳐 집중보도한 중한 위법행위에 비하여, 그 손해배상액이 2,000만원으로 아래 조일현사건에 비해 손해배상금이 현저히 낮은 이유도 아마 이같은 헌법적 요청과의 충돌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군데군데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퇴한 것은 관료주의 체질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는 말지 않겠다고 했다”는 등의 발문을 달고, “노의원의 재산 상당하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아”, “82년 요트동호인 10명과 함께 부산 요트클럽결성, 회장에 앉아”, “형 건평씨의 부동산투기에 노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 “13대 총선 때 YS가 2억원 지원 남은 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과 같은 소재목을 달았고, 위 주간조선을 광고하면서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제목을 광고의 일부로 실은 사건이다. 위 주간조선의 기사는 1992. 4.경 시행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유세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연설문과 지역구 홍보지에 인용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강조한 후 위 주간조선의 기사는 원고가 때묻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재에 밝아 재

산이 상당하고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되었으며 요트타기를 즐겼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형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등으로 원고를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이어 법원은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은 모두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되었는데 기사작성자가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보도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위 기사가 상대후보에 의해 이용되었다는 점만을 손해배상의 금액(2,000만원)을 정하는데 참작하였다.⁷⁾

조일현 사건

명예훼손소송의 손해배상금이 2,000 내지 3,00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⁸⁾ 1심법원에서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건으로 유명한 조일현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민일보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996. 4. 11. 당일 1면 좌측 상단에 “조일현 의원 곧 소환”이라는 큰 제목과 “검찰, 자민련 공천현금관련 김영태 씨로부터 1천여 만원 수

7) 서울지방법원 1992. 12. 4.선고 91가합82823판결, 이 사건의 판결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인 1992. 12. 4. 선고되었으므로 사실 원고의 손해를 회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원고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8) 2000년을 기점으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은 3,702만원이라고 한다.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통권 제76호).

일반적으로 법원은 선거보도의 특수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수험의"라는 중간 제목, "돈 준 김씨는 금주
말 불러 조사 방침"이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
및 "돈 성격 놓고 뜨거운 공방 예상", "자민련
공천현금 후유증"이라는 큰 제목과 "조일현
씨 등 도덕성 치명타"라는 중간 제목, "실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 총선 뒤 판명될 듯"이라
는 작은 제목의 기사 등 4쪽지의 기사를 전체
적으로 보아 원고 등 관련 당사자가 이를 부
인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자민련 관
계자가 김모 씨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현금
을 수령하였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대책마련
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법원은 위 '김일성 사망 애도편
지' 사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기사제목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위 '노무현사건'과 같이 기
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독자가 받는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반법리를 지적하면
서, 원고가 위 김모 씨로부터 공천현금을 수령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위 기사는 원고
가 현금을 받았다고 읽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고 있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강원도민일보는 주식
회사 연합통신의 송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
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
은 강원도민일보가 연합통신의 송고 기사를 변
형하여 다른 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직접 취재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선거보도의 특수성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기사가 보도된 시기, 기사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위자료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⁹⁾
한가지 흥미 있는 점은 위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지 아니
한 경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¹⁰⁾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
이 지적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사화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손해배
상금의 액수도 5,0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¹¹⁾

불공정보도에 대한 취급

한편, 특정 선거구에서 대립되는 후보들에
대한, 또는 대립되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불공정보도를 한 경우에 과연 명예
훼손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이다.
'주간 예산신문'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
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피고 주식회사 예산신문사는
1997. 7. 21.자 예산신문 제1면에 "지역발전 목
달라하던 예산민심, 인물론·홍성비교론 초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4. 17. 선고 97가합6965판결

10) 하지만 선거에 관한, 특히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사화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한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이 옳은 것
이기 때문이다. 위 판례의 입장에 동의하게 되면 '우려'가 있는 기사의 경우 아예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
론에 이를 우려가 있다.

11) 서울고등법원 2000. 8. 31. 선고 98나25445판결

점"이라는 큰 제목, "'조 후보(원고) 혼자 막 아낼 수 없다.' 타 지역에 지원 호소 민심이 반현상 가속 예산자존심 v. 부여자존심 격돌"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연합공세에도 불구하고 과죽지세로 돌진하는 오 후보(원고의 상대후보)는 지역발전에 목말라하던 유권자들의 민심과 맞아 떨어져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세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후보는 실물경제인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제시하며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젊은 패기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였다. 당시는 1997. 7. 24. 충남 예산군 선거구의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런 보도내용은 일응 특정 후보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의사의 표명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대립되는 후보들 사이에서 한쪽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사실을 부각한 불공정한 보도로 볼 수 있다. 언론관계단체와 매체비평쪽에서 강조하는 '공정정보도론'의 가장 커다란 쟁점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즉, 언론사가 특정후보들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정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사실보도, 사진배치에서 차별적 취급 등을 할 경우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이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위 기사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로 보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위 법원은 나아가 원고와

오후보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되 원고는 연설원고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오후보는 청중을 향하여 연설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실었으며, 이 외에도 원고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유세모습과 원고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오후보는 단독으로 거리유세하는 모습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들이 모두 조작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며, 사진 그 자체로는 원고의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사진의 대비에 따라 독자로 하여금 은연중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¹²⁾

위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이상 보도에 있어서 불공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판례들에 대한 평가

법원은 이른바 '선거보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명시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거보도'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보도내용의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선거보도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사실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선거보도내용이 실제로 선거에 이용되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4. 날자미상 선고 97가합2440판결 (하급심판결집 1998년 1권)

선거시기 선거관계자에 관한 보도에 대해
법원은 언론에게 보다 신중한
사실확인 의무를 부과

헌법재판소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지지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별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할 것이다. ...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이유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은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제재의 일반원리를 특별히 밝힌 것이므로, ‘사망애도편지’ 사건에 관한 위 대법원 판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⁵⁾

요컨대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사건은 선거시기에 선거관계자에 대한 보도는 선거관계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언론기관에

게 더욱 더 신중한 사실확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점, 다만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법적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확인되었다는 점⁶⁾, 동일한 보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노무현 사건

또 다른 사례로는 1992. 4.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인 1991. 10. 6. 주간조선에 보도된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 기사에 관한 사건(이하 노무현사건), 1996. 4. 11.의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강원도민일보 1면에 보도된 ‘조일현 의원 곧 소환’ 기사에 관한 사건(이하 조일현사건), 2000. 4. 국회의원선거 1년 전인 1999. 3. 31.과 6. 16.에 보도된 주간내일신문사건이 있다. 위 사건은 모두 선거시기에 특정 후보를 다룬 기사에 관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선거보도에 관한 판례들이다. 노무현사건과 조일현사건을 살펴본다.

1991. 10. 6.자 주간조선에는 “통합야당대변

5) 손해배상의 민사판결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한 검사의 의견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서로 다른 점,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할 수 있는데,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사건’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인정되었어야 한다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오경식,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헌법재판소 1999. 6. 24.선고 97헌마265-”,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통권 제72호). 하지만 민사책임의 법리와 형사책임의 법리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위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표현행위를 형사별로 규율하려고 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6) 선거시기에, 그것도 17차례에 걸쳐 집중보도한 중한 위법행위에 비하여, 그 손해배상액이 2,000만원으로 아래 조일현사건에 비해 손해배상금이 현저히 낮은 이유도 아마 이같은 헌법적 요청과의 충돌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군데군데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퇴한 것은 관료주의 체질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는 말지 않겠다고 했다"는 등의 발문을 달고, "노의원의 재산 상당하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정가에 과다하게 나돌아", "82년 요트동호인 10명과 함께 부산 요트클럽결성, 회장에 앉아", "형 건평씨의 부동산투기에 노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 "13대 총선 때 YS가 2억원 지원 남은 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과 같은 소재목을 달았고, 위 주간조선을 광고하면서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제목목을 광고의 일부로 실은 사건이다. 위 주간조선의 기사는 1992. 4.경 시행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유세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연설문과 지역구 홍보지에 인용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강조한 후 위 주간조선의 기사는 원고가 때문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재에 밝아 재

산이 상당하고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되었으며 요트타기를 즐겼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형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등으로 원고를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이어 법원은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해 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은 모두 진실하지 않거나 과장되었는데 기사작성자가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보도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위 기사가 상대후보에 의해 이용되었다는 점만을 손해배상의 금액(2,000만원)을 정하는데 참작하였다.⁷⁾

조일현 사건

명예훼손소송의 손해배상금이 2,000 내지 3,00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⁸⁾ 1심법원에서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건으로 유명한 조일현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민일보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996. 4. 11. 당일 1면 좌측 상단에 "조일현 의원 곧 소환"이라는 큰 제목과 "검찰, 자민련 공천현금관련 김영태 씨로부터 1천여 만원 수

7) 서울지방법원 1992. 12. 4.선고 91가합82823판결. 이 사건의 판결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인 1992. 12. 4. 선고되었으므로 사실 원고의 손해를 회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인지 원고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8) 2000년을 기점으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은 3,702만원이라고 한다. 조준원, "19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통권 제76호).

일반적으로 법원은 선거보도의 특수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수협'이라는 중간 제목. "돈 준 김씨는 금주 말 불러 조사 방침"이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 및 "돈 성격 놓고 뜨거운 공방 예상", "자민련 공천현금 후유증"이라는 큰 제목과 "조일현 씨 등 도덕성 치명타"라는 중간 제목. "실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 총선 뒤 판명될 듯"이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 등 4쪽지의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 등 관련 당사자가 이를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자민련 관계자가 김모 씨로부터 공천과 관련하여 현금을 수령하였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법원은 위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사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기사제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 '노무현사건'과 같이 기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독자가 받는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반법리를 지적하면서, 원고가 위 김모 씨로부터 공천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위 기사는 원고가 현금을 받았다고 읽혀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강원도민일보는 주식회사 연합통신의 송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강원도민일보가 연합통신의 송고 기사를 변형하여 다른 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선거보도의 특수성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 기사가 보도된 시기, 기사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⁹⁾ 한가지 흥미 있는 점은 위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사화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⁰⁾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원이 지적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사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금의 액수도 5,0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¹¹⁾

불공정보도에 대한 취급

한편, 특정 선거구에서 대립되는 후보들에 대한, 또는 대립되는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불공정보도를 한 경우에 과연 명예훼손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문제이다. '주간 예산신문' 사건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피고 주식회사 예산신문사는 1997. 7. 21.자 예산신문 제1면에 "지역발전 목 말라하던 예산빈심, 인물론·홍성비교론 초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4. 17. 선고 97가합6965판결

10) 하지만 선거에 관한, 특히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사화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한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위 판례의 입장에 동의하게 되면 '우려'가 있는 기사의 경우 아예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있다.

11) 서울고등법원 2000. 8. 31. 선고 98나25445판결

점”이라는 큰 제목, “‘조 후보(원고) 혼자 막 아낼 수 없다.’ 타 지역에 지원 호소 민심이 반현상 가속 예산자존심 v. 부여자존심 격돌”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연합공세에도 불구하고 파죽지세로 돌진하는 오 후보(원고의 상대후보)는 지역발전에 목말라하던 유권자들의 민심과 맞아 떨어져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세를 더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후보는 실물경제인으로서의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제시하며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젊은 패기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하였다. 당시는 1997. 7. 24. 충남 예산군 선거구의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런 보도내용은 일응 특정 후보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의사의 표명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대립되는 후보들 사이에서 한쪽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사실을 부각한 불공정한 보도로 볼 수 있다. 언론관계단체와 매체비평쪽에서 강조하는 ‘공정보도론’의 가장 커다란 쟁점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즉, 언론사가 특정후보들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정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사실보도, 사진배치에서 차별적 취급 등을 할 경우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훼손이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위 기사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로 보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위 법원은 나아가 원고와

오후보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되 원고는 연설원고를 내려다보는 모습을, 오후보는 청중을 향하여 연설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실었으며, 이 외에도 원고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유세모습과 원고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을, 오후보는 단독으로 거리유세하는 모습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진들이 모두 조작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며, 사진 그 자체로는 원고의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사진의 대비에 따라 독자로 하여금 은연중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¹²⁾

위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이상 보도에 있어서 불공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판례들에 대한 평가

법원은 이른바 ‘선거보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명시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선거보도’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보도내용의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보도기관으로 하여금 선거보도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사실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선거보도내용이 실제로 선거에 이용되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4. 날자미상 선고 97가합2440판결 (하급심판결집 1998년 1권)

위법한 선거보도가 선거에 이용되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적극적으로 참작,
간접적으로 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듯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참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법한 선거보도에 대해 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듯하다. 하지만 법원으로서의 사실에 관한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에 관한 보도로 보기 힘든 '불공정보도'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불공정보도'에 관한 부분은 자율규제나 행정규제의 대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뿐이다.

2.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보도와 후보자 비방죄

앞에서 지적했듯이 선거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들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면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공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전력, 재산관계는 물론 심지어 이성관계나 술버릇, 약물중독

을 포함한 병력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언론은 이를 보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 후보자 등의 사생활보호권은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¹³⁾

하지만 선거법은 과거의 혼탁한 선거와 과도한 인신공격의 경험 때문인지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의 금지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후보자비방죄'는 선거시기의 보도나 표현에 관하여 다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형사처벌규정으로 보인다.¹⁴⁾ 물론 선거법 제82조의3 제2항 전단,¹⁵⁾ 제110조 전단¹⁶⁾과 제250조¹⁷⁾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선거법은 제82조의3 제2항 후단,¹⁸⁾ 제110조 후단¹⁹⁾과 제251조²⁰⁾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²¹⁾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비방'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그 범위에 관한 혼란이 있기도 하였다.

1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침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 글의 관심영역 밖에 있으므로 제외한다.

14)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는 강용현, 상대 후보자의 전과공개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대법원판례해설 제26호, 1996. 12. 참조

15)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폐하여서는 아니되며..."

16)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행위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폐할 수 없으며..."

17)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제목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의 신분 직업 재산 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1) 선거법 제82조의 3 제2항, 제110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의해 처벌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이 직접 문제된 사례는 발견할 수 없고 주로 후보자 상호간, 또는 일반인이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선거 또는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 대한 관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언론기관의 이른바 공인에 대한 사생활보도가 날로 증가하고 그 범위가 민감한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고 특히 선거기간 중 후보자관련 보도에 그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언론기관이라고 하여 '후보자비방죄'의 그물망 밖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한 것이 문제된 사례,²²⁾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자 처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적시하여 문제된 사례,²³⁾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 후보자가 구의원 재직 당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을 공표하여 문제된 사례²⁴⁾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의 공표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당사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가 검토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위 사례들 모두에서 법원은 지적된 사실이 진

실하다면 그 사실은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며,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한편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²⁵⁾ 또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여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²⁶⁾을 의미하며, 비방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는 "후보자 개인의 신분, 경력 또는 인격 등 직접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많은 것"까지 포함되나,²⁷⁾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비난²⁸⁾이나 의견의 제시²⁹⁾는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규정으로 보이고³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행위는 그것이 비록 상대후보자의 정견이나 과거 행적의 오류와 약점을 폭로하는 것이어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고 선거과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므로,³¹⁾ 선거 보도나 선거기간 중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의한

2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판결

2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판결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5. 12. 22. 선고 95고합345판결

25)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판결

2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판결

27) 대법원 1979. 6. 29. 선고 76도282판결

28) 대원 1993. 1. 26. 선고 92도1693판결

2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판결

30) 강용현, 앞의 논문, 486쪽

31) 서울지방법원 1995. 8. 17. 선고 95고합661판결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장치로서
선거기사심의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어

표현행위에 대해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극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원도 동일한 입장에서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3. 선거보도와 반론권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선거법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를 신설하여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제도(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방송과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신속한 반론보도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선거법은 위 제도와 함께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제도(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사과문 또는 정보보도문 게재명령제를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또는 게재명령에 대한 이행강제와 반론보도결정에 대한 이행강제를 위해 그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제256조 제2항 제3호).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

투표일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선거국면에서 선거보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선거관계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일반적인 반론보도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호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선거보도에 대한 신속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1997. 11. 14.의 개정법률 취지는 구체적인 절차의 미비점을 논외로 하면 타당한 입법인 것으로 보이며,³²⁾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른바 '불공정·편파보도'에 관하여 사법적 규제가 가능하지 않고 언론사의 공개적인 후보자 지지가 허용되지 않은 현 제도에서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장치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속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형사처벌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나머지 문제는 법원의 처리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한 행정규제장치로서 심의위원회의 경우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반성장치나 옴부즈맨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그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위 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불공정을 시정하도록 하는 일정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언론사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선거시기에 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거보도를 위축시킬 것이 틀림없으므로,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과도한

32) 선거보도에 대한 신속한 반론보도의 필요성과 개정 법률의 미비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낙인, "선거보도와 반론권", 『언론중재』 제17권 4호, 1997년 겨울, 참조

입법장치라 할 것이다.³³⁾

IV. 선거보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앞에서 지적했듯이 법원의 판례에 의해 지적된 선거보도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보도의 문제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언론기관은 그 보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선거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후보자비방죄나 선거보도와 관련된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선거시기에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사건에서 "시간과 싸우는 신문 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며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선거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은 일반

명예훼손사건의 경우와 조금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닐까 한다. 즉, 선거시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해집단 사이에 정치적 투쟁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되, 그로 인한 피해는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에 의해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피해가 선거시기에 즉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현행 선거법상 반론권제도는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반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제도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데, 그 이유는 선거법상 반론권제도가 형사처벌에 의한 강제라는 강력한 수단에 의해 뒷받침되는 듯이 보이나, 오히려 그 강력한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선거법상 신속한 반론권보장제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절차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

33) 2000. 2.에 구성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으로 언론사에 이를 강제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와 함께 "정정보도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백서』, 18쪽). 타당한 결론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으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을 행하는 집행기관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집행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시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과문제제나 정정보도재명령을 자제하되,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의 옳은 태도였을 것이다.

위법한 선거보도가 선거에 이용되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적극적으로 참작,
간접적으로 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듯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참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위법한 선거보도에 대해 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듯하다. 하지만 법원으로서의 사실에 관한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률시스템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에 관한 보도로 보기 힘든 '불공정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불공정정보'에 관한 부분은 자율규제나 행정규제의 대상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뿐이다.

2. 후보자에 대한 사생활보도와 후보자 비방죄

앞에서 지적했듯이 선거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들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면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공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전력, 재산관계는 물론 심지어 이성관계나 술버릇, 약물중독

을 포함한 병력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언론은 이를 보도해야 할 공적 책임이 있다. 후보자 등의 사생활보호권은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¹³⁾

하지만 선거법은 과거의 혼탁한 선거와 과도한 인신공격의 경험 때문인지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의 금지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후보자비방죄'는 선거시기의 보도나 표현에 관하여 다른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형사처벌규정으로 보인다.¹⁴⁾ 물론 선거법 제82조의3 제2항 전단,¹⁵⁾ 제110조 전단¹⁶⁾과 제250조¹⁷⁾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선거법은 제82조의3 제2항 후단,¹⁸⁾ 제110조 후단¹⁹⁾과 제251조²⁰⁾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²¹⁾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비방'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그 범위에 관한 혼란이 있기도 하였다.

- 1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침해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논의는 이 글의 관심영역 밖에 있으므로 제외한다.
- 14) 외국의 입법례에 관하여는 강용현, 상대 후보자의 전과공개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대법원판례해설 제26호, 1996, 12, 참조
- 15)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 16)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행위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 17)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제목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의 신분 직업 재산 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8)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21) 선거법 제82조의 3 제2항, 제110조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의해 처벌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이 직접 문제된 사례는 발견할 수 없고 주로 후보자 상호간, 또는 일반인이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선거 또는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언론기관의 이른바 공인에 대한 사생활보도가 날로 증가하고 그 범위가 민감한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고 특히 선거기간 중 후보자관련 보도에 그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언론기관이라고 하여 '후보자비방죄'의 그물망 밖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한 것이 문제된 사례,²²⁾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자 처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적시하여 문제된 사례,²³⁾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 후보자가 구의원 재직 당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을 공표하여 문제된 사례²⁴⁾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의 공표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당사자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가 검토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위 사례들 모두에서 법원은 지적된 사실이 진

실하다면 그 사실은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며,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한편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²⁵⁾ 또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여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²⁶⁾을 의미하며, 비방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는 "후보자 개인의 신분, 경력 또는 인격 등 직접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많은 것"까지 포함되나,²⁷⁾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비난²⁸⁾이나 의견의 제시²⁹⁾는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후보자비방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규정으로 보이고³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행위는 그것이 비록 상대후보자의 정견이나 과거 행적의 오류와 약점을 폭로하는 것이어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위법성이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고 선거과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므로,³¹⁾ 선거보도나 선거기간 중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의한

2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판결

23)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판결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5. 12. 22. 선고 95고합345판결

25)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판결

2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판결

27) 대법원 1979. 6. 29. 선고 76도282판결

28) 대원 1993. 1. 26. 선고 92도1693판결

2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판결

30) 강용현, 앞의 논문, 486쪽

31) 서울지방법원 1995. 8. 17. 선고 95고합661판결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장치로서
선거기사심의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어

표현행위에 대해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극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법원도 동일한 입장에서 후보자비방죄의 성립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3. 선거보도와 반론권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선거법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를 신설하여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제도(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방송과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대한 신속한 반론보도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선거법은 위 제도와 함께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심의제도(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명령제를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또는 게재명령에 대한 이행강제와 반론보도결정에 대한 이행강제를 위해 그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제256조 제2항 제3호).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의 타당성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겠다.

투표일로 모든 것이 종료되는 선거국면에서 선거보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선거관계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일 반적인 반론보도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호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선거보도에 대한 신속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1997. 11. 14. 의 개정법률 취지는 구체적인 절차의 미비점을 논외로 하면 타당한 입법인 것으로 보이며,³²⁾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른바 ‘불공정·편파보도’에 관하여 사법적 규제가 가능하지 않고 언론사의 공개적인 후보자 지지가 허용되지 않은 현 제도에서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장치로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신속한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형사처벌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결정에 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나머지 문제는 법원의 처리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공정 편파보도’에 대한 행정규제장치로서 심의위원회의 경우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반성장치나 옴부즈맨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 그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위 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불공정을 시정하도록 하는 일정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언론사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선거시기에 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거보도를 위축시킬 것이 틀림없으므로,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과도한

32) 선거보도에 대한 신속한 반론보도의 필요성과 개정 법률의 미비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낙인, “선거보도와 반론권”, 『언론중재』 제17권 4호, 1997년 겨울, 참조.

입법장치라 할 것이다.³³⁾

IV. 선거보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

앞에서 지적했듯이 법원의 판례에 의해 지적된 선거보도의 문제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보도의 문제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언론기관은 그 보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선거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후보자비방죄나 선거보도와 관련된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선거시기에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사건에서 "시간과 싸우는 신문 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하며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선거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은 일반

명예훼손사건의 경우와 조금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닐까 한다. 즉, 선거시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이해집단 사이에 정치적 투쟁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되, 그로 인한 피해는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에 의해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피해가 선거시기에 즉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현행 선거법상 반론권제도는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반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제도가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데, 그 이유는 선거법상 반론권제도가 형사처벌에 의한 강제라는 강력한 수단에 의해 뒷받침되는 듯이 보이나, 오히려 그 강력한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선거법상 신속한 반론권보장제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절차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

33) 2000. 2.에 구성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으로 언론사에 이를 강제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와 함께 "정정보도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제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백서』, 18쪽). 타당한 결론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으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을 행하는 집행기관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집행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시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과문제나 정정보도게재명령을 자제하되,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의 옳은 태도였을 것이다.

특 집

미디어정치시대의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공정성 확보 방안

이 준 웅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
동 대학원 석사
- ☐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Annenberg School for Commu-
nication 박사
- ☐ 전 KBS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997년 KBS 대통령선거 예측조사
자문위원
- ☐ “미국언론의 대선보도와 교훈”
“선거보도에 대한 주목도와 정치적
의견표명”

I. 언론과 선거 여론조사 보도

현대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선거 결과 자체가 후보에 대한 유권자 지지율에 의해 결정이 되며, 여론조사는 이 유권자 지지율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문제는 현대 선거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주도하는 기관이 언론이라는 데 있다. 즉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인 여론조사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유포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곧 언론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선거 여론조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네트워크 뉴스와 전국지는 물론 지방지까지도 단독 혹은 연합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다. 특히 1992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씨엔엔>, <유에스에이 투데이>, 갤럽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매일여론조사(tracking polls)는 선거 여론조사의 극단적인 양태를 보여준다. 이 조사는 선거에 임박한 한 달여 동안 매일 후보지지율의 변화를 조사한다. 따라서 미국 유권자는 선거기간동안 여론조사를 보도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 우리 나라의 선거 여론조사도 그 수와 규모에 있어서는 여론조사의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각 언론사는 현행 통합선거법에 규정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이 시작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보도하는 것은 물론, 공표 금지기간 중에도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그 결과를 지면에 반영하고 있다. 확인된 자료만 종합해 보아도, 1997년 10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79일 동안 103회의 전국 여론조사가 수행되었다.¹⁾

1) 이준웅,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2호 (봄), 253-297, 1999.

이 중 KBS가 후원한 코리아리서치의 조사가 6건, MBC와 조선일보가 후원한 한국갤럽의 조사가 18건,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조사가 각각 16건과 13건, 기타 SBS,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사가 의뢰한 조사가 41건 등 전체 조사의 약 90%가 언론사가 후원하거나 직접 수행한 여론조사였다.

이 글의 목적은 언론이 주도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선거 여론조사를 언론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론조사 보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일견 자명한 듯이 보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언론의 선거여론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언론이 주도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의도와 그 기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선거 여론조사의 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괄하는 한편, 그 문제의 원인이 여론조사 자체의 한계, 여론조사 기사작성의 문제, 선거보도 방식의 문제 등에 편재한다는 점을 분석해서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 첫 번째는 과학적 방법론에 충실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언론사에 조사 연구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는 전통적인 여론조사에 보완적인 새로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여론조사의 기법으로 '이슈 중심적 (issue-oriented) 여론조사 기획'과 '숙의적 여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s) 기법의 도입'을 제안할 것이다.

II.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보는 관점들

먼저 선거 여론조사가 선거보도에 있어서 수행하는 역할을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정밀 저널리즘이란 현대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의 발전에 따라 대규모의 수용자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된 조건에서,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해서 기사자료를 수집하고 기사작성에 활용하는 저널리즘의 한 방식을 의미한다. 1973년 필립 메이어(Phillp Meyer)가 그의 저서 <정밀 저널리즘>에서 주창한 이래, 이 보도방식은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보도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정밀 저널리즘의 관점에 따르면 선거보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 또는 한 발 더 나가 언론이 여론조사를 후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객관적 조사'와 '불편 부당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임박한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평가와 후보지지도 등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식견 있는 선택(informed decision-making)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이며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언론의 선거여론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언론이 주도하는 선거여론조사의 의도와
기능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예를 들어, 베이어²⁾는 3명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선거구도에서, 유권자의 후보지지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가 만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이미지, 후보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선거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투표의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사한다. 따라서 언론이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유권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면, 유권자는 정치적 선택을 내릴 때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의 선거여론조사 보도는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도와줌으로써 민주적 선거과정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정밀 저널리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밀 저널리즘의 의도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초래하는 결과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비판은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서, 선거 여론조사의 의도 자체가 유권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거이벤트, 즉 기사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으며, 때로는 언론의 객관성 부재를 눈속임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기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먼저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그 의도와는 달리)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그레이버³⁾에 의하면, 언론은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어떤 후보의 선거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결국 누가 앞서고 있는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경마 보도식' 기사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마 보도식 기사는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흥미거리만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언론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경마 보도식 기사에 치중했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⁴⁾ 경마 보도식 보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기사가 유권자의 '식견 있는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나 쟁점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이미슨⁵⁾과 패터슨⁶⁾은 언론의 정치기사가 '전략 중심적 보도'가 되는 데에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결정적으로 기여

2) Meyer, Philip., "The media reformation: Giving the agenda back to the people", In Michael Nelson (Eds.), *The elections of 1992* (pp.89-108), Washington, D.C.: CQ Press, 1993.

3) Graber, Doris A.,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3rd Ed.), Washington, D.C.: CQ Press, 1989.

4) Broh, C. Anthony, "Horse-race journalism: Reporting the polls in the 1976 elec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4, 514-29, 1980.; Ratzan, Scott C., "The real agenda sett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2, 451-463, 1989.; Stovall, James G., "Coverage of the 1984 campaign", *Journalism Quarterly*, 63, 443-449, 484, 1986.

5) Jamieson, Kathleen H., *Dirty politics: Deception, distraction,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6) Patterson, Thomas E., *Out of order*, New York: Knopf, 1993.

한다고 비판한다. 전략 중심적 보도란 후보자의 승패와 관련된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후보자들의 모든 행동을 선거전에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전술로서 묘사하는 보도양식을 의미한다. 이들은 언론의 선거보도가 진정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전략 중심적 보도가 아닌 '이슈 중심적 보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결과를 참조하는 기사는 흔히 후보들간의 '전쟁'이나 '게임'과 관련된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찬 전략 중심적 보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검증된 바 있다. 1992년 <씨엔엔>과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갤럽과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선거 보도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상의 선두주자와 후보주자간의 격차에 변화가 커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인용하면서 동시에 전략 중심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선거보도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⁷⁾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⁸⁾ 전략 중심적 보도의 폐해는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기고 지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 중심적 보도를 많이 접한 유권자는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커지며, 결국 선거참여 의욕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의 목적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의 식견 있는 선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비판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란 그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사건'이며, 언론이 선거 여론조사를 후원하거나 실행하는 이유는 선거와 관련된 뉴스거리를 만들어 대중의 주목을 끌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 결국 선거 여론조사의 진정한 목적은 언론이 선거기간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 만들어 낸 유사사건(pseudo-events)이라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기틀린¹⁰⁾은 언론이 여론조사를 후원하거나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객관적인 보도를 이념으로 하는 언론이 '객관 보도'를 구현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학적 방법에 의존해서 객관성을 보장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선거보도와 같이 객관적이기가 힘든 뉴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한 도구 또는 방편으로서 확률적 표집과 변량통제 기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른데, 그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리라는

7) Rhee, J. W., "How polls drive campaign coverage: The Gallup/CNN/USA Today tracking poll and USA Today's coverage of the 1992 presidential campaign", *Political Communication*, 12, 213-229, 1996.

8) Cappella, Joseph N., & Jamieson, Kathleen H., *Spiral of cynicism*, New York: Oxford, 1997.

9) Cockburn, Alexander, & Ridgeway, James., "The world of appearance", In T. Ferguson and J. Rogers (Eds.), *The hidden election :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1980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Pantheon, 1981 ; Holley, Jack K., "The press and political polling", In Paul J. Lavrakas and Jack K. Holley (Eds.), *Poling and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pp. 215-237), Newbury Park: Sage, 1991.

10) Gitlin, Todd., "Bites and blips: Chunk news, savvy talk and the bifurcation of American politics", In Peter Dahlgren and Colin Sparks (Ed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Journalism and the public sphere* (pp.119-136), New York: Routledge, 1991.

기본적인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거여론조사보도가 많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밀 저널리즘을 주창하는 입장이라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수집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 주목할 것이다. 또한 기틀린과 같이 언론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 서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언론의 보도가 객관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객관적인 보도를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변명거리일 뿐이다.

III.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언론학자들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기본적인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여론을 이용한 자료수집과 보도는 사회과학방법론을 저널리즘에 활용한 경우이므로 사회과학방법론에서 요구하는 조사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은 물론 여론

조사 보도기사에 나타나는 부적절한 기사작성의 문제, 편향적 보도의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틀의 문제 등과 같은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1. 기본적 요건의 미비

흔히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잣대로서 미국여론조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가 1969년 제시한 보도기준을 사용한다. 즉 (1)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의 확인, (2)조사에 사용된 조사지침과 설문 투명한 공개, (3)모집단의 정의와 표본 틀의 규정, (4)표집과정과 응답자 선정에 대한 설명, (5)표본의 크기, 설문 회수율, 응답자 스크리닝에 대한 설명 (6)표집오차, 통계적 가중치, 예측절차에 대한 정보, (7)하위집단의 분석결과에 대한 명시, (8)자료수집 방법, 장소, 일시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기준은 여론조사의 방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적 요건마저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¹²⁾ 1998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분석한 양승찬의 분석에 따르면, 설문문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표본 추출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응답자의 인구 사회

11) Cantril, Albert H., *The Opinion connection: Polling, politics, and the p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1.

12) 박정의, 『선거와 여론조사 보도』, 한국언론재단, 2000 ; 양승찬,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한국언론연구원, 1998 ; 유재천, "여론조사 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 서울: 나남, 1993 ; 조성겸, "국내신문의 여론조사 보도분석", 『여론조사보도』, 한국언론연구원, 1993.

학적 성격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조사 응답률(response rate)을 제시하는 것 등에 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를 지키려는 기본적인 동기과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추어 진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조사에서 응답률 또는 조사거절률을 밝히려 한다는 요구는 그리 잘 충족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사전문회사일지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응답률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너무 낮은 응답률을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거 여론조사에서 조사거절률은 약 45%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¹³⁾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16대 총선 기간 중에는 이보다 높은 60~70%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결국 우리 나라의 경우 조사 응답률은 약 30~40%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 때문에 선거조사전문기관은 물론 선거조사를 의뢰한 언론도 응답률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된 것이라 보인다.

표본선정과정과 표집오차에 대한 설명의 제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나라 조사의 형편이다. 대다수의 선거여론조사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의 하나인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¹⁵⁾ 특히 2일 정도의

조사기간에 수행되는 대부분의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가구 선정까지는 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지만, 가구 내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할당을 기준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구 내 응답자 선정에 있어서 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선정된 응답자에게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대략 3~5회의 반복해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만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나라의 선거조사는 대부분 할당표집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표본 방법을 사용했다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확률적 표집방법의 일종인 '다단계 유층표집'이라고 잘못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당표집을 사용한 경우에는 표집오차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표집오차가 ± 3.1 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정보제공이다. 표집오차 ± 3.1 이란, 1000명을 단순무선표집(simple random sampling)했을 경우에 한해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오차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자료에 기초해서 선거여론 조사 보도를 해야 하는 우리 언론은 미국여론조사협회가 제시한 선거보도의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형편에 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 Marsh, C., & Scarborough, E., "Testing nine hypotheses about quota sampling", *Journal of the Marketing Research Society*, 32(4), 485-506, 1990.

14) 이준웅,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의견 표명", 『한국방송학보』15-1호, 199-236, 2001.

15) 조상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와 할당표집 방법의 문제점", 『언론과 사회』18권, 29-53, 1997.

언론의 선거여론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언론이 주도하는 선거여론조사의 의도와
기능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예를 들어, 메이어²⁾는 3명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선거구도에서, 유권자의 후보지지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표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가 만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이미지, 후보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선거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투표의도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사한다. 따라서 언론이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유권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다면, 유권자는 정치적 선택을 내릴 때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의 선거여론조사 보도는 유권자의 후보선택을 도와줌으로써 민주적 선거과정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정밀 저널리즘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정밀 저널리즘의 의도가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초래하는 결과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비판은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서, 선거 여론조사의 의도 자체가 유권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거이벤트, 즉 기사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 있으며, 때로는 언론의 객관성 부재를 눈속임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기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먼저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그 의도와는 달리)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그레이버³⁾에 의하면, 언론은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어떤 후보의 선거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결국 누가 앞서고 있는지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경마 보도식' 기사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마 보도식 기사는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흥미거리만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언론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경마 보도식 기사에 치중했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⁴⁾ 경마 보도식 보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기사가 유권자의 '식견 있는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나 쟁점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이미슨⁵⁾과 패터슨⁶⁾은 언론의 정치기사가 '전략 중심적 보도'가 되는 데에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결정적으로 기여

2) Meyer, Philip, "The media reformation: Giving the agenda back to the people", In Michael Nelson (Eds.), *The elections of 1992* (pp.89-108), Washington, D.C.: CQ Press, 1993.

3) Graber, Doris A.,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3rd Ed.), Washington, D.C.: CQ Press, 1989.

4) Broh, C. Anthony, "Horse-race journalism: Reporting the polls in the 1976 elec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4, 511-29, 1980.; Ratzan, Scott C., "The real agenda sett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2, 451-463, 1989.; Stovall, James G., "Coverage of the 1984 campaign", *Journalism Quarterly*, 63, 443-449, 484, 1986.

5) Jamieson, Kathleen H., *Dirty politics: Deception, distraction,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6) Patterson, Thomas E., *Out of order*, New York: Knopf, 1963.

한다고 비판한다. 전략 중심적 보도란 후보자의 승패와 관련된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후보자들의 모든 행동을 선거전에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전술로서 묘사하는 보도양식을 의미한다. 이들은 언론의 선거보도가 진정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전략 중심적 보도가 아닌 '이슈 중심적 보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결과를 참조하는 기사는 흔히 후보들간의 '전쟁'이나 '게임'과 관련된 은유와 비유로 가득 찬 전략 중심적 보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검증된 바 있다. 1992년 <씨엔엔>과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갤럽과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선거 보도에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상의 선두주자와 후발주자간의 격차에 변화가 커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인용하면서 동시에 전략 중심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선거보도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⁷⁾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⁸⁾ 전략 중심적 보도의 폐해는 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기고 지는 것을 강조하는 전략 중심적 보도를 많이 접한 유권자는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커지며, 결국 선거참여 의욕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의 목적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의 식견 있는 선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비판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란 그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사건'이며, 언론이 선거 여론조사를 후원하거나 실행하는 이유는 선거와 관련된 뉴스거리를 만들어 대중의 주목을 끌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 결국 선거 여론조사의 진정한 목적은 언론이 선거기간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 만들어 낸 유사사건(pseudo-events)이라고 비판한다. 더 나아가 기틀린¹⁰⁾은 언론이 여론조사를 후원하거나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객관적인 보도를 이념으로 하는 언론이 '객관 보도'를 구현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학적 방법에 의존해서 객관성을 보장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선거보도와 같이 객관적이기가 힘든 뉴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한 도구 또는 방편으로서 확률적 표집과 변량통제 기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른데, 그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리라는

7) Rhee, J. W., "How polls drive campaign coverage: The Gallup/CNN/USA Today tracking poll and USA Today's coverage of the 1992 presidential campaign", *Political Communication*, 12, 213-229, 1996.

8) Cappella, Joseph N., & Jamieson, Kathleen H., *Spiral of cynicism*, New York: Oxford, 1997.

9) Cockburn, Alexander, & Ridgeway, James., "The world of appearance", In T. Ferguson and J. Rogers (Eds.), *The hidden election :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1980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Pantheon, 1981 ; Holley, Jack K., "The press and political polling", In Paul J. Lavrakas and Jack K. Holley (Eds.), *Poling and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pp. 215-237), Newbury Park: Sage, 1991.

10) Gitlin, Todd., "Bites and blips: Chunk news, savvy talk and the bifurcation of American politics", In Peter Dahlgren and Colin Sparks (Ed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Journalism and the public sphere* (pp.119-136), New York: Routledge, 1991.

기본적인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거여론조사보도가 많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밀 저널리즘을 주창하는 입장이라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수집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 주목할 것이다. 또한 기틀린과 같이 언론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존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 서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언론의 보도가 객관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객관적인 보도를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변명거리일 뿐이다.

III.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언론학자들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기본적인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여론을 이용한 자료수집과 보도는 사회과학방법론을 저널리즘에 활용한 경우이므로 사회과학방법론에서 요구하는 조사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은 물론 여론

조사 보도기사에 나타나는 부적절한 기사작성의 문제, 편향적 보도의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틀의 문제 등과 같은 미묘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1. 기본적 요건의 미비

흔히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잣대로서 미국여론조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가 1969년 제시한 보도기준을 사용한다. 즉 (1)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의 확인, (2)조사에 사용된 조사지침과 설문지의 투명한 공개, (3)모집단의 정의와 표본 틀의 규정, (4)표집과정과 응답자 선정에 대한 설명, (5)표본의 크기, 설문 회수율, 응답자 스크리닝에 대한 설명 (6)표집오차, 통계적 가중치, 예측절차에 대한 정보, (7)하위집단의 분석결과에 대한 명시, (8)자료수집 방법, 장소, 일시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기준은 여론조사의 방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술적 요건마저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¹²⁾ 1998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분석한 양승찬의 분석에 따르면, 설문문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표본 추출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응답자의 인구 사회

11) Cantril, Albert H., *The Opinion connection: Polling, politics, and the p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1.

12) 박정익, 『선거와 여론조사 보도』, 한국언론재단, 2000 : 양승찬,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한국언론연구원, 1998 : 유재천, "여론조사 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 서울: 나남, 1993 : 조성경, "국내신문의 여론조사 보도분석", 『여론조사보도』, 한국언론연구원, 1993.

학적 성격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조사 응답률(response rate)을 제시하는 것 등에 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를 지키려는 기본적인 동기와 사회조사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추어 진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조사에서 응답률 또는 조사거절률을 밝히려 한다는 요구는 그리 잘 충족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사전문회사일지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응답률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너무 낮은 응답률을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거 여론조사에서 조사거절률은 약 45%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¹³⁾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16대 총선 기간 중에는 이보다 높은 60~70%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결국 우리 나라의 경우 조사 응답률은 약 30~40%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이 때문에 선거조사전문기관은 물론 선거조사를 의뢰한 언론도 응답률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된 것이라 보인다.

표본선정과정과 표집오차에 대한 설명의 제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나라 조사의 형편이다. 대다수의 선거여론조사는 비확률적 표집방법의 하나인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¹⁵⁾ 특히 2일 정도의

조사기간에 수행되는 대부분의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가구 선정까지는 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지만, 가구 내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할당을 기준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구 내 응답자 선정에 있어서 무선표집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선정된 응답자에게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대략 3~5회의 반복해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만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나라의 선거조사는 대부분 할당표집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표본 방법을 사용했다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확률적 표집방법의 일종인 '다단계 유층표집'이라고 잘못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당표집을 사용한 경우에는 표집오차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표집오차가 ± 3.1 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정보제공이다. 표집오차 ± 3.1 이란, 1000명을 단순무선표집(simple random sampling)했을 경우에 한해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오차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자료에 기초해서 선거여론 조사 보도를 해야 하는 우리 언론은 미국여론조사협회가 제시한 선거보도의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형편에 처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 Marsh, C., & Scarborough, E., "Testing nine hypotheses about quota sampling", *Journal of the Marketing Research Society*, 32(4), 485-506, 1990.

14) 이준웅,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의견 표명", 『한국방송학보』15-1호, 199-236, 2001.

15) 조성걸,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와 할당표집 방법의 문제점", 『언론과 사회』18권, 29-53, 1997.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의 문제보다
부적절한 제목의 사용, 근거없는 해석,
과도한 설명 등이 보다 심각한 문제

2. 기사작성의 문제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사에 사용되는 제목, 분석, 해설 등과 같은 기사에 나타나는 부적절한 제목의 사용, 근거 없는 해석, 과도한 설명, 불분명한 참조, 그리고 선정적인 표현 등이다. 1997년 대통령선거 여론조사보도 총 58건을 분석한 양승찬¹⁶⁾에 의하면, 신문의 제1면에 나타난 문제점만 해도 부적절한 제목의 경우 21건, 결과해석의 문제 19건, 어휘사용 및 표현의 문제 14건, 분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보도 1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면을 제외한 기타 면에는 이러한 문제의 출현빈도가 더욱 많아져서 부적절한 제목의 경우 35건, 결과해석의 문제 43건, 어휘사용 및 표현의 문제 28건, 분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보도 39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적절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를 보면, 조사결과와 다른 제목을 뽑은 완전히 잘못된 제목의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균형 잡히지 않은 제목, 불분명한 제목, 그리고 근거가 없는 제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일보 1997년 11월 7일자 "DJP 단일화 잘못, 50%"라는 제목은 균형 잡히지 않은 제목을 제시한 경우이다.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단일화가 잘못이라는 응답이 50%였지만, 잘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44.4%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P 단일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만을 제시한 것은 불균형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둘째, 조사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부적절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조사결과와의 의미를 모호하게 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해석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설문내용과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근거 없는 해석을 과도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문화일보 1997년 9월 19일자 기사는 "지지계층과 성향면에서 DJ는 20대(22.2%), 30대(24.7%)와 고학력일수록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략) ... 이대표는 아들 병역문제로 30대(8.8%)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에 대한 30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회창 후보의 이미지라든지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정책이라든지 하는 요인이 젊은 유권자에게 인기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병역문제'로 한정해서 설명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셋째,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나타난 어휘사용 및 표현의 문제도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문제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나 선호도를 표현할 때 '~이나', '~밖에', '~정도'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사실보다 과장된 인상을 준다거나, '무려', '상당한', '별로', '거의' 등과 같은 부사나 형용사를 사용함으로써 지지율이나 선호도의 변화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¹⁹⁾ 또한 '의외의', '놀라운', '이번', '열광적', '차가운' 등과 같

16) 양승찬,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한국언론연구원, 1998, p.69.

17) 양승찬, 위의 책, p.57.

18) 양승찬, 위의 책, 1998, p.57.

19) 유재천, 앞의 논문.

은 형용사나 형용구를 사용함으로써 기자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²⁰⁾

넷째, 조사결과에 제시된 바가 없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강조하는 근거 없는 해석도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 1997년 9월 22일자 기사는 “김후보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인 57.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인식의 변화다”는 설명이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한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²¹⁾ 특히 후보지지율이나 선호도의 변화를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에 발생한 사건과 연관시켜 사건의 발생과 후보지지율 또는 선호도의 변화를 인과관계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흔히 문제가 된다.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 모두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원인 추론’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3. 편향적 보도의 문제

선거기간 중에 후보지지율이나 선호도의 변화는 후보자, 언론, 유권자 모두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언론이 스스로 편향된 시각에 근거해서 보도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무릅쓰지 않는 이상,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있어서 후보지지율이나 선호도를 보도함에 있어서 특정 후보에게 유

리하거나 불리하게 보도하는 ‘뻔뻔스런 편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뻔뻔스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특정 후보로 기울은’ 보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양승찬²²⁾에 의하면,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총 58건의 여론조사에 대한 신문의 보도 가운데 (1면 보도), 11건이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한 해석을, 3건이 김대중 후보에게 유리한 해석을, 1건이 이인제 후보에게 유리한 해석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이회창 후보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기사는 1건, 이인제 후보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기사는 8건이었다고 한다. 당시 여당후보인 이회창 후보에게 기울은 기사가 많았음을 실증하는 분석결과라고 하겠다.

사실 여론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불편부당성을 유지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조사결과 자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범하지 않더라도, ‘설문 주제의 선정’, ‘설문 문항의 구성’, ‘조사 결과의 강조, 선택, 삭제’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어쩌면 피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보도를 사전에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작성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여론조사 보도가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의 경계는 모호하며, 때로 후자와 같이 기능하는 경우에도 알고 보면 ‘의도된 결과’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1997년 11월 17일 1면 기사는 “이

20) 조성겸, 앞의 논문, 1993.

21) 양승찬, 앞의 논문, p.65.

22) 양승찬, 앞의 논문, p.70.

후보지지율이나 선호도의 변화를
조사 실시 직전에 발생한 사건과 인과관계로서
해석하는 것은 '근거없는 원인 추론'에 해당

회창 2위권 진입"이라는 제목 하에,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이 여론조사 기사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점에 보도되었다. 선거 한 달 전까지 김대중 후보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기사가 계속 나간 후, 결국 선거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누가 김대중과 2파전을 이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문제의 중앙일보 기사는 이회창 후보가 2위권에 진입함으로써 김대중 후보와의 2파전이 되었다는 제목을 뽑아 제시했다. 이 기사가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그 사안의 중요성만으로 보았을 때 뉴스가치가 큰 기사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이 기사 자체에 대한 '의도적인 편향'을 의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시된 다른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보면 특정인에게 기우는 해석이 두드러지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의 동일자 1면 기사는 "TV토론 직후 지지율이 빠지는 경향을 보인 이회창 후보가 이번에는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주최 TV토론 이후 '이미지가 좋아진 후보'에는 이회창 후보 29.8%, 김대중 후보 23.1%, 이인제 후보 22.4% 순이었고, '이미지가 나빠진 후보'에는 김후보 18.4%, 이인제 후보 17.7%, 이회창 후보 16.6% 순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가 결과적으로 이회창 후보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발견된 사실'에 근거한 불편부당한 기사라고 해서 편

향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설문 주제의 선택과 문항의 구성', '조사 결과의 선택과 누락', 그리고 '결과 해석에 사용된 관점과 시각'에 따라 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틀(frame)의 문제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에 여론조사 방법론을 설명하는 정보가 있는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는가, 그리고 기사가 특정후보에게 기울도록 편향되었는가 등의 문제와는 별도로 여론조사를 이해하는 기사의 구성이 어떤 틀(frame)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는 일견 미묘하고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후보들의 선거전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작성된 기사를 '전략 중심적 보도'라고 한다. 선거보도에서 전략 중심적 보도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기사가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가정 하에 작성되는 기사는 선거과정을 후보자들간의 승리를 위한 싸움, 전쟁, 게임 등으로 묘사한다. 뉴스 기사의 이야기 줄거리를 구성하는 방식을 틀(frame)이라고 하는데, 특히 선거보도와 관련해서 선거과정을 후보자들간의 싸움으로 묘사하는 방식을 '전략적 뉴스 틀'이라고 한다.²³⁾

23) Cappella & Jamieson, 앞의 논문 : Rhee, 앞의 논문.

여론조사 보도는 누가 앞서고 뒤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전략 중심적 보도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된다. 여론조사의 내용이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와 전망, 그리고 해석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이는 전략적 뉴스 틀이 된다. 전략적 뉴스 틀은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과정을 민주적 대의제 실현과정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승패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게 만들며,²⁴⁾ 심한 경우 선거와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조래한다.²⁵⁾ 언론이 전략적 뉴스 틀에 매몰될 경우, 민주적 선거과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V. 선거보도의 개선 방안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듯이 그 문제의 원인 또한 여러 곳에 있다. 우선 여론조사 기사에 필수적인 기본 요건이 빠지는 것은 여론 조사방법 자체의 부실함과 여론조사에 대한 언론인의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기사작성이나 편향의 문제는 언론인이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기사작성을 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를 비롯한 일련의 전략적 뉴스 틀에 의한 기사작성의 문제는 선거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언론인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담론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보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기사 작성 또는 보도의 편향의 문제 등이 지적되지만²⁶⁾ 이는 별로 개선된 바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히 좋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마도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서 '흥미성', '시의성' 등과 같은 뉴스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문제에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흥미성', '시의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중요한 뉴스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언론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흥미위주로 보도하지 말라'거나 '편향된 해석을 삼가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열등생에게 공부 못 한다고 잔소리하는 격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해묵은 잔소리를 되풀이하기보다는 언론이 새롭게 습득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1. 언론사내 조사연구 시스템 구축

첫째,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제시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언론은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조사 연

24) Rhee, 앞의 논문.

25) Cappella & Jamieson, 앞의 논문.

26) 박정외, 양승찬, 유재천, 각 앞의 논문; 조성검, 앞의 논문, 1993.

언론사는 여론조사와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조사연구시스템을 운영해야

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가치를 가진 자료 중의 하나이며 언론은 이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해석하는 모든 과정에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은 여론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다루기보다는 자료를 다루는 필수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조사 연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사의 사정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를 고용해서 조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되, 조사실사는 능력 있고 신뢰할만한 조사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대부분 '일 있을 때 여론조사를 발주하고, 조사보고서를 받아 그 내용을 기사화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가 기획되고 준비되는 시간도 촉박하거나 조사비용 또한 제한되어 있어, 그 결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과 비용구조 내에서, 몇 가지 주제와 설문주제를 가지고 추진되는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좋은 기사를 작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조사전문기자를 고용해서 여론조사를 전담시키고 있지만, 그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그 의도를 추측하건대, 조사결과에 대한 기밀 유지와 조사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조사전문기자가 소규모의 조사팀을 이끌고 여론 조사를 직접 기획, 실행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사가 직접 수행하는 조사의 품질이 조사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의 품질에 비해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이 이렇게 일종의 '인하우스 조사팀'을 운영하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언론의 경우 여론조사 관련 기사는 관련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으며, 언론사는 전문적인 조사기관과 장기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여론조사는 정치일정과 이슈환경의 변화를 예측해서 미리 기획되고, 조사비용은 조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된다. 조사전문기관이 조사의 품질을 일차적으로 책임지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제한된 시간 내에 조사를 수행하느라 표집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 언론사의 전문기자에게 조사자료의 한계에 대해 보고하고, 전문기자는 이를 감안해서 기사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유에스에이 투데이>에는 <정밀 저널리즘>의 저자인 필립 마이어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보고와 논평을 쓰고 있는데, 그의 기사는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참고와 참조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정확하고 통찰력이 있다. <뉴욕 타임즈>나 <런던 타임즈>의 여론조사 기사 역시 명확하고 간결한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독자로서는 전문기자와 조사기관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국 우리의 여론조사 보도가 부실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꼽는다면, 조사품질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사 기획, 실행, 보고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가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근거한 자료생산의 한 방식이라는 인식이 받아들여져야 한

다. 따라서 언론이 여론조사를 기획하면서, 조사자체를 '여론형성의 도구'로 생각하거나,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거리'로 생각하는 이상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보도는 '아카데미즘과는 다른 저널리즘의 문제'라고 주장한다든지, 여론조사 방법은 '프로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 일반 유권자는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알 필요 없다'는 태도에서도 조사 품질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2. 이슈 중심적 여론조사 기획

여론조사를 이슈 중심으로 기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고 뒤지는지 확인하는 문항을 빼고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기획하는가 아니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기획하는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가 누가 이기는지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뉴스 틀'에 근거한 기사를 남기가 쉽다면, 후자는 어떤 이슈가 중요하고 그 이슈에 대한 후보와 유권자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이슈 중심적 보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실언을 했는가, 어떤 후보가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선거 이벤트를 수행했는가, 어떤 후보가 추문에 휩싸였는가 등과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결과를 해석한다면, '전략 중심적 뉴스'가 된다. 하지만 어떤 후보의 통일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는가, 후보들의 정치이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후보가 유권자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논의를 맥락으로 여론조사를 기획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2년 2월 1일자로 보도된, 중앙일보의 '의원 노선 대해부'라는 특집 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에 대해 이념적 정체성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싣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의견의 다양화를 실증하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 자체로도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되지만, 우리사회의 중요 정책분야의 핵심 쟁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기획조사를 선거여론조사에 적용시킬 수 있다. 즉 각 정책분야에 대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견조사와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지지 여부 및 지지이유와 함께 조사해서 보도한다면, 전형적인 '이슈 중심적 여론조사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슈 중심적 여론조사의 하나로 주목할 만한 시도는 '숙의 여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기법이다. 1996년 텍사스 오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된 전국이슈회의(National Issue Convention)는 숙의여론조사 기법을 도입해서 여론의 변화를 추적했다. 이 방법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물어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존의 여론조사와 다른 점은 첫 번째 조사에 응했던 유권자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조직된 쟁점 토론회나 집단토론회 등에 참가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한 후, 여론조사에 다시 응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여론의 객관적 측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여론조사의 목적과는 다르다. 표집방법이나 질문

언론이 여론조사를 여론형성의 도구나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뉴스거리로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개선은 있을 수 없어

지 작성 방법도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법과 많이 다르다. 하지만 속의 여론조사는 이슈의 전개에 따른 유권자 관여의 증감과 의견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기대와 참여의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슈 중심적 여론조사 보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출구조사(exit poll) 역시 이슈 중심적 보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론조사 기법이다. 출구조사는 흔히 투표결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출구조사 기능의 한 측면만을 보는 것이다.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특정 후보에 대해 언제 어떤 이유로 표를 결정했는지 밝혀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선거과정과 결과에 대한 중요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 유권자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출구조사의 위력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선거에 촉을 했는가에 있지 않았다. 그보다 출구조사 결과는 유권자 선택의 근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고어 진영이 효과적인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 1주일 전에 최종적으로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투표자는 48대 42로 고어에게 투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부시는 '인품'에서 앞섰지만 고어는 '이슈'에서 앞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투표자의 5분의 3이 '선거 이슈'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56%가 고어에게 표를 주었으며, 나머지 '인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투표자들 가운데 약 절반

이 부시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유권자가 행한 표의 의미를 밝혀주는 심층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정익, 『선거와 여론조사 보도』, 한국언론재단, 2000.
- 양승찬, 『미디어 정치시대 선거보도』, 한국언론연구원, 1998.
- 유재천, "여론조사 보도의 실태와 문제점",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 서울: 나남, 1993.
- 이준용,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의견 표명", 『한국방송학보』15-1호, 199-236, 2001.
- 이준용,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2호 (봄), 253-297, 1999.
- 조성경,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와 할당표집 방법의 문제점", 『언론과 사회』18권, 29-53, 1997.
- 조성경, "국내신문의 여론조사 보도분석", 『여론조사보도』, 한국언론연구원, 1993.
- Broh, C. Anthony, "Horse race journalism: Reporting the polls in the 1976 elec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4, 514-29, 1980.
- Cantril, Albert H., *The Opinion connection: Polling, politics, and the pres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1991.
- Cappella, Joseph N., & Jamieson, Kathleen H., *Spiral of cynicism*, New York: Oxford, 1997.
- Creps, Irving, *Pre-election polling: Sources of accuracy and err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88.
- Cockburn, Alexander, & Ridgeway, James, "The world of

-
- appearance", In T. Ferguson and J. Rogers (Eds.), *The hidden election: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1980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Pantheon, 1981.
- Gitlin, Todd, "Bites and blips: Chunk news, sawy talk and the bifurcation of American politics", In Peter Dahlgren and Colin Sparks (Eds.), *Communication and citizenship: Journalism and the public sphere* (pp.119-136). New York: Routledge, 1991.
- Graber, Doris A.,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3rd Ed.), Washington, D.C.: CQ Press, 1989.
- Holley, Jack K., "The press and political polling", In Paul J. Lavrakas and Jack K. Holley (Eds.), *Poling and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pp. 215-237), Newbury Park: Sage, 1991.
- Jamieson, Kathleen H., *Dirty politics: Deception, distraction,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Marsh, C., & Scarborough, E., "Testing nine hypotheses about quota sampling", *Journal of the Marketing Research Society*, 32(4), 485-506, 1990.
- Meyer, Philip., *Precision journalism: A reporters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metho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3.
- Meyer, Philip., "The media reformation: Giving the agenda back to the people", In Michael Nelson (Eds.), *The elections of 1992* (pp.89-108), Washington, D.C.: CQ Press, 1993.
- Patterson, Thomas E., *Out of order*, New York: Knopf, 1993.
- Ratzan, Scott C., "The real agenda sette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2, 451-463, 1989.
- Rhee, J. W., "Strategy and Issue Frames in Election Campaign Coverage: A Social Cognitive Account of Framing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7(3), 26-48, 1997.
- Rhee, J. W., "How polls drive campaign coverage: The Gallup/CNN/USA Today tracking poll and USA Today's coverage of the 1992 presidential campaign", *Political Communication*, 12, 213-229, 1996.
- Stovall, James G., "Coverage of the 1984 campaign", *Journalism Quarterly*, 63, 443-449, 484, 1986.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례 검토*

I. 머리말

언론보도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범주를 넘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그 보도내용에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언론보도의 내용이 단순히 타인이나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논평과 의견의 발표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널리 인정하게 되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논평 혹은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그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사실적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되고 있다.¹⁾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의견표명(논평)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의견과 사실의 구별에 관한 미국과 일본에서의 판결례 및 우리 나라 대법원과 하급심에서의 판결례를 차례로 살펴본 뒤, 그에 관한 법리의 적용방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권 기 훈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Harvard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LL.M.) 졸업

□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언론사건 전담부(민사8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2001년 11월 사법부 그룹웨어(Courtnet) 내의 언론법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하여 열린 제1회 언론법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 보완한 것이다.

1) 법원행정처, 『언론재판실무편람』, p.42.

II. 미국 판결례에서의 “Fair Comment” 이론의 발전과정

1. 논평의 자유에 관한 전통적 입장

보통법(common law)상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전통적인 항변 중의 하나가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공중의 관심사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누구라도 논평의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공적 활동과는 무관한 사생활의 폭로나 인신공격에 이르지 아니하고 공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표현이나 용어가 아무리 신랄, 격렬하더라도, 또 그 논평의 결과 피논평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에도 논평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법리이다.²⁾

공정한 논평 항변의 역할은 자발적으로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 연예인, 정치가, 운동선수 등 - 의 공적 행위에 대한 의견표명을 보호하는 데에 있었고, 예전부터 법원은 공적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언론의 적법한 작용이므로 그것이 간혹 명예훼손의 구실이 되기도 하지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위 항변의 주된 특징은, 첫째로 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에 기초한 의견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둘째로 넓은 의미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일에 관한 논평을 허용하는 광범위함에 있었다.³⁾

공정한 논평 항변의 법리가 발달하면서, ① 의견의 표현이 진실되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②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행위에 대한 비평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그 표현이 적대적인 경우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⁴⁾

2.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의 등장

공정한 논평 항변의 법리는 기초 사실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배제된다는 제약이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 1960년대 미국 남부에서 민권투쟁이 일어날 무렵에 발생하였다.⁵⁾

당시 미국의 전국적인 언론매체들은 남부의 민권투쟁을 광범위하게 보도하였는데, 이를 가장 공격적으로 다룬 언론기관이 New York Times 신문사였다. 위 신문사는 1960. 3.경 민권운동 지지자들이 서명한 “그들의 일어나는 목소리에 귀기울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광고에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남부의 위법자들이 수많은 위법행위에 개입함으로써 Alabama주 Montgomery시 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광고 내용 중 일부는 진실이 아니었다. 그러자, Montgomery시 경찰책임자인 원고는 경찰력에 대한 비평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신문사와 그 광고에 서명한 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그 광고 중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

2) 幾代通, “アメリカ法における名譽毀損と Fair Comment - 事實の眞實證明に關して”, 『未延遷曆記念・英美私法論集』, p.26.

3) Harvey L. Zuckman, Robert L. Corn-Revere, Robert M. Frieden, Charles H. Kennedy, *Modern Communication Law*, 1999, p.422.

4) Wayne Overbeck, Rick D. Pullen,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2nd Ed.), 1985, p.96. 공정한 논평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명예훼손이 허용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어막 구실을 하였다. Zuckman 외 3인, 위의 책, p.457.

5) 아래의 내용은 Zuckman 외 3인, 위의 책, pp.458-459에서 재인용.

되어 있어 공정한 논평 항변을 원용할 수 없게 되자, 그 때까지는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이론 - 공무원에 대하여는 오류가 포함된 명예훼손 기사를 공표하는 경우에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된다는 주장 - 을 제기하였다.

Alabama주 대법원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오류가 포함된 기사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 즉, 그 비진실성을 알고 있었거나 그 진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 공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이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1964)⁶⁾이다.

위 판결에서의 법리가 이른바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인데, 이로써 언론매체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문제된 명예훼손적 기사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에 따라 구분되기보다는 그 보도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 악의라고 평가될만한 고도의 과실에 의하여 공표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고, 원고로서는 언론매체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큰 제약을 안게 되었다.

3. 독립적인 헌법상 의견특권(constitutional opinion privilege) 이론의 등장

New York Times 판결 이후 사실·의견의 구분 논의는 실질적으로 현실적 악의의 법리의 그늘에 가려 숨어버렸다가 Gertz v. Robert Welch, Inc. 판결(1974)⁷⁾에서 종전의 공정한

논평 항변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Chicago의 유명한 인권변호사가 경찰관의 독직가혹행위에 의해 살해당한 소년의 유족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전국적인 잡지사가 그를 “공산주의자이고 경찰불신화 조직의 일원”이라고 보도하자 그 변호사가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그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사적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공적 논쟁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없어 그를 명예훼손적 보도에 있어서의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 악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⁸⁾

위 판시내용과 같이 위 사건의 당초의 쟁점은 New York Times 판결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 법리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적 인물과 사인의 범위를 구분 짓는 것이었는데, Powell 대법관은 위 판결에서 “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틀린 의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의견이 아무리 유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정을 위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의 양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과의 경쟁에 의존한다”고 실시하였다. 그런데, Powell 대법관은 위 실시로서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한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의견특권 이론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히지는 아니하였음에도, 연방과 주의 많은 하급심법원들은 Powell 대법관의 실시내용을 그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Gertz 판결은 의견표명에 대하여 독립적인 헌법상 의견특권이 부여된다는 이론의 논거가 되었다.⁹⁾

6) 376 U.S. 254, 84 S.Ct. 710, 11 L.Ed.2d 686 (1964).

7) 418 U.S. 323, 94 S.Ct. 2997, 41 L.Ed.2d 789 (1974).

8) Gertz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박용상, 『언론과 개인 법익 -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 1997, pp.286-287과 pp.441-442 참조.

9) 박용상, 위의 책, p.442 참조.

한편, Gertz 판결 이후 의견·사실의 구분을 고집한 하급심판결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는 Ollman v. Evans 판결(1984)¹⁰⁾에서 Starr 판사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를 위하여 실시한 내용이 꼽힌다.¹¹⁾ Starr 판사는 위 판결에서, 언론보도에 명예훼손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복수의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는데, 그 요소로서 ①문제된 내용 중 특정한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②그 내용의 입증가능성(법원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진실 혹은 허위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지 여부), ③그 내용이 들어있는 문맥에서의 좁은 의미, ④그 내용이 보도된 보다 광범위한 문맥 또는 배경(그 기사가 포함된 신문 전체의 인상)을 열거하였다.

4. 헌법상 의견특권 이론의 종말

Gertz 판결이 선고된 후 16년 만에 연방대법원은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판결(1990)¹²⁾에서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시를 하였다.

Ohio주 신문의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전직 고교 레슬링코치인 Milkovich가 그의 팀과 다른 학교팀 사이의 싸움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한 증언과 관련하여, “그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고가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뒤 청문절차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이 학교 운영자나 코치로부터 배우기를 바라는 그

런 종류의 교육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에 Milkovich는 그 칼럼의 제목과 몇몇 표현이 자신이 위증죄를 범하였다고 적시한 것에 대하여 그 자체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Ohio주 사실심법원은, 한편으로 Gertz 판결의 설시에 의거하여 위 기사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의견에 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공적 인물임에도 현실적 악의에 대한 일응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위 사실심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고 Ohio주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사건이송명령(certiorari)을 내려 위 사건을 심리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의견이라고 이름 붙여진 표현에 대하여 별개의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면서, Ohio 주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적 보도임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언론매체에 부여되었던 종래의 헌법적 보호장치를 검토한 뒤, 다른 별개의 특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대중에 대한 뉴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짓고, Gertz 판결에서 Powell 대법관이 실시한 내용은 수정헌법 제1조가 ‘의견의 시장’을 보호한다는 Holmes 대법관의 유명한 표현을 부언한 것에 불과하며 의견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을 보호하는 새로운 특권을 선언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

10) 750 F.2d 970, 242 U.S. App. D.C. 301 (D.C.Cir. 1984). 이듬해 연방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한 사건이송명령(certiorari) 신청이 기각되었다.

11) Starr 판사는, 피고가 정치학교수 Ollman(원고)에 대하여 “정치적 행동주의자로서 정치적 마르크시즘의 공공연한 지지자이며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고 단지 순전한 행동주의자”라고 언급한 부분을 의견표명으로 취급하였다. Ollman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박용상, 위의 책, pp.448-449 참조.

12) 497 U.S. 1, 110 S.Ct. 2695, 111 L.Ed.2d 1 (1990).

다.¹³⁾

연방대법원은 나아가, 의견특권 이론은 의견의 표현 중에는 객관적 사실의 주장이 함축된 경우가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하면서, Milkovich에 관한 기사의 표제와 내용은 원고가 위증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사실을 암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의견·사실의 구분 대신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주장과 입증불가능한 주장이라는 새로운 이분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Milkovich 판결의 실시는 함축적인 것이어서 Milkovich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는 표현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표현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여전히 난해하여 논평 또는 의견의 표명이 소송대상이 되는지 여부 - 즉 어느 것이 입증가능하고 어느 것이 입증불가능한지 - 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¹⁴⁾

III. 일본 판결례에서의 “공정한 논평” 이론의 도입 및 발전과정¹⁵⁾

1. 동경지방법재판소 1972년(소화 47년) 7월 12일 판례타임즈 282호196면 판결

일간지 아라가타(新潟)일보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있는 일본여자프로레슬링협회에 관하여, 위 협회는 원고의 1인 체제로 운영되어 내분이 끊이지 않고, 또 위 협회의 여자프로레슬러는 ‘스트립과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논평자가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① 논평의 전제로 삼은 사실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그 목적이 공적 활동과는 무관계한 단순한 인신공격은 아니고 공익에 관계되어 있을 것, ③ 논평의 대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일반공중의 관심사일 것을 들면서,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그 논평에 의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논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¹⁶⁾ 위 신문의 논평기사는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위 판결은 하급심판결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공정한 논평의 법리를 언론자유 관점에서 들여와 심도 있게 논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평가된다.¹⁷⁾

2. 최고재판소 1989년(평성 원년) 12월 21일 민집 43권12호2252면 판결

13) Zuckman 외 3인, 위의 책, pp.461-463 참조.

14) Milkovich 판결 이후에도 미국의 주법원 가운데 일부만이 Milkovich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고, 여전히 Gertz 판결이나 Ollman 판결을 적용하고 있는 주법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구현, 『미국언론법』, 1999, p.172 참조.

15) 일본에서도 전통적인 영미법의 태도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의견의 표명과 사실의 적시는 구별됨을 전제로 하여 공정한 논평의 법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설로 인정되고 있다. 堀内 明, “公正な論評”, 『新・裁判實務大系 9 - 名譽・プライバシー保護關係訴訟法』, 2001, p.38. 아래에서는 위 법리가 판결례를 통하여 승인되기에 이른 경위를 살펴본다.

16) 大石泰彦, “公正な論評(ファクト・コメント)の法理”, 『現代判例民法學 理論 展望: 森川章先生古稀祝賀論文集』, 1999, p.558에서 재인용.

17) 山川洋一郎, “公正な論評”, 『現代損害賠償法講座 2 - 名譽・プライバシー』, 1972, p.184.

위 1.항의 판결 이후 하급심판결에서 수 차례 등장하였던 이른바 공정한 논평의 법리를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승인, 적용한 판결이다.¹⁸⁾

나가사키(長崎)시의 공립소학교에서 통지표의 양식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자, 시는 소학교 교장 모임에서 작성한 이른바 '교장모임안'을 가지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는데, 그 시내의 공립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 원고들(68명)은 1980년 제2학기에 '교장모임안'에 반대하여 통지표를 기입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통지표를 배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나가사키교육정상화부모모임'이라는 명의로 "교사로서의 능력 자체를 의심받게 되는 '어리석은 저항'"이라고 교사들을 지탄하고, 원고들의 이름, 근무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통지표문제로 안 유해 무능교사의 일람표"라는 문건을 첨부한 전단 약 5천매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전단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뒤 피고가 상고한 사건이다.

최고재판소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의 면책요건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유로이 비판, 논평하는 것은 원래부터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한 행동인 경우에는 그 비판 등으로 당해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

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전제가 된 사실이 주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으로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한 것이 아닌 한, 명예침해의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사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파기자판하였다.¹⁹⁾

이 판결은 전단의 배포행위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그 전단에 이름이 거명된 교사의 명예 및 인격적 이익이 충돌한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킨 것인데, 면책요건으로서 전제 사실에 관하여는 진실성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기한 의견 내지 논평에 관하여는 굳이 그 내용의 합리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는 것이 아닌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완화된 면책요건을 인정하였다.²⁰⁾

3. 동경고등재판소 1994년(평성 6년) 1월 27일 판례시보 1502호114면 판결

위 2.항의 최고재판소 1989년 12월 21일자 판결 이후에 선고된 하급심판결 중 자주 인용되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원고는 1981년 당시 원고의 처에 대하여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살인미수 및 살인죄의 각 공범 혐의자로서 수시로 보도되어 오다가(이른바 '로스의혹') 1985년 살인미수사건으로

18) 大石泰彦, 위의 논문, p.554.

19) 山口成樹, "論評を主題としてビラの配布行為につき名譽毀損は成立しないが, 配布行為に起因して第三者が行った平穩な生活の侵害につき配布者の不法行為は成立する", 『法學協會雜誌』 109권 11호(1992. 11), pp.1808-1809에서 재인용. 다만 최고재판소는, 위 전단 배포행위 이후 심야에 원고들의 집에 비난성 익명전화나 무언전화가 걸려온 데 대하여는 그와 같은 피해가 피고의 전단 배포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의 사생활의 평온 등의 인격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20) 堀内 明, 위의 논문, pp.40-41 참조.

구속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 무렵, 석간신문인 석간후지(フジ)는 “원고는 극악인, 사형감이다(極惡人, 死刑よ)”라는 표제로 ‘지능범 플러스 흉악범이어서 전대미문의 만만찮은 자’라는 검사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포함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된 뒤 피고가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법원은 신문, 주간지의 기사에 포함된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①당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②④그 의견의 기초사실이 진실성 또는 상당성을 갖추거나 ⑥또는 당해 기사가 공표된 시점에 있어서 그 의견의 기초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그 사실과 면책사실(진실성 또는 상당성 있는 사실)로부터 형성되고, ③또한 당해 의견을 기초사실로부터 추론하는 것이 부당,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한 의견표명의 공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실시하고, 사실언명과 의견표명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사실언명은 거기서 사용된 언어를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의미에 따라 이해할 경우 어떤 특정한 사람에 관한 현실의 사실 또는 행위를 서술한 표현으로서 그 사실 또는 행위의 진위가 증거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을 말하고, 반면에, 의견표명은 그 이외의 표현으로서 다의적이고 부정확하거나 막연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의미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

고 그 의미 내용에 관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언명 또는 특정한 사람의 행위 또는 성질 등에 관한 평가 또는 논평을 가한 언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²¹⁾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위 기사 중의 ‘극악인’ 또는 ‘지능범 플러스 흉악범이어서 전대미문의 만만찮은 자’라는 표현은 다의적, 평가적인 것이어서 원고에 관한 특정의 행위 또는 구체적 사실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고, 또 ‘사형감’이라는 표현 역시 사형은 법원에 의하여 선고되는 것이어서 사인이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통상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두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기사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4. 최고재판소 1997년(평성 9년) 9월 9일 민집 51권8호380면 판결

위 3.항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²²⁾

최고재판소는,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는 문제된 표현이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에 의한 명예

21) 大石泰彦, 위의 논문, pp.561-562과 八木一洋, “1. 特定の事實を基礎とする意見ないし論評の表明による名譽棄損において行為者が右事實を眞實と信ずるにつき相當の理由がある場合の不法行為の成否, 2. 名譽毀損の成否が問題となっている新聞記事における事實の摘示と意見ないし論評の表明との區別, 3. 特定の者において新聞報道等により犯罪の嫌疑の存在が廣く知れ渡っていたこととその者が當該犯罪を行ったと公表した者において右のように信ずるについての相當の理由”, 『法曹時報』 51권 2호(1999. 2), pp.257-261에서 재인용.

22) 아래의 내용은 堀内 明, 위의 논문, pp.42-43과 八木一洋, 위의 논문, pp.263-267에서 재인용.

훼손에 있어서 ①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어 있고 ②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 ③그 의견 내지 논평의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때에는 ④인신공격에 미치는 등으로 의견 내지 논평의 영역을 일탈한 것이 아닌 한, 그 행위는 위법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령 그 의견 내지 논평의 전제로 된 사실이 진실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대비하여, 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은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재판소는 나아가, 신문기사 중 명예훼손의 성부가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사용된 표현이 전후 문맥과 기사가 공표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간접적으로나 완곡하게 증거 등을 통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러한 간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분의 전후 문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항을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역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고는 극악인, 사형감이다'라는 부분은 그것과 일체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이나 기사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사귀었다는 여자가 한

말의 요점을 소개한 것임이 명백하고, '지능범 플러스 흉악범, 전대미문의 만만치 않은 자'라는 부분은 검사가 원고로부터 자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한 것을 소개한 부분의 일부이며, 당시 원고는 살인미수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조만간 공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었지만 혐의를 계속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고 살인사건에 관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 기사는 그 여자와 검사의 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원고가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사실의 적시와 함께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인격과 그 행위의 악성을 강조하는 의견 내지 논평을 공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3.항의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최고재판소가 위 2.항과 4.항의 각 판결에서 실시한, 의견 내지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한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판단기준에 기본적으로 의거하면서,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의견 내지 논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논평의 영역을 일탈하지 않는 한, 합리성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으로 평가된다.²³⁾

IV.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우리 나라의 판결례

1. 대법원 판결례

23) 최고재판소의 위 판결 2건의 평가에 관하여는 堀内 明, 위의 논문, pp.43-44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의견 내지 논평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 의견 내지 논평의 영역을 일탈한 경우에는 설사 전제사실에 관하여 진실성의 증거가 이루어지거나 상당성의 입증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堀内 明, 위의 논문, p.44.

1)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표현물에 관한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공1996하, 2983)은, 목사인 피고가 원고의 이단적인 기도원 운영과 관련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고 소속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한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므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공1997하, 2882)은 어느 교단이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 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그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대법원판결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는 그 목적과 대상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을

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와 다른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와 논평 또는 의견표명을 구별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달리 판단하는 접근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비교·형량에 의한 판단방법을 택한 것이다.²⁴⁾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공1999상, 458)

국민일보의 사회면 상단에 “벗기기 위험 수위 … 연극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 아래 “어린이들 출연 변태 성희(性戲) ‘충격’”이라는 대제목과 “내달 공연 ‘0.917’ 논란”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기사 중간에 “중년 남녀와 관계 섭득 … 술·담배도, 연출가 ‘군부의 국민유린 묘사’ 주장이라는 소제목을 삽입하여, 원고가 발표한 희곡을 기초로 공연할 계획이던 연극 관련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원고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 그 경우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24) 한기택, “광의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판례해설』 32호(99년 상반기), 1999, p.286 참조.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실시하였다.

나아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체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사실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실시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하여, 위 기사 중 ‘벗기기’ 등의 표현은 위 회곡에 관객의 저속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출연자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부분이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별도의 전제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 뒤 그 전제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

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표현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로 지목되는데,²⁵⁾ 대법원은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①의견표명의 위법성 판단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전제사실에 대한 진실의 증명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②따라서 문제된 표현행위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우선 구별하여야 하고, 후자라면 전제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③그 구별을 위하여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의 주의로 읽는 방법에 따라 그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과 함께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데에 의미가 있다.²⁶⁾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공2000.10.1.(115), 1925)

IMF 경제위기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였던 원고가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검찰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경향신문의 만평란에 원고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풍자만화를 게재한 데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25) 이 판결에 관한 평석으로는 한기택, 위의 논문 참조.

26) 이 판결에서 제시된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그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의 하급심판결들에서 기본적인 법리로서 인용되고 있다.

사건이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포함)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만평 또는 풍자만화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실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풍자만화의 경우 원고가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 등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해외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위 판결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한 의견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성립시키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²⁷⁾ 나아가 만평이나 풍자만화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명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공2001.3.15.(126), 497)

한겨레신문이 “이승만 정권 - 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 아래, 제주 4·3 사건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하여, 이승만의 유족인 원고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으로 인하여 망 이승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기사 중 ‘계엄의 불법성’을 거론한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부대상고 주장에 대하여는,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시는 잘못이지만, 위 기사 중 “당시 이승만 정권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은 그 계엄이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선포되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계엄이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임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27)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217 참조.

이는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근거(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힌 것이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대법원판결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공1998상, 1248)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²⁸⁾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공2000상, 885)

신문의 표지에 일장기를 배경으로 하고, 피해자가 목포시장으로 출마하였을 때 유세 유인물에 인쇄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힘껏 쥐고 있는 모습이 합성된 사진과 사진 하단에 적색 대형문자로 '친일매국'이라고 가입하고, 사진 중앙 부분에 "권○○(피해자) 역사관 확인수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이다.

대법원은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 위 기사는 피해자의 정책을 반대하는 향토사가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함에 있어서, 위 합성사진의 영상과 '친일매국'이라는 일종의 구호를 동원함으로써 시각적이고 압축적이며 상징적인 표현 수법으로 이러한 의견 내지 논평을 강조하는 구조를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문맥 및 구조에 비추어 위 합성사진의 영상이나 '친일매국'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사실을 기초로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실, 즉 피해자가 일장기 앞에서 실제로 충성을 맹세한 일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과거에 친일매국 행위를 한 바 있다는 등의 사실 자체를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하급심 판결례 ²⁹⁾

1) 서울지방법원 2000. 3. 29. 선고 99가합 34685 판결 [확정]³⁰⁾

판문점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김훈 중위 사건'에서 부검을 담당하였던 군의관이 현장사진을 보지 않고 부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게재되자, 그 군의관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내외 법의학자들과 법의학 교과서들이 현장검증이 끝난 시체의 부검시에는 반

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28) 본문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개념에 관하여도 이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였다.

29) 법원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 자료 중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앞서 본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이후에 선고된 최근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래에 인용된 각 하급심판결의 확정 여부는 2002. 2. 15.까지 확인된 내용이다.

30)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드시 현장검증조서를 참고하여야 하고 가능한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부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검의로서는 현장사진을 보고 비교해가며 부검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검의가 부검 전 혹은 부검감정서 작성 전에 현장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기관의 논평에 해당하고, 비록 그 기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의 논평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00. 4. 20. 선고 99나 27783 판결 [상고]

MBC에서 특정 교회의 목사와 관련한 성추문, 이단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을 계획하였다가 그 교회와 목사가 제기한 방영금지가 처분 신청사건에서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의 방영을 금지하는 신청인들 일부 승소판결³¹⁾이 선고되자 MBC측에서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성추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성추문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들에게 방영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위 교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의하여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의 방영은 위 교회의 신도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방송목적은 이단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이단성에 관한 종교적 분석은 방송국이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단성 여부에 관한 방영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나 5866 판결 [상고]

국무총리를 역임한 후 사립대학교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말에 학도병이었고 일본군 소위였으며, 일제 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하였다”는 취지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고백한 내용이 보도된 후, 위 대학교의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이를 친일행각이라고 평가하면서 원고를 전범, 매국노라고 칭하고 원고에 의하여 위 재단법인의 재정부실까지 초래되었다면서 이사장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MBC가 텔레비전 뉴스시간을 통하여 위 대학교의 교수이자 동문 교수 협의회장의 “독립군과 싸운 경력을 가진 분...”이라는 인터뷰와 어떤 학생의 “전범들이 다 자기가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용서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안 해요”라는 인터뷰 및 취재기자의 “국무총리와 대학총장을 두루 거친 사회지도층 인사의 친일고백...”이라는 멘트를 방송한 데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위 방송은 원고의 행위를 ‘친일행각’, ‘친일고백’이라고 평가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일본군 장교훈련을 받은 후 소대장으로 팔로군과 한 번 전투를 한 경력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내용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도, 거기에 덧붙여 “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거나 “원고가 전범이거나 전범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5. 11. 선고 99카합1131 판결.

교수 및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위 인터뷰의 내용들까지 ‘친일행각’이라는 평가의 전제로 삼았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었고, 원고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였던 내용을 친일고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친일행위라고 고백하였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나아가 위 방송 중 ‘친일행각’, ‘친일고백’, ‘전범’이라는 표현은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내지 평가를 표명한 것으로서 그 전제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평가의 전제사실-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는 부분과 원고가 전범이거나 전범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 2001. 2. 8. 선고 2000가합51181 판결 [확정]

음악교수인 원고가, 피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의 음악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 뒤, 그 문화재단의 음악담당 상무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서 “원고의 연주가 아주 실망스러웠다. 연습부족으로 문화재단의 명성에 상처를 주는 연주자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E-Mail)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전자우편의 원문을 전달받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연주회는 원고와 참석관중 대부분이 만족한 성공적인 것이었음에도 피고측으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음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적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예술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연주 또는 연주자에 대한 평가란 다분히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고, 이러한 평가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피고가 소외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내용은 원고의 연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느낀 의견 또는 비평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라거나 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 2001. 4. 19. 선고 2000나9859 판결 [상고]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검찰이 이른바 ‘조폐공사파업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의 휴대폰 통화를 감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시한 데 대하여, 위 사건 수사를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인 원고들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위 사설에서 감청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서 적시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일반 독자가 읽는 방법으로 위 사설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사설은 원고들이 감청을 한 다음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위 사설이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사건이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포함)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만평 또는 풍자만화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풍자만화의 경우 원고가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 등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가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해외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위 판결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한 의견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성립시키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고,²⁷⁾ 나아가 만평이나 풍자만화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명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공2001.3.15.(126), 497)

한겨레신문이 “이승만 정권 - 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 아래, 제주 4·3 사건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하여, 이승만의 유족인 원고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으로 인하여 망 이승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기사 중 ‘계엄의 불법성’을 거론한 부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부대상고 주장에 대하여는,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시는 잘못이지만, 위 기사 중 “당시 이승만 정권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은 그 계엄이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선포되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계엄이 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임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27)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217 참조.

이는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근거(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힌 것이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대법원판결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공1998상, 1248)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²⁸⁾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공2000상, 885)

신문의 표지에 일장기를 배경으로 하고, 피해자가 목포시장으로 출마하였을 때 유세 유인물에 인쇄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힘껏 쥐고 있는 모습이 합성된 사진과 사진 하단에 적색 대형문자로 '친일매국'이라고 기입하고, 사진 중앙 부분에 "권○○(피해자) 역사관 확인수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이다.

대법원은 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 위 기사는 피해자의 정책을 반대하는 향토사가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함에 있어서, 위 합성사진의 영상과 '친일매국'이라는 일종의 구호를 동원함으로써 시각적이고 압축적이며 상징적인 표현 수법으로 이러한 의견 내지 논평을 강조하는 구조를 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문맥 및 구조에 비추어 위 합성사진의 영상이나 '친일매국'이라는 문구가 적시된 사실을 기초로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실, 즉 피해자가 일장기 앞에서 실제로 충성을 맹세한 일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과거에 친일매국 행위를 한 바 있다는 등의 사실 자체를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하급심 판결례 ²⁹⁾

1) 서울지방법원 2000. 3. 29. 선고 99가합 34685 판결 [확정]³⁰⁾

판문점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생한 이른바 '김훈 중위 사건'에서 부검을 담당하였던 군의관이 현장사진을 보지 않고 부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게재되자, 그 군의관이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국내외 법의학자들과 법의학 교과서들이 현장검증이 끝난 시체의 부검시에는 반

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28) 본문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개념에 관하여도 이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하였다.

29) 법원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 자료 중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앞서 본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이후에 선고된 최근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래에 인용된 각 하급심판결의 확정 여부는 2002. 2. 15.까지 확인된 내용이다.

30)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드시 현장검증조서를 참고하여야 하고 가능한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부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검의로서는 현장사진을 보고 비교해가며 부검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검의가 부검 전 혹은 부검감정서 작성 전에 현장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기관의 논평에 해당하고, 비록 그 기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의 논평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00. 4. 20. 선고 99나 27783 판결 [상고]

MBC에서 특정 교회의 목사와 관련한 성추문, 이단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을 계획하였다가 그 교회와 목사가 제기한 방영금지가 처분 신청사건에서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의 방영을 금지하는 신청인들 일부 승소판결³¹⁾이 선고되자 MBC측에서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성추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성추문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들에게 방영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위 교회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의하여 이단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의 방영은 위 교회의 신도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방송목적은 이단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이단성에 관한 종교적 분석은 방송국이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단성 여부에 관한 방영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나 8566 판결 [상고]

국무총리를 역임한 후 사립대학교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말에 학도병이었고 일본군 소위였으며, 일제 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하였다”는 취지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고백한 내용이 보도된 후, 위 대학교의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이를 친일행각이라고 평가하면서 원고를 전범, 매국노라고 칭하고 원고에 의하여 위 재단법인의 재정부실까지 초래되었다면서 이사장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MBC가 텔레비전 뉴스시간을 통하여 위 대학교의 교수이자 동문 교수 협의회장의 “독립군과 싸운 경력을 가진 분...”이라는 인터뷰와 어떤 학생의 “전범들이 다 자기가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용서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안 해요”라는 인터뷰 및 취재기자의 “국무총리와 대학총장을 두루 거친 사회지도층 인사의 친일고백...”이라는 멘트를 방송한 데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위 방송은 원고의 행위를 ‘친일행각’, ‘친일고백’이라고 평가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일본군 장교훈련을 받은 후 소대장으로 팔로군과 한 번 전투를 한 경력이 있다고 스스로 밝힌 내용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면서도, 거기에 덧붙여 “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거나 “원고가 전범이거나 전범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9. 5. 11. 선고 99카합1131 판결.

교수 및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위 인터뷰의 내용들까지 ‘친일행각’이라는 평가의 전제로 삼았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었고, 원고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였던 내용을 친일고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원고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친일행위라고 고백하였다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나아가 위 방송 중 ‘친일행각’, ‘친일고백’, ‘전범’이라는 표현은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내지 평가를 표명한 것으로서 그 전제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평가의 전제사실-원고가 독립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는 부분과 원고가 전범이거나 전범에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였다.

4) 서울지방법원 2001. 2. 8. 선고 2000가합51181 판결 [확정]

음악교수인 원고가, 피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의 음악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 뒤, 그 문화재단의 음악담당 상무인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서 “원고의 연주가 아주 실망스러웠다. 연습부족으로 문화재단의 명성에 상처를 주는 연주자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E-Mail)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전자우편의 원문을 전달받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연주회는 원고와 참석관중 대부분이 만족한 성공적인 것이었음에도 피고측으로부터 모욕적인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음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적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예술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연주 또는 연주자에 대한 평가란 다분히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고, 이러한 평가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피고가 소외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의 내용은 원고의 연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느낀 의견 또는 비평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라거나 모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서울고등법원 2001. 4. 19. 선고 2000나9859 판결 [상고]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검찰의 감청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검찰이 이른바 ‘조폐공사파업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의 휴대폰 통화를 감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시한 데 대하여, 위 사건 수사를 위하여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성원인 원고들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위 사설에서 감청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로서 적시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일반 독자가 읽는 방법으로 위 사설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사설은 원고들이 감청을 한 다음 감청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감청사실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위 사설이 ‘의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실에 반하고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사실에 적시된 사실 및 정황만으로는 원고들이 감청을 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99나67484 판결 [상고기각³²⁾으로 확정]

조선일보 기자인 원고(A)가, 월간 『말』지와 『인물과 사상』 잡지에 원고가 이른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 논쟁의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먼저 월간 『말』지의 기사에서 이른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 논쟁 과정에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보인 태도는 정신분석학을 통한 병리학적 심리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 결과 전형적인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서술한 뒤,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한 데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사실적시를 통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여야 하고,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월간 『말』지의 기사 중 “그의 ‘지적 능력’은 뛰어난지 몰라도 그의 ‘지적 양심’에는 심각한 문

제가 있다”는 부분은 원고가 종전의 저술에서는 최장집 교수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렸으면서도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 논쟁과정에서는 당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보이고 있던 보도태도와 궤를 같이함으로써 종전의 평가와는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지식인이 아무런 해명 없이 자신의 기존 논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학행위이다. 그에게서 마조히즘적 정신분열증세가 감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 역시 원고가 의학적인 의미에서 피학적 변태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원고가 아무런 해명 없이 자신의 기존 논리를 부인한 것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의 비유적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뒤, 위 각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사실은 원고가 종전에 최장집 교수에 대하여 내렸던 평가와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³³⁾

법원은 그 반면, 『인물과 사상』 잡지에 게재된 원고 관련 기사 중 “원고는 ‘아웃사이드’로서 텃세가 심한 ‘조선일보’에서 생존하기 위해 점점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된다. ... 그리고 ‘최장집 죽이기’ 사건이 터졌다. 학계 전문기자인 원고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다. 원고는 자신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모교의 존경받는 교수의 등에 칼을 꽂는 비정한 청부업자로 변신한 것이다”, “한

3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6405 판결.

33) 이 사건의 제1심법원은, 월간 『말』지 기사의 표현은 비록 의견 내지 논평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사상의 과장 내지 강조, 또는 단순한 비유적 표현방법을 넘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로서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었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1. 19. 선고 99가합1154 판결).

가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조선일보'의 일부 기자들은 사주의 사병화가 돼 있다는 사실이다. 원고의 변신이 그걸 드라마틱하게 웅변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기사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원고가 종전의 최장집 교수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은 조선일보사 사주(社主)의 요청, 지시 내지는 사주(使囑)를 받게 되자 자신이 소속된 조선일보사 내에서의 열악한 입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함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7) 서울고등법원 2001. 5. 17. 선고 2000나 18822 판결 [상고기각³⁴⁾으로 확정]

월간조선 기자인 원고(B)가, 위 바.항의 사건과 같은 월간 『말』지의 기사에서 “마녀사냥에 동원된 조선일보 기자들의 정신분열증”이라는 소제목 아래 “사디즘적 병리현상의 증세는 월간조선 기자인 원고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 채택한 비법은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과감함’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착하다는 생각에서 출발 ... 공산주의의 소멸은 세계사의 추세’라는 이○○ 교수의 글에서 앞부분만 인용해 놓고 ‘공산주의가 썩 관찮은 제도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기자의 ‘말장난’에 줄지에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린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둔 미묘한 상황에서 하마터면 공안당국에 구속될 뻔하기까지 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위 바.항의 판결에서와 같은 법리를

전제한 뒤, 위 기사 중 원고에게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감지된다고 표현한 부분은 일반 독자의 관점에서 보아 원고가 의학적인 의미에서 가학적 변태성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하였던 기사는 전제와 결론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인용함으로써 이○○ 교수의 글의 논지를 왜곡하여 공산주의 찬양자로 몰아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뒤 그와 같은 전제사실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던 제1심판결³⁵⁾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7. 12. 선고 99가합11922 판결 [항소]

원고(중앙일보사)의 대표이사이자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대주주인 소외인이 탈세한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 발표가 있는 후 피고(한겨레신문사)가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데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한겨레신문의 기사 중 ① “탈세와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선 뚜렷한 태도가 없다”는 부분은 중앙일보의 보도태도와 관련하여 중앙일보 기사들이 언론탄압 주장만을 담고 있어 탈세부분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의견을 담은 것이고, ② “정말 정권의 압력이 너무 강해 일방적으로 흔들린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논조를 좌우해 온 소외인 주변에 뭔가 몇몇치 못한 게 있어 못 이기는 척 스스로 수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기사 전체의 객관적인 내용,

34) 2001. 8. 17. 상고이유서 불제출을 이유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3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3. 12. 선고 98가합14917 판결.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면, 소외인에게 떳떳치 못한 점이 있어서 원고가 정권의 압력을 수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기보다는 소외인이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권으로부터 계속된 간섭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를 논평하면서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기울어있는 원고의 보도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뒤, 그 논평의 전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³⁶⁾

9) 서울지방법원 2001. 9. 26. 선고 97가합 68721 [항소]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원고가 통일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실은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제목의 교양도서를 집필하고 나서 그 책자의 이적성과 원고의 사상성에 관한 기사가 월간조선에 게재되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포함된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전제한 뒤, 월간조선의 기사 중 위 책자에는 통일이 되면 나라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 등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과 북한 여교사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이란 글씨가 쓰여진 칠판 앞에 웃고 있는 삽화,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가사 및 북한에서는 의료, 생활 필수품, 집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

다고 적시한 부분은 원고가 위 책자에서 북한의 연방제통일안을 전제로 한 설명과 북한 체제나 실상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 및 위 책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표현물이란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뒤, 위 기사에서 암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10) 서울지방법원 2001. 9. 26. 선고 2001가합 11180 [확정]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알려진 원고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후임으로 그 아들인 목사를 선임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기독교계 안팎에서 세습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자, MBC가 “한국의 대형교회”라는 제목으로 대형교회의 문제점(목사직 세습의 문제, 재정운영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한국기독교의 변화가능성을 짚어보는 내용을 방송하였는데, 위 방송에 포함된 “대형교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인 부와 명예와 안정을 물려주는 세습 문제는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대형교회에서도 수입규모나 지출내역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소수가 재정을 장악해 교회의 근본목적과는 달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낳게 된다”는 등의 논평에 대하여, 원고 교회가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MBC의 위와 같은 논평은 진실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공정한 논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6)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 이외의 기사내용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다.

11) 서울지방법원 2001. 10. 24. 선고 2000가합37741 [항소]

무용평론가인 피고는, 무용학과 교수인 원고가 안무한 한국발레연구학회 정기공연과 그 다음날 열린 한국발레협회 정기공연 및 그 다음해 봄에 열린 ○○발레아카데미 정기공연에서의 서로 다른 제목의 공연을 보고 나서, 3차례의 공연이 모두 ‘비창’을 배경음악으로 하고 있고 무대 배경, 무용 동작, 공연시간 등이 거의 같음에도 그것이 리바이벌한 작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무용 관련 잡지에 “실적을 앞세워 관객을 기만한 비양심 … ○○발레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공연 행태는 실적을 앞세워 관객을 기만한 비양심적 태도라는 내용의 평론을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논평은 그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정당한 논평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평론문에 ‘관객을 기만’, ‘강심장’, ‘안하무인’, ‘실적을 앞세운 비양심’ 등으로 원고를 다소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으로 정당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2)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24145 판결 [확정]

원고(중앙일보사)의 대표이사이자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대주주인 소외인이 탈세한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 발표가 있고 나서 소외인이 구속될 무렵, 피고(대한매일신보사)가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데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대한매일신보의 비판 기사 중 ① “자기 소유 언론사를 방패로 대기업주가 불법적 특권을 누리는 관행을 문제삼는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부분은 언론사가 대형화되면서 여론의 독점이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고 원고가 소외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단죄를 언론탄압이라는 시각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일 뿐, 원고가 소외인 개인 비리의 배후라거나 직·간접적으로 그 범법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② “소외인이 검찰에 출두하던 날 대검청사 앞에서 젊은 기자 또는 일반사원들이 무리지어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면서 필자는 행여 우리집 아이들이 볼까 봐 리모컨을 작동했다. 그게 무슨 것인가”라는 부분은 필자가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기자들이 비굴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③ “‘충대’는 한나라당이 잡고 원고는 ‘탄환’을 제공하는 형국이다” 부분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고의 기사를 원용하여 정부의 언론탄압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원고와 한나라당이 제휴하여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④ “그동안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부분 역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부분의 표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³⁷⁾

37)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내용 중 원고 소속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이른바 ‘언론문건’의 작성 및 전달경위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V. 맺음말

위에서 검토한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에서의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의한 표현행위와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표현행위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은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인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의 설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표현행위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른바 순수의견이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의견표명의 전제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그 위법성 판단의 구조를 달리하므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우선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려운 작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본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의 각 판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기 위한 원칙이나 방법을 제시한 내용은 많이 발견되지만,³⁸⁾ 정작 그 구별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입증가능 여

부'에 따른 구별방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³⁹⁾

우리 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민사사건의 대법원판결 중에서는 사실·의견의 구별기준으로서 입증가능 여부를 실시한 예를 찾아보지 못하였지만, 명예훼손죄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기준으로서 '입증가능성'을 들거나 '사실이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실시한 점⁴⁰⁾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민사사건에서도 표현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입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언어 의미의 다의성, 언어 사용방법의 복잡다기성에 비추어 볼 때, 표현행위에 등장하는 모든 언어에 대하여 그 입증가능 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왕의 판결례에 등장하는 사실·의견의 구별을 위한 원칙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많은 판례의 축적에 의하여 귀납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

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중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시부분이나 Ollman 판결에서 Starr 판사가 열거한 네 가지 요소 중 '내용의 입증가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 - 특정한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그 내용이 들어있는 문맥에서의 좁은 의미, 그 내용이 보도된 보다 광범위한 문맥 또는 배경 - 등이 그 예이다.

39) 입증가능 여부의 기준은 Ollman 판결에 언급된 네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고, Milkovich 판결에서도 손해배상청구가능 여부의 구분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40)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 2910 판결 참조.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 ①

- 신문사의 제3자 기관의 설치 상황과 실제 -

한 영 학

일본 上智大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일본 언론의 윤리·법제적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는 내용을 4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최근 일본의 신문·통신사가 자사 보도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자율적 제3자 기관을 창설한 배경과 현황, 제3자 기관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을 소개, 분석한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능력의 강화라는 공통적인 업무목표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 신문의 제3자 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언론현실에 비추어 신문 각사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 주요 신문사의 제3자 기관의 구체적인 구성과 조직 및 그 역할과 실재를 소개·분석해보고자 한다.

I. 머리말

일본의 신문사, 통신사가 자사의 언론보도에 대한 점검 및 고충처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자율적 제3자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일대 붐을 이루고 있다. 2000년 10월 마이니치신문이 “‘열린 신문’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필두로,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등 상당수의 신문사, 통신사가 제3자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신문이 주로 사내 고참기자나 사외의 식자 1명을 ‘옴부즈맨’으로 두어 독자로터의 고충에 대응케 하고 지면에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기관은 복수의 위원을두는 이른바 일본식 옴부즈맨 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자 기관의 조직과 업무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각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도피해에 대한 대응과 자

II. 제3자 기관의 현황

언론에 대한 규제는 크게 법·제도적 규제와 자율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전자는 법규범에 의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관할 기관에 의한 정책적 규제를 포함한다. 일본의 방송매체는 제 외국과 마찬가지로 인허가 사항 등 방송관련 법제상(방송법, 전파법 등), 정책상의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규제하는 법규범이 따로 없으며 기본적으로 강제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한편,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인 언론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통제적인 척도에 입각하여 보도윤리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수용자로부터의 고충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각 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면, 소외인에게 몇몇치 못한 점이 있어서 원고가 정권의 압력을 수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기보다는 소외인이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권으로부터 계속된 간섭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를 논평하면서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기울어있는 원고의 보도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뒤, 그 논평의 전체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³⁶⁾

9) 서울지방법원 2001. 9. 26. 선고 97가합 68721 [항소]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원고가 통일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실은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제목의 교양도서를 집필하고 나서 그 책자의 이적성과 원고의 사상성에 관한 기사가 월간조선에 게재되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평론 또는 의견표명에 포함된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전제한 뒤, 월간조선의 기사 중 위 책자에는 통일이 되면 나라이름, 국기, 나라꽃, 애국가 등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과 북한 여교사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이란 글씨가 쓰여진 칠판 앞에 웃고 있는 삽화, 북한의 애국가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의 가사 및 북한에서는 의료, 생활 필수품, 집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

다고 적시한 부분은 원고가 위 책자에서 북한의 연방제통일안을 전제로 한 설명과 북한 체제나 실상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 및 위 책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표현물이란 사실을 간접적,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뒤, 위 기사에서 암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10) 서울지방법원 2001. 9. 26. 선고 2001가합 11180 [확정]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알려진 원고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후임으로 그 아들인 목사를 선임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기독교계 안팎에서 세습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자, MBC가 “한국의 대형교회”라는 제목으로 대형교회의 문제점(목사직 세습의 문제, 재정운영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한국기독교의 변화가능성을 짚어보는 내용을 방송하였는데, 위 방송에 포함된 “대형교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적인 부와 명예와 안정을 물려주는 세습 문제는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대형교회에서도 수입규모나 지출내역 같은 기본적 사항은 신도들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소수가 재정을 장악해 교회의 근본목적과는 달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낳게 된다”는 등의 논평에 대하여, 원고 교회가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MBC의 위와 같은 논평은 진실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고, 공정한 논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6) 이 글에서 인용한 부분 이외의 기사내용에 대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다.

11) 서울지방법원 2001. 10. 24. 선고 2000가합37741 [항소]

무용평론가인 피고는, 무용학과 교수인 원고가 안무한 한국발레연구학회 정기공연과 그 다음날 열린 한국발레협회 정기공연 및 그 다음해 봄에 열린 ○○발레아카데미 정기공연에서의 서로 다른 제목의 공연을 보고 나서, 3차례의 공연이 모두 ‘비창’을 배경음악으로 하고 있고 무대 배경, 무용 동작, 공연시간 등이 거의 같음에도 그것이 리바이벌한 작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무용 관련 잡지에 “실적을 앞세워 관객을 기만한 비양심... ○○발레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공연 행태는 실적을 앞세워 관객을 기만한 비양심적 태도라는 내용의 평론을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논평은 그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정당한 논평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평론문에 ‘관객을 기만’, ‘강심장’, ‘안하무인’, ‘실적을 앞세운 비양심’ 등으로 원고를 다소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으로 정당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2) 서울고등법원 2001. 12. 20. 선고 2001나24145 판결 [확정]

원고(중앙일보사)의 대표이사이자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대주주인 소외인이 탈세한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 발표가 있고 나서 소외인이 구속될 무렵, 피고(대한매일신보사)가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한 데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판결이다.

법원은, 대한매일신보의 비판 기사 중 ① “자기 소유 언론사를 방패로 대기업주가 불법적 특권을 누리는 관행을 문제삼는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부분은 언론사가 대형화되면서 여론의 독점이라는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고 원고가 소외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단죄를 언론탄압이라는 시각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일 뿐, 원고가 소외인 개인 비리의 배후라거나 직·간접적으로 그 범법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② “소외인이 검찰에 출두하던 날 대검청사 앞에서 젊은 기자 또는 일반사람들이 무리지어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보면서 필자는 행여 우리집 아이들이 볼까 봐 리모컨을 작동했다. 그게 무슨 것인가”라는 부분은 필자가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기자들이 비굴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③ “‘총대’는 한나라당이 잡고 원고는 ‘탄환’을 제공하는 형국이다” 부분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고의 기사를 원용하여 정부의 언론탄압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원고와 한나라당이 제휴하여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④ “그동안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부분 역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각 부분의 표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였다.³⁷⁾

37)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내용 중 원고 소속 문일현 기자가 작성한 이른바 ‘언론문건’의 작성 및 전달경위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V. 맺음말

위에서 검토한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에서의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의한 표현 행위와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표현 행위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은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인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의 설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표현행위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른바 순수의견이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의견표명의 전제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그 위법성 판단의 구조를 달리하므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그 표현행위가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우선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을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려운 작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본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의 각 판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기 위한 원칙이나 방법을 제시한 내용은 많이 발견되지만,³⁸⁾ 정작 그 구별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입증가능 여

부'에 따른 구별방법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³⁹⁾

우리 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민사사건의 대법원판결 중에서는 사실·의견의 구별기준으로서 입증가능 여부를 실시한 예를 찾아보지 못하였지만, 명예훼손죄 또는 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기준으로서 '입증가능성'을 들거나 '사실이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실시한 점⁴⁰⁾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민사사건에서도 표현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입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언어 의미의 다의성, 언어 사용방법의 복잡다기성에 비추어 볼 때, 표현행위에 등장하는 모든 언어에 대하여 그 입증가능 여부를 쉽게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왕의 판결례에 등장하는 사실·의견의 구별을 위한 원칙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많은 판례의 축적에 의하여 귀납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

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중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설시부분이나 Ollman 판결에서 Starr 판사가 열거한 네 가지 요소 중 '내용의 입증가능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특정한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그 내용이 들어있는 문맥에서의 좁은 의미, 그 내용이 보도된 보다 광범위한 문맥 또는 배경-등이 그 예이다.

39) 입증가능 여부의 기준은 Ollman 판결에 언급된 네 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고, Milkovich 판결에서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의 구분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40)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 2910 판결 참조.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 ①

- 신문사의 제3자 기관의 설치 상황과 실제 -

한 영 학

일본 上智大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일본 언론의 윤리·법제적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는 내용을 4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최근 일본의 신문·통신사가 자사 보도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자율적 제3자 기관을 창설한 배경과 현황, 제3자 기관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을 소개, 분석한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능력의 강화라는 공통적인 업무목표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 신문의 제3자 기관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의 언론현실에 비추어 신문 각사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 주요 신문사의 제3자 기관의 구체적인 구성과 조직 및 그 역할과 실체를 소개·분석해보고자 한다.

I. 머리말

일본의 신문사, 통신사가 자사의 언론보도에 대한 점검 및 고충처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자율적 제3자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일대 붐을 이루고 있다. 2000년 10월 마이니치신문이 “열린 신문위원회”를 설립한 것을 필두로,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등 상당수의 신문사, 통신사가 제3자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신문이 주로 사내 고참기자나 사외의 식자 1명을 ‘옴부즈맨’으로 두어 독자로터의 고충에 대응케 하고 지면에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기관은 복수의 위원을두는 이른바 일본식 옴부즈맨 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자 기관의 조직과 업무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각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도피해에 대한 대응과 자

II. 제3자 기관의 현황

언론에 대한 규제는 크게 법·제도적 규제와 자율규제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전자는 법규범에 의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관할 기관에 의한 정책적 규제를 포함한다. 일본의 방송대체는 제 외국과 마찬가지로 인허가 사항 등 방송관련 법제상(방송법, 전파법 등), 정책상의 일정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규제하는 법규범이 따로 없으며 기본적으로 강제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한편, 자율규제는 규제의 주체인 언론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통제적인 척도에 입각하여 보도윤리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수용자로부터의 고충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각 언

〈표〉 주요 신문사·통신사의 제3자 기관설립 현황

사 명/명칭(위원 수)	목 적 / 심 의 방 법	구체적 피해구제의 가부/피해자로부터의 신청가부	대상자/대상영역	개 최 빈 도/결과 공표방법
아사히신문/ 보도와 인권 위 원회(3)	명예훼손·프라이버시침해·차별의 구제, 보도와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반영 / 당사자 쌍방의 청문을 포함하여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해결에 노력, 심리 결과는 '견해'의 형태로 제시	가능/직접가능	개인 / 인권침해, 공보실에서 해결이 곤란한 사례, 위원의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격 월 / 심 리 결 과 '견해'는 당사자의 양해를 얻어 지면 상에 공표
마이니치신문/ '열린 신문'위원 회(5)	인권침해 감시, 지면에 대한 의견개진, 21세기의 미디어 제언 / 제기된 고충내용과 사의 의견을 위원에게 제시하여 각 위원의 개별보고를 접수	가능(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등에 관한 검증) / 직접가능	개인 / 미디어 전 반에 대한 제언	3개월에 1회 정도/결과는 지면에 공개
요미우리신문 / 새 로기관을 두지 않 고 '신문감사위원 회'에 고문초빙(3)	제3자의 눈으로 신뢰받는 신문을 지향 / 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사례를 근거로 의견교환	가능 / 불가능	규정없음 / 인권침해를 포함한 신문일반	사의 모니터를 신문감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개칭, 고문과의 합동회의를 년 2회 정도/합동회의 내용을 지면화
도쿄신문 / 신문보도의바람 직한 상 위원회 (4+내부인사1)	독자로부터의 고충, 주문에 대한 의견요청, 지면에 반영, 지면과 취재활동 감시 / 인권,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사례를 근거로 의견교환, 경우에 따라서 참고의견요청, 편집국장이 토의참가	가능 / 불가능	규정없음 / 신문일반	지면에 보고
교도통신 / '보도와 독자' 위원회(3)	보도의 질적 향상도모,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인권, 프라이버시보호 등의 사례나 일상의 보도활동의 바람직한 상, 독자대응 등에 대해 의견청취	가능(검증기사로 실태를 밝힘으로서 명예회복도모) / 사무국에 신청가능	원칙적으로 개인 / 보도의 바람직한 상, 인권침해, 독자대응	원칙적으로 격월/사무국이 의견을 정리하여 가맹사에 배신 기사 등으로 공표
홋카이도신문 / 독자와 도신 위 원회(5)	인권이나 프라이버시에 보다 배려하는 신문보도지향 / 독자로부터의 고충, 의견을 근거로 심의	가능 / 독자센터가 접수	개인 / 신문일반	심의내용을 지면에 보고
니이가타일보 / 니이가타일보 독자·지면위원 회(8)	지면을 보다 충실히 하고 독자의 신뢰에 부응하며, 공정·공평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 지면에 대한 평가·요망 등 의견 교환을 통해 지면작성에 반영	가능 / 기사심사부 독자응답계에서 접수	규정없음 / 신문일반	연 3회 / 수시로 지면에 소개
니시니혼신문 / 인권과 보도· 니시니혼위원회 (4)	보도나 취재로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등 인권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심의 / 독자실 혹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심의, 해결을 위한 견해 제시	가능 / 독자실을 경유하여 가능	개인 / 인권침해	연 수회 / 원칙적으로 심의경과내역을 지면에 공개

론의 독자적인 강령이나 내부지침에 더하여, 신문윤리강령, 잡지윤리강령, 출판윤리강령, 일본방송협회(NHK) 프로그램기준,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기준 등 각 업계의 윤리강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광의의 자율규제는 법적(공적) 규제를 동반하지 않는 독자적 혹은 제3자적 메커니즘에 의한 규제도 내포한다고 하겠다. 현재 제3자적 자율기관으로서 인쇄매체부문 전체를 관장하는 신문평의회(Press Council)와 같은 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방송계에는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기구(BRO)¹⁾',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²⁾' 등이 있다. 인쇄매체부문에서도 보도윤리의 제고와 보도피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업계 전체의 자율적 제3자 기구의 창설을 호소하는 학자들의 목소리가 없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각 개별사의 의견통합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 신문평의회 창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각 신문사가 개별적으로 사내에 제3자 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주된 흐름이다.

신문사 내 제3자 기관의 설립은 2000년 10월 마이니치신문의 “‘열린 신문’위원회”가 시발이었다. 그 후 아사히신문의 ‘보도와 인권 위원회’, 도쿄신문의 ‘신문보도의 바람직한 상을 위한 위원회’, 교도통신사의 “‘보도와 독자’ 위원회” 등 중앙지와 통신사는 물론 주요 지방지에도 우후죽순으로 제3자 기관은 과급되어, 2002년 2월 현재 23사를 헤아린다. 외부의 식자들로 구성된 이들 기관은 독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사보도에 대한

점검이나 독자들에게 대한 고충처리를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즉 옴부즈맨적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들 기관의 설립 목적은 대동소이하지만 그 업무내역 및 절차는 엄밀하게는 구별된다. 주요 신문사, 통신사의 제3자 기관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앞의 표와 같다.³⁾

Ⅲ. 제3자 기관의 설치 경위와 배경

일본에서 개별 신문사 내에 제3자 기관의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의 위상 및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해결에 신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일종의 위기의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근저에는 국가권력의 명시적, 암묵적 압력과 시민의 언론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대언론 압박은 언론보도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동반하는 입법의 상징과 집권여당(자민당)의 언론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언론불신은 취재·보도활동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 등 고질적인 폐단과 함께 최근 증폭되고 있는 언론주변의 현안들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 각사의 연쇄적 움직임은 공적 규제의 위협과 언론 비판의 중압을 돌파하려는 자구책으로 보여진다.

1. 권력으로부터의 압박

1) Broadcast and Human Rights/Other Related Rights Organization은 NHK와 민방련 가맹사(190사)가 공동으로 설립한(1997년 6월) 자율적 제3자 고충처리기관으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행하고 있다.

2) 2000년 4월 NHK와 민방련이 방송프로그램 향상위원회 내에 공동으로 창설한 자율적 제3자 기관으로,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의견, 고충을 심리하여 위원회의 견해나 방송사업자의 대응을 공표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다.

3) 『新聞協會報』, 2001년 7월 24일자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언론보도활동에 제약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 인권구제, 청소년보호 등이다.

먼저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는 1999년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는 심의과정에서 그 법제화가 공언된 이래, 정부의 입법준비작업을 거쳐 2001년 국회에 상정되어(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⁴⁾ 이 법안은 현행 컴퓨터 처리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과는 별도로 마련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사업자도 규율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본인이 요청할 경우의 개인정보의 공개·정정·이용정지 의무, 의무위반시의 주무관청에 의한 명령권 행사와 각종 처벌 등을 규정한 의무규정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적정한 개인정보 취득, 안전성 확보 등의 기본원칙은 보도기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으로부터 전면 배제를 요구해왔으나, 법안은 여전히 보도목적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기관이라도 의무규정이 미치는 것은 물론 기본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됨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 정치가 등이 언론의 보도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인권구제와 관련해서는 법무성이 새로운 인권구제기관(가칭 '인권위원회')의 설치 등을 담은 법제의 준비를 펴하고 있다. 이는 일본국내의

독특한 차별문제(동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고, 1998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구제기관의 설립과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의 개선을 요청하는 국제연합의 견해에 힘입어 추진된 것이다. 2002년 통상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인권옹호법안)은 차별, 학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권고·공표 등의 권한에 더하여 강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를 법무성의 외국(外局) 형식(독립행정위원회)으로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⁵⁾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부문에서는 동 위원회가 언론에 대한 임의조사 협력요청은 물론 일부 프라이버시 침해 및 과잉취재 등에 대하여 조정·중재·권고·공표·소송원조 등의 적극적인 구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언론출판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의 부당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를 둘러싼 법제논의는, 2000년 4월 자민당이 청소년에 있어서 무엇이 유해한가를 총리대신이 판단하여 언론을 포함한 각 사업자에 대해 지도·조언·권고·공표 등을 행할 수 있는 법안마련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언론 등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기치하에 표현의 자유가 억제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법안제출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자 자민당은 동년 11월 사업자가 설립하는 청소년 유해사회환경 대책협회를 통해 각 분야의 주무장관이 사업자를 감시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수정법안(청소년 유해사회환경 대책기본법

4)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법제화 움직임과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로는, "特集・個人情報保護法制化に向けて", 『ジュリスト』1190(2000, 12, 1): "特集・個人情報保護法", 『法律ひろば』, 54・2(2001, 2): "特集・個人情報保護法制の課題Ⅰ", 『法學教室』, 54・2(2001, 2): "特集・個人情報保護法制の課題Ⅱ", 『法學教室』, 250(2001, 7) 등을 참조.

5) 인권옹호법안의 大綱(2002년 1월)에 이르기까지 인권구제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종합적인 논고로는, "特集・人權救済機關設置をめぐる", 『法律時報』73・2(2001, 2): "特集・人權救済制度の在り方をめぐって", 『ジュリスト』1196(2001, 3, 15): "特集2・どうなる, 日本の人權救済制度?", 『法學セミナー』565(2002, 1) 등을 참조.

6) 관련 검토 논문으로는, 田島泰彦, "青少年保護と表現の自由 - '青少年有害社會環境對策基本法案'の検討", 『法律時報』74・1(2002, 1), pp.49-53: "緊急企画・青少年有害社會環境對策基本法案", 『月刊民放』32・2(2002, 2) 등을 참조.

안)을 마련, 국회제출을 검토하고 있다.⁶⁾ 그러나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가 광범위한데다가 불명확한 점, 행정기관(총리 혹은 각 행정구역지사)이 지도·조언·권고·공표 등의 형식으로 언론에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안들은 그 어느 것도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유지·발전을 도모하는데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권력의 입법외도와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음미해 보건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구현이 억제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에 대부분의 신문들은 한편으로는 법안의 재검토 혹은 폐안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내에 제3자 기관을 설치하여 보도피해에 대해 대응하는 등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본격적인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 기관의 설립이 상기 사안들의 입법과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린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의 간접적 압박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민당의 언론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의 증대도 결과적으로 신문의 자율규제강화 움직임을 부추겼다. 우선 최근 언론규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민당의 '보도와 인권 등의 바람직한 상에 관한 검토회'의 보고서에서는 특히 인쇄매체가 신랄하게 비판되었다. 방송매체는 BRO라는 업계전체의 제3자 기관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기능의 강화를 요망하는데 그쳤지만, 인쇄매체는 일부 매체의 과잉취재, 선정적인 보도의 문제점에 더하여 제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자율규제기관 혹은 고충처리기관의 부재가 강하게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언론 스스로 이러한 기

관을 설치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경우 법정기관의 창설도 선택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위협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실제로 자민당의 언론보도통제 공작으로는 자민당 간사장의 명령에 의해 자민당 의원을 멤버로 하는 방송활성화위원회(2001년 2월 설치)와 자민당 소속 의원과 고문 변호단으로 구성되는 보도프로그램 검증위원회(동 4월 설치)가 대표적이다. 이들 조직은 자민당의 보도모니터제도(1998년부터 실시)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보도규제와 감시를 통해 정당활동의 편의는 물론 나아가서는 각종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활성화위원회는 ①방송의 공평중립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②방송에서 견해의 다양성은 어떻게 하면 확보될 것인가, ③방송의 규제개혁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④다채널 시대의 방송법·방송행정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⑤기타 관련사항 등 5개의 검토과제를 들고 있고, 보도프로그램 검증위원회는 보도프로그램, 정치프로그램, 와이드 쇼(오락성 종합정보프로그램에 해당)를 대상으로 ①해당 프로그램의 점검, ②불공정 보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BRO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다.⁷⁾ 이러한 집권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은 법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인쇄매체에 있어서도 정치보도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시민의 언론불신

언론은 취재·보도의 자유를 통해 권력에

7) 笹田佳宏, “政治報道に壓力—自民黨が相次いで委員會を設置”, 『法學セミナー』, 558(2001. 6), pp.126-127.

이 글은 2001년 7월 27일부터 2002년 1월 10일까지 15일간 서울에서 열린 '2001년 언론윤리법제 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연구회에서는 2001년 7월 27일부터 2002년 1월 10일까지 15일간 서울에서 열린 '2001년 언론윤리법제 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존재로서, 시민측에 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언론은 그동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으로 지목받는 기자클럽(출입처 기자조직)을 통해 정언유착을 도모하고 일률적인 발표저널리즘에 안주해 온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매체는 공권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에 치중한 결과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반면, 이에 대한 충분한 해결노력을 결여함으로써 시민과의 점진적인 괴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원래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권력에 비판적으로 대처해야 할 언론이 시민과의 충돌양상이 빈번해지면서, 공권력에 의해 언론규제 및 알 권리의 제약이 시도되어도 시민은 언론을 옹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권력에 조력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 역으로 공권력은 시민의 언론불신을 부각시켜 언론규제의 구실을 찾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언론보도에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기자클럽의 병폐는 멤버들만의 독점적 조직으로 열린 취재와 사실의 본질에 대한 추궁에 소극적이었다는 점, 기자실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이용 등 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취재·보도에 있어서 일정부분 관의 논리로부터 이탈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클럽에 따라서는 열린 조직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기자클럽의 폐단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탈기자클럽을 선언하거나 기자실 및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발전된 경우도 발견된다.⁸⁾

그동안 신문협회가 기자클럽의 위상에 대한 견해를 수 차례 갱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가장 최근의 견해로는 2002년 1월) 이념과 실제와는 온도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극복에 있어서 개별신문사의 제3자 기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신문들은 이번의 제3자 기관의 설치배경에 기자클럽 문제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현행 기자클럽체제는 언론불신의 근원적인 요소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볼 때 이 문제의 개선작업에 제3자 기관의 활용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불신의 또 하나의 큰 맥락은 개별 취재·보도활동에서 빚어지는 각종 보도피해문제이다. 반론권 등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도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권리회복을 포기하거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법적 분쟁을 선택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이 용이한 것도 아니어서 권리구제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방송계에서는 재판소와는 별도로 일정 요건 하에서 BRO에 권리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인쇄매체에는 이러한 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피해자 혹은 관계자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다. 보도피해의 실례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하고 보도피해의 주요 패턴만을 열거하면, 미디어 스크럼 등 집단적 과열취재, 범죄피해자(희생자) 등에 대한 배려의 결여가 빛는 이중피해, 허위보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문제에

8) 기자클럽과 기자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줄고, “나가노현 지사의 ‘탈기자클럽’ 선언”, 『해외언론동향』, 2001년 7월호, pp.72-74참조. 한편, 이들 문제와 관련한 소송판결은, 田島泰彦, “1996年マスコミ関係判例 (上)”, 『新聞研究』, 548(1997. 3), pp.86-87참조.

대한 지적이 언론불신과 연동되어 분출되면서 신문은 진전 없는 업계 전체의 공조논의보다는 각자 제3자 기관의 설립을 선택한 것이다.

IV. 주요 신문의 제3자 기관의 실제

신문사에 따라서는 지면심사나 고충처리에 있어서 제3자적 성격을 가진 기관(부서)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편집국으로부터 독립한 형태의 본격적인 제3자 기관의 설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3자 기관의 심의대상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문제에 국한하고 있는 신문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재·보도방식 전반을 둘러싼 논의와 검증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도는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신문에 대한 시민의 액세스 경로 확충노력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는 제3자 기관설립의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의 제3자 기관의 조직과 실제운동을 소개·검토하기로 한다.

1. 마이니치신문의 “열린 신문” 위원회

마이니치신문은 지면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독자의 신뢰에 한층 부응하기 위하여 사외의 식자들로 구성되는 “‘열린 신문’위원회”(위원 5인:학자 1, 법조인 1, 언론인 2, 작가 1)를 창설하였다(2000년 10월). 이는 독자들에게 열린 신문제작을 지향하는 마이니치신문의 기본자세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보도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의 고충·의견과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이 취한 대응내역을 위원들에게

제시하면, 위원들이 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보도를 검증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내역이다. 즉 독자와 마이니치신문의 중간에 선 위원회가 제3자의 관점에서 마이니치신문의 보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편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사무국은 마이니치신문의 편집 최고책임자(주필)의 직할조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은 3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기사로 인하여 명예, 프라이버시 등 당사자로부터 제기된 인권침해의 고충에 대응하는 것, ②당사자 이외의 일반독자나 위원자신으로부터 기사의 문제점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다루는 것, ③향후 신문의 바람직한 상을 논의하는 것이다.⁹⁾

고충과 대응 내용은 모두 사무국에 보고되어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각 위원에게 통고하게 되는데, 이에 위원들은 담당부서의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안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하여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위원들로서는 견해가 지면화 되기 전까지는 타위원의 견해를 알 수 없어 위원들간의 독립성도 존중된다고 하겠다. 고충사안의 경우 사무국에서도 소송으로 전이될 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실에서 대응하게 된다. 고충은 사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치가나 고급관료 등의 이른바 공인으로부터의 고충은 접수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독자나 당사자로부터 고충제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편집방침에 관한 의견은 제외된다. 위원의 견해는 당사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미디어란 등에 보고한다. 여기에는 마이니치신문사측의 입장도 게재된다. 한

9) 朝比奈豊・佐藤公正・山田哲夫, “座談會・報道檢證機關をなぜ設置したのか”, 『世界』 693(2001. 10), p.139.

편 위원들은 보다 양질의 보도를 지향하고 언론전체의 과제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 지면을 통하여 위원들의 좌담회내용 등이 소개된다.

고충을 둘러싼 본사의 대응에 대하여 위원들의 견해(판단)는 매달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데, 대응자체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다수를 점한다.¹⁰⁾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등 인권침해문제가 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는 구석기발굴 날조문제, 인권·프라이버시에 관한 표현문제, 특정인물의 호칭문제, 미디어 스캔들문제, 정신장애자의 범죄 보도에 있어서 실명·익명보도 문제 등 고충과 대응에 관한 견해에 더하여 언론이 직면한 일반적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다.

2. 아사히신문의 '보도와 인권위원회(PRC)'

아사히신문은 마이니치신문에 이어 2001년 1월 1일,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보도의 자유를 수호하고 보도로 인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부 식자로 구성되는 '보도와 인권위원회'(위원 3인 : 학자 1, 언론인 1, 법조인 1)를 발족시켰다. 종래에는 본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주간아사히, 논좌, 아에라 등)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 인권침해의 고충제기에 대해 독자창구인 홍보실이 대응해왔으나, 홍보실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 제3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심리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¹¹⁾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성격은 마이니치신문과는 구별되는데,

이는 기존의 제3자적 성격을 가진 지면심사위원회가 기능하고 있음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

독자로부터의 고충은 기본적으로는 홍보실이 맡고 있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원회 사무국에 사안을 신청할 수 있다(형식은 자유). 단, 위원회는 공인이나 기업, 단체 등의 고충에 대한 신청은 받지 않으며,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 혹은 사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사안도 취급하지 않는다.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에 대해 세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가 시작된다. 사무국은 사내에 설치되어 사장직속의 전임 사무국장이 사안신청에 대한 정리, 사전조사, 위원회의 심리 의사진행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열리며 2개월에 한 번 개최되는 정례회에서는 홍보실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다.

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와 아사히신문의 담당 부서 양측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사를 행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심리의 결과는 위원회의 '견해'로서 본인과 아사히신문 쌍방에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조사결과 신문측에 무엇인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과', '정정' 혹은 문제가 된 보도의 검증기사를 게재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의 판단은 다수결로 하며 소수의견도 지면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의 '견해'는 존중되며 본인의 양해 하에서 아사히신문의 지면상에 공표할 수도 있고, 반론을 포함한 본사의 입장을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

10) 『毎日新聞』, 2001년 10월 16일자 등 위원회활동에 관련된 기사참조.

11) 佐藤公正, "第3者性 透明性の擔保が重要 - '報道と人権委員会' で本社のプロセスを讀者に", 『新聞研究』597(2001. 4), pp.10-13 참조.

위원회 발족 이후 2002년 2월 현재까지 100통에 가까운 편지가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대부분은 아사히신문사의 보도와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홍보실에 당사자와의 교섭을 요청하여 분쟁이 해결된 사안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본사의 보도가 명예 혹은 프라이버시를 손상시켰다고 하여 위원회가 그 구제를 위해 '견해'를 발표한 적은 없다. 위원회는 정례회에서 사건사고 피해자의 인권, 사진보도, 특정인물의 호칭문제, 성차별표현의 문제점, 집단적 과열취재에 관한 신문협회의 견해 등 다양한 테마를 다루고 있다.¹²⁾

V. 결어 : 과제와 전망

법률에 의한 언론규제의 위험과 시민의 언론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신문에 있어서 제3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시도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기자클럽문제, 보도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 등 배타적이고 편협한 자세로 비판받아왔던 신문사가 독자로부터 제기된 고충을 해결하는 절차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제3자의 눈을 가미시키게 된 점은 괄목할 만하다. 신문이 저널리즘으로서 요청되는 올바른 위상정립이라는 당위를 구체화하는 관점에서도 각 기관의 활동은 크게 주목된다. 그러나 현행 제3자 기관이 그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와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율기관에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실효성

의 담보문제이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위원회에 제기되어 처리된 사안이 없는 것은 이들 신문이 인권문제와 관련한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제3자 기관의 존재가 일반독자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제3자 기관이 내린 판단과 견해를 당해 신문사가 충실히 수행할지는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신문이 제3자 기관설립에 있어 자정능력의 강화와 신뢰회복이라는 이념은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구체절차를 담은 내부규율 혹은 지침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인권구제 절차의 투명성과 제3자 기관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에 우려가 남는다.

다음으로, 제3자 기관은 언론자유의 위축효과를 초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조기에 권리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능적으로 보완해야 할 요소도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기관은 보도(기사)에 대해서만 권리구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집요한 과잉취재 등 취재단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들 기관의 윤리적·자율적 잣대에 의한 판단이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구제조치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각사의 사정에 따라 편집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부터 제3자 기관의 견해표명을 반영하는 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제3자 기관에게 조정·중재기능을 포함하여 '정정', '사과' 등 일정한 구제조치를 권고하는 내용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탄력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12) 『朝日新聞』, 2002년 2월 10일자(제6회) 등 정례회를 다룬 기사참조.

또한, 사인에 비해 매체 액세스의 기회가 많은 정치가 등 공인에 대한 보도피해에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은 언론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으나,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적 사항 혹은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보도피해부분까지 사인의 보도피해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각 신문의 제3자 기관이 결국 태생적으로 조직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자 기관이라고 하지만 각 신문사의 내부에 위치하며, 위원들도 당해 신문사가 자의적으로 요청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얼마나 객관적 시각이 투영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계전체의 본격적인 제3자 기관의 창설이 강하게 요망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방패로 표현활동의 현실

적인 특권을 부여받는 언론이 스스로 촉발시킨 보도피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나, 당해 신문사와의 교섭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 보도평의회와 같은 인쇄매체 업계전체의 공동창구가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보도평의회는 방송업계의 자율적 제3자 기관인 BRO의 상대 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인권을 명목으로 보도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시민을 동참시킨 가운데 인쇄매체가 자치적 룰과 책임 하에서 보도피해자의 인권옹호와 구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창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잡지협회가 잡지기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충전담 창구를 협회 내에 설치(2002년 3월 1일)한 것은 신문업계에도 자극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신문의 연예인 보도와 인격권 보호

성 동 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11월 이후 소위 “연예인의 백색바람”이 줄곧 향간의 화제를 몰고 왔다.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탤런트 황수정의 마약 복용과 가수 사이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검찰에 의해 줄줄이 조사를 받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은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누구였든간에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그 행위의 주체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더욱 부풀려지고 순식간에 TV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회자된다.

물론 싸이나 황수정이 각

각 대마초 흡입과 마약 복용이라는 혐의가 인정되고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누구도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형을 선고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언론보도 형태들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특히 황수정의 경우는 한 유명 탤런트의 탈선행위라고 사건을 단순화시켜볼 때 그 대가가 지나치게 컸다는 비난 여론까지도 조성될 만큼, 몇몇 특정 언론들은 온 국민 앞에 그녀의 사생활을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들춰냈다.

국내 TV 연예프로그램들과 스포츠신문에서 황수정의 마약복용 혐의가 불거진 것은 2001년 11월 13일로 이날

부터 이들 언론들은 온통 그녀의 이야기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신문들은 황수정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인 11월 14일자 가판부터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소위 “황수정 사건”을 폭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 스포츠신문은 아직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함께 온갖 추측과 왜곡으로 가득한 기사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신문들의 선정적이고 경쟁적인 기사들은 비난 황수정이라는 유명 탤런트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건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오직 상업적인 이익과 시장의

편 위원들은 보다 양질의 보도를 지향하고 언론전체의 과제에 대해서 제언할 수 있는데, 3개월에 한 번 정도 지면을 통하여 위원들의 좌담회내용 등이 소개된다.

고충을 둘러싼 본사의 대응에 대하여 위원들의 견해(판단)는 매달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데, 대응자체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다수를 점한다.¹⁰⁾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등 인권침해문제가 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는 구석기발굴 날조문제, 인권·프라이버시에 관한 표현문제, 특정인물의 호칭문제, 미디어 스캔들문제, 정신장애자의 범죄 보도에 있어서 실명·익명보도 문제 등 고충과 대응에 관한 견해에 더하여 언론이 직면한 일반적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다.

2. 아사히신문의 '보도와 인권위원회(PRC)'

아사히신문은 마이니치신문에 이어 2001년 1월 1일,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보도의 자유를 수호하고 보도로 인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부 식자로 구성되는 '보도와 인권위원회'(위원 3인 : 학자 1, 언론인 1, 법조인 1)를 발족시켰다. 종래에는 본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주간아사히, 논좌, 아에라 등)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 인권침해의 고충제기에 대해 독자창구인 홍보실이 대응해왔으나, 홍보실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 제3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심리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다.¹¹⁾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성격은 마이니치신문과는 구별되는데,

이는 기존의 제3자적 성격을 가진 지면심사위원회가 기능하고 있음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

독자로부터의 고충은 기본적으로는 홍보실이 맡고 있지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원회 사무국에 사안을 신청할 수 있다(형식은 자유). 단, 위원회는 공인이나 기업, 단체 등의 고충에 대한 신청은 받지 않으며,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 혹은 사법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사안도 취급하지 않는다.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에 대해 세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가 시작된다. 사무국은 사내에 설치되어 사장직속의 전임 사무국장이 사안신청에 대한 정리, 사전조사, 위원회의 심리 의사진행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열리며 2개월에 한 번 개최되는 정례회에서는 홍보실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다.

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와 아사히신문의 담당 부서 양측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사를 행하고 해결책을 강구한다. 심리의 결과는 위원회의 '견해'로서 본인과 아사히신문 쌍방에 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조사결과 신문측에 무엇인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과', '정정' 혹은 문제가 된 보도의 검증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의 판단은 다수결로 하며 소수의견도 지면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의 '견해'는 존중되며 본인의 양해 하에서 아사히신문의 지면상에 공표할 수도 있고, 반론을 포함한 본사의 입장을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

10) 『毎日新聞』, 2001년 10월 16일자 등 위원회활동에 관련된 기사참조.

11) 佐藤公正, “第3者性・透明性の擔保が重要 - ‘報道と人権委員会’で本社のプロセスを讀者に”, 『新聞研究』597(2001, 4), pp.10-13 참조.

위원회 발족 이후 2002년 2월 현재까지 100통에 가까운 편지가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대부분은 아사히신문사의 보도와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홍보실에 당사자와의 교섭을 요청하여 분쟁이 해결된 사안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본사의 보도가 명예 혹은 프라이버시를 손상시켰다고 하여 위원회가 그 구제를 위해 '견해'를 발표한 적은 없다. 위원회는 정례회에서 사건사고 피해자의 인권, 사진보도, 특정인물의 호칭문제, 성차별표현의 문제점, 집단적 과열취재에 관한 신문협회의 견해 등 다양한 테마를 다루고 있다.¹²⁾

V. 결어 : 과제와 전망

법률에 의한 언론규제의 위험과 시민의 언론불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신문에 있어서 제3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시도가 본래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기자클럽문제, 보도 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 등 배타적이고 편협한 자세로 비판받아왔던 신문사가 독자로부터 제기된 고충을 해결하는 절차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제3자의 눈을 가미시키게 된 점은 팔목할 만하다. 신문이 저널리즘으로서 요청되는 올바른 위상 정립이라는 당위를 구체화하는 관점에서도 각 기관의 활동은 크게 주목된다. 그러나 현행 제3자 기관이 그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와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율기관에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실효성

의 담보문제이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위원회에 제기되어 처리된 사안이 없는 것은 이들 신문이 인권문제와 관련한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제3자 기관의 존재가 일반독자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제3자 기관이 내린 판단과 견해를 당해 신문사가 충실히 수행할지는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신문이 제3자 기관설립에 있어 자정능력의 강화와 신뢰회복이라는 이념은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구체절차를 담은 내부규율 혹은 지침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인권구제 절차의 투명성과 제3자 기관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에 우려가 남는다.

다음으로, 제3자 기관은 언론자유의 위축효과를 초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조기에 권리회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능적으로 보완해야 할 요소도 있다. 대부분의 제3자 기관은 보도(기사)에 대해서만 권리구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집요한 과잉취재 등 취재단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들 기관의 윤리적·자율적 잣대에 의한 판단이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구제조치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각사의 사정에 따라 편집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부터 제3자 기관의 견해표명을 반영하는 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제3자 기관에게 조정·중재기능을 포함하여 '정정', '사과' 등 일정한 구제조치를 권고하는 내용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탄력적인 논의가 요청된다.

12) 『朝日新聞』, 2002년 2월 10일자(제6회) 등 정례회를 다룬 기사참조.

또한, 사인에 비해 매체 액세스의 기회가 많은 정치가 등 공인에 대한 보도피해에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은 언론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으나,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적 사항 혹은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보도피해부분까지 사인의 보도피해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각 신문의 제3자 기관이 결국 태생적으로 조직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자 기관이라고 하지만 각 신문사의 내부에 위치하며, 위원들도 당해 신문사가 자의적으로 요청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얼마나 객관적 시각이 투영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계전체의 본격적인 제3자 기관의 창설이 강하게 요망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방패로 표현활동의 현실

적인 특권을 부여받는 언론이 스스로 촉발시킨 보도피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나, 당해 신문사와의 교섭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 보도평의회와 같은 인쇄매체 업계전체의 공동창구가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보도평의회는 방송업계의 자율적 제3자 기관인 BRO의 상대 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인권을 명목으로 보도의 자유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시민을 동참시킨 가운데 인쇄매체가 자치적 룰과 책임 하에서 보도피해자의 인권옹호와 구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창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잡지협회가 잡지기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충전담 창구를 협회 내에 설치(2002년 3월 1일)한 것은 신문업계에도 자극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스포츠신문의 연예인 보도와 인격권 보호

성 동 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11월 이후 소위 “연예인의 백색바람”이 줄곧 향간의 화제를 몰고 왔다.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던 탤런트 황수정의 마약 복용과 가수 사이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검찰에 의해 줄줄이 조사를 받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은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누구였든간에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그 행위의 주체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더욱 부풀려지고 순식간에 TV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회자된다.

물론 사이나 황수정이 각

각 대마초 흡입과 마약 복용이라는 혐의가 인정되고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누구도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형을 선고받기까지의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언론보도 형태들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특히 황수정의 경우는 한 유명 탤런트의 탈선행위라고 사건을 단순화시켜볼 때 그 대가가 지나치게 컸다는 비난 여론까지도 조성될 만큼, 몇몇 특정 언론들은 온 국민 앞에 그녀의 사생활을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들춰냈다.

국내 TV 연예프로그램들과 스포츠신문에서 황수정의 마약복용 혐의가 불거진 것은 2001년 11월 13일로 이날

부터 이들 언론들은 온통 그녀의 이야기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신문들은 황수정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인 11월 14일자 가판부터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소위 “황수정 사건”을 폭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 스포츠신문은 아직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함께 온갖 추측과 왜곡으로 가득한 기사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신문들의 선정적이고 경쟁적인 기사들은 비단 황수정이라는 유명 탤런트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건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는 오직 상업적인 이익과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한 개인의 인격권을 무참하게 침해하는 기사들을 접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보도의 원칙이나 공정성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01년 11월 29일에 <스포츠투데이>,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굿데이(goodday)> 등 스포츠신문 4개지에 대해 갖가지 소문과 억측을 실제 사건에 덧붙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공개경고'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 12월 12일에는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주최로 '연예인들의 인격권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토론회를 통해 스포츠신문의 의혹 부풀리기와 성적 선정주의에 집착한 사생활 폭로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도 심의를 통해서 황수정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18개 중앙일간지와 24개 지방일간지, 1개 통신사 등 모두 48개 언론사에 대해서 시

정권고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결정들은 공히 현재 스포츠신문들이 여과 없이 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보도 형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 여겨진다.

분명 황수정 사건은 엄청난 화제거리였던 동시에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건들,

스포츠신문은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보도 행태 보여

특히 스포츠신문의 보도형태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냈다. 첫째, 스포츠신문과 황색저널리즘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둘째, 황수정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스포츠신문들이 행한 보도형태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셋째, 이를 통해 볼 때 과연 연예인에게는 인격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넷째, 그렇다면 바람직한 스포츠신문

보도는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만 하는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스포츠신문과 황색저널리즘

원래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란 1889년 W. R. 허스트의 <모닝 저널>이 당시 인기를 끌었던 J. 폴리처의 <뉴욕 월드> 일요판 만화인 '엘로 키드(yellow kid)'의 스타프를 그대로 빼내서 또 다른 '엘로 키드'를 만들어냄으로써 동시에 두 잡지가 황색의 옷을 입은 소년이 주인공인 '엘로 키드'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신문이 과도한 선정주의(sensationalism)로 흐름으로써 생긴 말이다.

따라서 황색 저널리즘이란 대중의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여 흥미본위의 보도를 하는 센세이션얼리즘 경향을 띠는 저널리즘을 뜻한다. 이는 신문이 자본주의 시장경쟁의 논리가 심화됨에 따라 스스로 상품화됨으로써 대중에 영합하여 취재하는 행위이며, 보도내용이 점차 인간의 불건

전한 감정을 자극하는 범죄나 괴기사건, 성적 추문 등의 선정적인 사건으로 채워지고 이를 과도한 비중으로 다루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선정주의는 사회미풍양속의 파괴 및 풍기문란 조장, 프라이버시의 침해, 신문의 품위 저하를 일으키는 원흉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대중신문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각종 스포츠신문들이 황색저널리즘에 입각한 보도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가 선정적인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외양적 요소로 기사가 어떻게 포장돼 독자에게 전달되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기사의 내용과 그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여기에는 개별기사에 어떠한 취재원이 사용됐는지, 제목은 본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취재원을 표시하는 방식은 얼마나 투명한지 등의 세부기준을 적용시켜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

준을 적용하여 스포츠신문을 판단해 본다면 스포츠신문이 갖고 있는 선정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황수정 사건에 대해 스포츠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스포츠신문은 전체 기사에서 제목의 비중이 약 60~70%에 육박했으며, 제목 부근의 색조는 대부분 예외 없이 자극적인 빨간색을 사용했다.

이는 시민의 의식을 일깨우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마취제적인 역기능을 더욱 강력하게 추구하는 편집 자세로 볼 수 있다. 또한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도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기사에서 취재원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자극적인 주제나 흥미 위주의 내용일 경우 더욱 취재원이 밝혀지지 않아 의혹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제공하면서 더욱 황색저널리즘적 성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번 황수정 사건과 관련, 스포츠신문들

의 황색저널리즘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신문의 보도 행태를 찬성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63.5%(2001년 12월 14~17일, 총 응답자 수 606명, 해당 응답자수 385명)가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우리 스포츠신문의 선정적 보도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과연 스포츠신문과 황색 저널리즘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실 스포츠신문이 선정성을 띠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은 시장 구조와 관련이 깊다. 스포츠신문의 판매는 현재 가판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1년 9월 창간된 <굿데이>의 가세로 5파전이 형성되면서 좁은 수요시장에서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많은 선정적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보다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팽배해진 암묵적인 경제논리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신문의 본질이 결코 연예오락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논리나 원인을 이유로 황색저널리즘적 성향을 띠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명색이 스포츠신문이라 하면서 국민들의 체력 향상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체육이나 생활체육에는 관심이 없고 상업적인 관람체육과 엘리트 체육만을 홍보하고 조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면을 관람스포츠, 레저, 연예, 오락, 성(性)으로만 채움으로써 사람들의 현실도파를 조장한다. 특히 연예인 관련 기사의 경우, 스포츠신문은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품행, 성격 등을 파헤치는데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왜곡된 성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연예인, 여성 등과 같은 특정 직업 및 계층에 관한 편견 의식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스포츠신문의 보도 행태가 갖는 문제점은 특히 황수정 사건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황수정 사건 보도의 문제점과 인격권

그렇다면 황수정사건 보도

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황수정 사건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2001년 11월 13일이었으며, 사건이 종결된 이전까지는 꾸준히 높은 빈도의 기사가 제공이 되다가 사건 종결 이후에는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002년 2월 14일 경 “황수정의 뉴질랜드

자극적인 주제나 흥미위주의 내용의 기사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의대행” 관련 기사를 마지막으로 거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약 3개월 간에 걸쳐 이루어진 황수정 사건과 관련된 각 스포츠신문의 보도 경쟁에서는 평소 스포츠신문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보도 성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불거졌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선정적인 보도’이다. 황수정 사건의 경우 이러한 선정적 보

도가 극치를 이룬다. 황수정 사건의 본질은 그녀가 마약을 복용했는지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황수정과 가족, 애인, 주변 연예인들과의 관계를 가십거리로 보도하였으며, 황수정의 애정행각, 성격, 사생활을 흥미진진한 허구적인 추리소설로 만들어냈다.

둘째, ‘이중적 성규범’을 통해 기존의 왜곡된 성문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황수정 사건 관련 기사에서는 그녀가 출연한 TV드라마에서 나타났던 ‘지고지순한’, ‘참한’, ‘예쁜’, ‘순수한’, ‘맑은’, ‘단아한’, ‘깨끗한’ 등의 이미지와 함께 ‘현모양처’, ‘조신한’ 등과 같은 이미지가 강조되었고, 극중의 이미지와 현실의 이미지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으로써 이와 동시에 ‘암전한 고양이’, ‘난잡한 사생활’, ‘최음제’ 등과 같은 어구들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황수정이라는 개인의 범법행위가 갖는 의미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방향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질타하게끔 하는 여론을 형

성했다. 또한 황수정의 남자 관계를 들추어냄으로써 복잡한 성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마치 '섹스 비디오 사건'으로 확대시키려 하는 등 '섹스'와 관련된 선정적인 내용들로 집중 조명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성문화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셋째, 본 사건과는 '무관하거나 추측적이고 과장된 기사'가 많았다. 특히 황수정이 애인과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는 기사가 나간 후, 그녀가 원래 남자관계가 복잡했다, 모 남자 탤런트와 삼각관계였다는 등의 추측기사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황수정 사건이 진행되면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과장 보도가 연이으면서 마치 지독한 파파라치처럼 한 여성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파헤쳐 놓았다.

이러한 스포츠신문의 보도 행태는 공히 황수정이라는 공인, 아니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격 유린행위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어느 정도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치고서 옐로 페이지들의 선정적 보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권리의식이 높은 국가에서는 우리 나라 스포츠신문이 황수정 사건과 관련하여 보인 보도형태처럼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반론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추측성 보도까지 덧붙여 기사화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와 반대로 황수정 사건의 경우에서 보여준 우리 나라 스포츠신문의 행태는 가히 언론의 야만적 테러라 불릴만 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붙잡을 야구와 축구 등 국내외 프로 스포츠가 막을 내린 후, 연예인과 마약, 그리고 섹스를 결합시킨 황수정 사건은 스포츠신문에게 있어서는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특종이었다. 문제는 뉴스 작성의 기본을 포기한 채 이루어진 스포츠신문의 보도 행태로 인해 인간으로서 황수정이 지닌 존엄성과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은 익명의 비난들 속에 무방비로 던져졌다는 것이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황수정이 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수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이 스포츠신문들에 도배가

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다.

미국의 유명 배우인 더스틴 호프만은 "스타는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스타가 되는 순간 그는 저널리즘에 의해 죽은 뒤 방부처리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수많은 언론에 의해 형성된 가십문화에 포위된 연예인들의 상황을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스포츠신문만큼 연예인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시시콜콜하게 기사화하는 신문은 없다. 우리 나라 연예인들은 스포츠신문 기자와 연예 정보프로그램 기자들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그들의 눈과 귀에 자신이 노출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죽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예인에게도 과연 인격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황수정의 경우를 볼 때, 연예인에게 있어 인격권은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침해받는 것으로서의 개념이 더 강하다. 또한 이러한 침해는 미디어에 의해 과장되게 매개되며 언어와 화상에 의한 정서적 폭력이 심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에게 있어 인격권은 미디어에 의해 침해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관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지켜져야 할 명예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예인 스스로의 자숙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를 침해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각종 언론, 특히 스포츠신문의 건전한 보도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스포츠신문 보도의 나아갈 바

백지연과 오현경, 백지영, 이태란, 심은하, 그리고 황수정. 모두 개인적 혹은 공적 사건과 연루되어 황색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스포츠신문을 통해 무차별적인 인격권 침해를 당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녀들은 사건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건과 무관한 자신의 사생활을 대중들에게 공개 당했으며 때로는 거짓되고 추측된 내용

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세계적인 엘리트 신문들은 어떤 기사에 대해서든 사실 확인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투입한다.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기사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또한 취재원

**언론의 자유라는 구색 좋은
핑계만으로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 보도를
지속해서는 곤란**

은 실명으로 쓰는 게 기본이고 그게 안될 경우는 최대한 취재원의 정파적 입장이 드러나도록 정황을 밝혀준다. 게다가 이들의 기사 쓰기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는 갈등 가능성이 있거나 입장 차이가 분명한 쟁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복수의 취재원을 활용해 한 기사 안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관행이다. 국내의 언론사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소송을 겪으면서 점차

이러한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스포츠신문들은 선정적이고 추측과 허위 보도로 점철된 연예인 관련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이제 스포츠신문도 분명 신문으로서의 품격을 되찾아야만 한다. 신문의 질은 알찬 편집과 실속 있는 기사로 판가름나는 것이지만 그 품격은 사회적 책임성으로 평가된다. 대중매체로서의 윤

리적, 도덕적 책임 구현 여부가 곧 그 품격의 높고 낮음을 결정해주는 것이다. 제호 밑에 '신문 윤리 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는 문구가 없는 스포츠신문은 하나도 없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전시용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신문은 '독자가 원하기 때문에' 혹은 '언론의 자유'라는 구색 좋은 핑계만으로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적 보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펜이 기사의 대상이 되는 한 사람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2001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1년도 한 해 동안 총 659건의 중재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전년도 607건보다 52건(8.5%) 증가한 것으로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신청사건수이다. 중재신청사건은 1998년(602건)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선 이후 매년 600건대를 유지해 오다 2001년에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1년도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와 변화로는 합의율의 경우 전년도 32.6%에서 34.8%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중재불성립결정률은 개정 정간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7년 이후 15%~16%대를 유지하다 2000년도에는 10.9%까지 떨어졌지만 2001년 20.0%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취하율이 전년도 49.8%에서 2001년 37.8%로 감소하였다.

한편 실질적 피해구제율은 62.3%로 나타나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처리결과별 비중이 높은 취하사건과 중재불성립결정된 사건의 경우 전년도 보다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여 여전히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96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인 중재결정제도는 전체사건에서 중재결정을 행한 경우의 비율이 2001년까지 3.1%~4.5% 사이로 나타나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률은 1997년 33.3%, 1998년 41.7%, 1999년 62.1%로 증가하다 2000년 60.0%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01년 79.8%로 다시 크게 증가하여 이의신청제도가 남용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중재부가 아무런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중재결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2001년 한 해 동안 95개 매체의 보도내용을 심의한 결과 231건의 심의기준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2001년 93개 매체를 상대로 234건의 시정권고를 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전년대비 1.3% 감소한 결과로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I. 중재처리결과현황

중재처리결과는 합의 229건(34.8%), 중재결정 29건(4.4%), 중재불성립결정 132건(20.0%), 기각 18건(2.7%), 각하 2건(0.3%), 취하 249건(37.8%)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합의율은 2.2% 증가한 반면 취하율은 12.0% 크게 감소하였고, 1997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던 중재불성립결정률은 9.1% 증가하였다.

신청사건의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은 합의 96.9%, 중재결정 31.0%, 중재불성립결정 20.5%, 기각 5.6%, 취하 53.4%로 전체 피해구제보도율은 59.5%였다. 이는 전년도 전체 피해구제보도율 61.1%에 비해 1.6%

감소한 수치이다.

중재신청사건 청구별 처리결과로는 신청 사건 총 659건 중 반론보도청구 221건(33.5%), 정정보도청구 418건(63.4%), 추후보도청구 20건(3.1%)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은 1997년 이후 여전히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별 피해구제보도율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65.2%, 정정보도청구가 55.7%, 추후보도청구가 75.0%로, 이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해구제측면에서는 반론보도청구가 앞섰다. 중재신청사건 청구별 합의율을 보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의 합의율이 38.0%, 정정보도청구의 합의율이 33.5%, 추후보도청구의 합의율이 25.0%로 나타나 피신청인인 언론사는 여전히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정정보도청구의 수용에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재결정권행사는 총 29건으로 청구권별로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15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13건,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1건으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중재결정권 행사가 다소 앞섰고, 중재부별로는 서울이 24건, 지방이 5건으로 서울중재부에서 중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중재결정사건 29건 중 23건에 대해 신청인,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함으로써, 중재결정권 행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된 23건 중 9건이 법원에 제소되었고, 그중 3건은 법원판결 후 보도를 포함해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중재신청인 유형으로는 개인신청사건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307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 및 협회가 신청한 사건 87건(13.2%),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이 66건(10.0%), 일반단

체가 신청한 사건 61건(9.3%),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 48건(7.3%), 기타 90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변화로는 조합 및 협회의 신청비율이 전년도 8.4%(51건)에서 13.2%(87건)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합 및 협회 중 노동조합의 신청비율이 8.6%(57건)로 전년도 2.5%(15건)에 비해 6.1%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신청비율 또한 7.3%(48건)로 전년도 2.8%(17건)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이 신청한 사건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2001년도 항공사 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연맹이 29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5건으로 총 31건(4.7%)을 신청했기 때문이고,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이 증가한 원인은 국정홍보처가 총 31건(4.7%)의 중재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홍보처가 신청한 사건의 피신청인으로는 조선일보가 16건, 동아일보가 13건, 중앙일보가 2건으로 총 31건 모두 이른바 빅3 신문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 307건 중 개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업가가 116건(37.8%)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자 39건(12.7%), 공무원 36건(11.7%), 지방자치단체장·의원 27건(8.8%), 회사원 12건(3.9%) 순이었다. 특히 교육자의 신청비율이 12.7%(39건)으로 전년도 6.5%(22건) 보다 6.2%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청인 중 특정한 교수 1인이 학사행정비리 관련 보도에 대해 13건의 추후보도를 신청한 것이 증가의 원인이다.

공무원의 신청비율도 11.7%(36건)로 전년도 8.2%(28건) 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다만 국회의원 신청비율이 2.6%(8건)에 불과해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경우 국회의원의 신청비율이 10.6%(36건)으

로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중재신청이 상당수 있었지만 2001년에는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선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재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율은 개인이 60.9%, 기관·단체가 58.2%로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전년대비 7.3% 감소하였고 기관·단체가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한 언론침해의 유형으로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43건(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용훼손이 9건(1.4%), 기타 7건(1.1%) 순이었다.

Ⅲ.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별 중재신청사건은 신문매체 501건(76.0%), 방송매체 114건(17.3%), 잡지 34건(5.2%), 통신 8건(1.2%), 기타 2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신문매체를 상대로 한 신청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체의 구체적 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사건이 26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일간지 155건(23.5%), TV매체 114건(17.3%), 주간신문 85건(12.9%)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중앙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전년도 29.0%(176건)에 비해 10.6% 증가하였고, 지방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반대로 전년도 24.4%(148건)에 비해 0.9% 감소하였다. 주간신문 상대 신청비율 또한 전년도 18.6%(113건) 보다 5.7% 감소하였다.

방송매체 상대 신청비율도 전년도 20.6%(125건)에 비해 3.3% 감소하였는데 방송매체 상대 신청비율은 1997년 17.9%, 1998년 24.2%, 1999년 26.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2000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문매체 중에서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지방일간지 30.9%, 주간신문이 17.0% 순이었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89.5%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체별 신청사건의 양적 순서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매체별 신청비율에서는 중앙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일간지, 방송매체, 주간신문 상대 신청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중재신청사건을 차지하는 중앙일간지의 경우 61.3%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지만, 지방일간지의 경우는 64.5%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전년도에는 중앙일간지의 피해구제보도율이 지방일간지 보다 5.3% 앞섰지만 2001년에는 지방일간지가 3.2% 앞섰다.

주간신문의 피해구제보도율은 71.8%로 전년대비 0.8% 감소하는 데 그쳐 매체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피해구제 가능성이 높은 매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송매체의 경우 36.0%로 전년대비 7.2% 감소하여 신청건수의 감소와 함께 피해구제보도율 또한 감소하였고, 신문매체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피해구제 가능성이 적은 매체로 나타났다.

Ⅳ. 중재대상기사 현황

중재대상 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관련 기사가 338건(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제관련 기사 78건(11.8%), 정치관련 기사 61건(9.3%), 의료·건강 관련 기사 51건(7.7%), 기타 131건(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대상기사의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366건(86.3%), 논

단 및 칼럼 22건(5.2%), 사설과 심층조사기사가 각 11건(2.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스·해설이 87건(76.3%), 시사고발 프로그램 23건(2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사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민원 및 제보가 355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271건(41.1%)으로 두가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V. 중재부별 처리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는 서울의 5개 중재부가 428건(64.9%), 지방 10개 중재부가 231건(35.1%)을 처리하여 여전히 서울중재부에서 처리한 사건이 지방보다 많았고 서울 대 지방간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방중재부에서는 경기중재부 62건(9.4%), 전북중재부 36건(5.5%), 광주중재부 32건(4.9%), 부산중재부 21건(3.2%), 대전중재부 19건(2.9%) 등의 순서로 신청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중재부의 경우 전년도 18건(3.0%) 보다 18건이나 증가하는 약진을 보였다. 그 밖에 경기중재부, 광주중재부, 경남중재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신청건수가 증가한 중재부이다.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율은 서울중재부가 58.4%, 지방중재부가 61.5%로 나타나 전년도 서울중재부와 지방중재부 모두 61.1%로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해 2001년에는 지방중재부가 3.1% 앞섰다.

VI. 법원제소 현황

법원제소건수는 총 36건으로 전년도 8건에 비해 무려 28건이나 증가하였다. 중재불성립 결정된 132건 중 27건, 중재결정(29건) 후이의신청된 23건 중 9건이 법원에 제소되었다.

법원제소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중재신청한 사건이 중재결정이 내려진 후 피신청인의의신청으로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 5건이 있었고,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 이용호 씨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보도내용의 주인공인 여운환 씨가 각 매체를 상대로 중재신청하였으나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져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 14건을 차지해 2001년 법원제소건수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법원제소결과는 총 36건 중 15건이 인용판결을 받았고 8건이 취하, 8건이 기각, 1건이 재판상 화해, 나머지 4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 시정권고현황 ◇

2001년에는 일간지 75종, 주간지 10종, 주간신문 2종, 월간지 7종, 통신 1종 등 총 95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전년대비 1.3% 감소한 231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항정신성의약품 용량, 용법 공개기사가 119건(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의 신원 공개기사가 70건(30.3%),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기사가 22건(9.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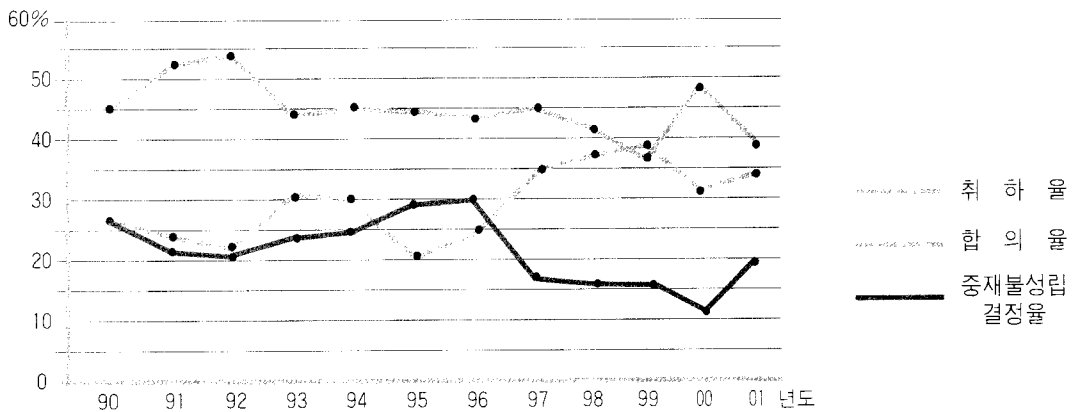
1. 중재신청처리현황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안은 %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659 (100)	229 (34,8)	29 (4,4)	132 (20,0)	18 (2,7)	2 (0,3)	249 (37,8)

1990년 이후 합의율 · 취하율 · 중재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처리결과	총 건수	피 해 구 제 보 도 내 용											피해 구제 보도율 (%)
		피해 구제 보도 건수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기 타	
합의	229	222	131		1	70	1		11	5			96,9
중재결정	29	9	5			3				1			31,0
중재불성립 결정	132	27	20			5				1	1		20,5
기각	18	1				1							5,6
각하	2												0
취하	249	133	51	1	6	40	3	6	2	11	12	1	53,4
계	659	392	207	1	7	119	7	6	13	18	13	1	59,5

감소한 수치이다.

중재신청사건 청구별 처리결과로는 신청 사건 총 659건 중 반론보도청구 221건(33.5%), 정정보도청구 418건(63.4%), 추후보도청구 20건(3.1%)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은 1997년 이후 여전히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별 피해구제보도율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청구가 65.2%, 정정보도청구가 55.7%, 추후보도청구가 75.0%로, 이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해구제측면에서는 반론보도청구가 앞섰다. 중재신청사건 청구별 합의율을 보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의 합의율이 38.0%, 정정보도청구의 합의율이 33.5%, 추후보도청구의 합의율이 25.0%로 나타나 피신청인인 언론사는 여전히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정정보도청구의 수용에 인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재결정권행사는 총 29건으로 청구권별로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15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13건,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1건으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중재결정권 행사가 다소 앞섰고, 중재부별로는 서울이 24건, 지방이 5건으로 서울중재부에서 중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중재결정사건 29건 중 23건에 대해 신청인,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함으로써, 중재결정권 행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된 23건 중 9건이 법원에 제소되었고, 그중 3건은 법원판결 후 보도를 포함해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중재신청인 유형으로는 개인신청사건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307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 및 협회가 신청한 사건 87건(13.2%),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이 66건(10.0%), 일반단

체가 신청한 사건 61건(9.3%),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 48건(7.3%), 기타 90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변화로는 조합 및 협회의 신청비율이 전년도 8.4%(51건)에서 13.2%(87건)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합 및 협회 중 노동조합의 신청비율이 8.6%(57건)로 전년도 2.5%(15건)에 비해 6.1%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신청비율 또한 7.3%(48건)로 전년도 2.8%(17건)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이 신청한 사건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2001년도 항공사 조종사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연맹이 29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5건으로 총 31건(4.7%)을 신청했기 때문이고, 국가기관이 신청한 사건이 증가한 원인은 국정홍보처가 총 31건(4.7%)의 중재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정홍보처가 신청한 사건의 피신청인으로는 조선일보가 16건, 동아일보가 13건, 중앙일보가 2건으로 총 31건 모두 이른바 빅3 신문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 307건 중 개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업가가 116건(37.8%)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자 39건(12.7%), 공무원 36건(11.7%), 지방자치단체장·의원 27건(8.8%), 회사원 12건(3.9%) 순이었다. 특히 교육자의 신청비율이 12.7%(39건)으로 전년도 6.5%(22건) 보다 6.2%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청인 중 특정인 교수 1인이 학사행정비리 관련 보도에 대해 13건의 추후보도를 신청한 것이 증가의 원인이다.

공무원의 신청비율도 11.7%(36건)로 전년도 8.2%(28건) 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다만 국회의원 신청비율이 2.6%(8건)에 불과해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경우 국회의원의 신청비율이 10.6%(36건)으

로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중재신청이 상당수 있었지만 2001년에는 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선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재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율은 개인이 60.9%, 기관·단체가 58.2%로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전년대비 7.3% 감소하였고 기관·단체가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보도율은 전년대비 6.1% 증가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한 언론침해의 유형으로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43건(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신용훼손이 9건(1.4%), 기타 7건(1.1%) 순이었다.

Ⅲ.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별 중재신청사건은 신문매체 501건(76.0%), 방송매체 114건(17.3%), 잡지 34건(5.2%), 통신 8건(1.2%), 기타 2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신문매체를 상대로 한 신청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체의 구체적 유형별로는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사건이 26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방일간지 155건(23.5%), TV매체 114건(17.3%), 주간신문 85건(12.9%)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중앙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전년도 29.0%(176건)에 비해 10.6% 증가하였고, 지방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반대로 전년도 24.4%(148건)에 비해 0.9% 감소하였다. 주간신문 상대 신청비율 또한 전년도 18.6%(113건) 보다 5.7% 감소하였다.

방송매체 상대 신청비율도 전년도 20.6%(125건)에 비해 3.3% 감소하였는데 방송매체 상대 신청비율은 1997년 17.9%, 1998년 24.2%, 1999년 26.7%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0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문매체 중에서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지방일간지 30.9%, 주간신문이 17.0% 순이었다. 방송매체 중에서는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89.5%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체별 신청사건의 양적 순서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매체별 신청비율에서는 중앙일간지 상대 신청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일간지, 방송매체, 주간신문 상대 신청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중재신청사건을 차지하는 중앙일간지의 경우 61.3%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지만, 지방일간지의 경우는 64.5%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전년도에는 중앙일간지의 피해구제보도율이 지방일간지 보다 5.3% 앞섰지만 2001년에는 지방일간지가 3.2% 앞섰다.

주간신문의 피해구제보도율은 71.8%로 전년대비 0.8% 감소하는 데 그쳐 매체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피해구제 가능성이 높은 매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송매체의 경우 36.0%로 전년대비 7.2% 감소하여 신청건수의 감소와 함께 피해구제보도율 또한 감소하였고, 신문매체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피해구제 가능성이 적은 매체로 나타났다.

Ⅳ. 중재대상기사 현황

중재대상 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관련 기사가 338건(51.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제관련 기사 78건(11.8%), 정치관련 기사 61건(9.3%), 의료·건강 관련 기사 51건(7.7%), 기타 131건(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대상기사의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366건(86.3%), 논

단 및 칼럼 22건(5.2%), 사설과 심층조사가사가 각 11건(2.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뉴스·해설이 87건(76.3%), 시사고발 프로그램 23건(2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사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민원 및 제보가 355건(5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271건(41.1%)으로 두가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V. 중재부별 처리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는 서울의 5개 중재부가 428건(64.9%), 지방 10개 중재부가 231건(35.1%)을 처리하여 여전히 서울중재부에서 처리한 사건이 지방보다 많았고 서울 대 지방간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방중재부에서는 경기중재부 62건(9.4%), 전북중재부 36건(5.5%), 광주중재부 32건(4.9%), 부산중재부 21건(3.2%), 대전중재부 19건(2.9%) 등의 순서로 신청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북중재부의 경우 전년도 18건(3.0%) 보다 18건이나 증가하는 약진을 보였다. 그 밖에 경기중재부, 광주중재부, 경남중재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신청건수가 증가한 중재부이다.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율은 서울중재부가 58.4%, 지방중재부가 61.5%로 나타나 전년도 서울중재부와 지방중재부 모두 61.1%로 차이가 없었던 것에 비해 2001년에는 지방중재부가 3.1% 앞섰다.

VI. 법원제소 현황

법원제소건수는 총 36건으로 전년도 8건에 비해 무려 28건이나 증가하였다. 중재불성립 결정된 132건 중 27건, 중재결정(29건) 후 이의신청된 23건 중 9건이 법원에 제소되었다.

법원제소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중재신청한 사건이 중재결정이 내려진 후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 5건이 있었고,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조지폭력배의 두목으로 이용호 씨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보도내용의 주인공인 여운환 씨가 각 매체를 상대로 중재신청하였으나 중재불성립결정이 내려져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 14건을 차지해 2001년 법원제소건수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법원제소결과는 총 36건 중 15건이 인용판결을 받았고 8건이 취하, 8건이 기각, 1건이 재판상 화해, 나머지 4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 시정권고현황 ◇

2001년에는 일간지 75종, 주간지 10종, 주간신문 2종, 월간지 7종, 통신 1종 등 총 95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전년대비 1.3% 감소한 231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용량, 용법 공개기사가 119건(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의 신원 공개기사가 70건(30.3%),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기사가 22건(9.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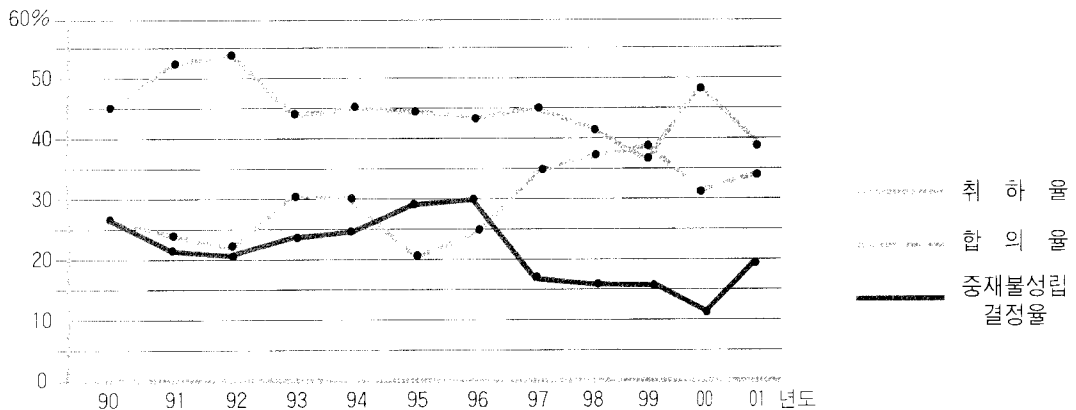
1. 중재신청처리현황

중재신청사건 처리결과

()안은 %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659 (100)	229 (34,8)	29 (4,4)	132 (20,0)	18 (2,7)	2 (0,3)	249 (37,8)

1990년 이후 합의율 · 취하율 · 중재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중재처리결과별 피해구제제도 현황

처리결과	총 건수	피 해 구 제 제 도 내 용											피해 구제 제도율 (%)
		구제 제도 건수	반론 제도	반론 및 사과제도	반론 및 PR제도	정정 제도	정정 및 사과제도	정정 및 PR제도	정정 및 반론제도	추후 제도	PR 제도	기 타	
합의	229	222	131		1	70	1		11	5			96.9
중재결정	29	9	5			3				1			31.0
중재불성립 결정	132	27	20			5				1	1		20.5
기각	18	1				1							5.6
각하	2												0
취하	249	133	51	1	6	40	3	6	2	11	12	1	53.1
계	659	392	207	1	7	119	7	6	13	18	13	1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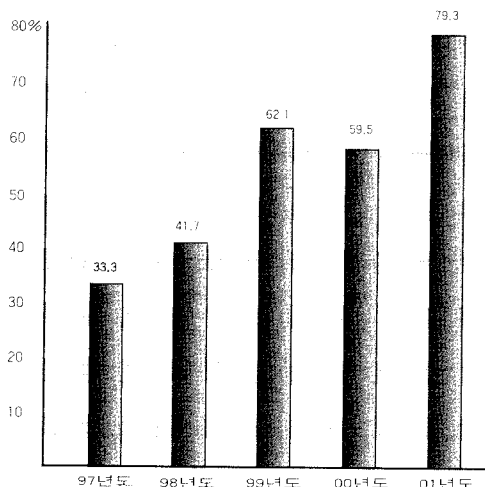
중재신청사건청구별 처리결과

처리 결과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반론보도청구	84	38.0	15	6.8	61	27.6	2	0.9	1	0.5	58	26.2	221	100
정정보도청구	140	33.5	13	3.1	68	16.3	16	3.8			181	43.3	418	100
추후보도청구	5	25.0	1	5.0	3	15.0			1	0.5	10	50.0	20	100
계	229	34.8	29	4.4	132	20.0	18	2.7	2	0.3	249	37.8	65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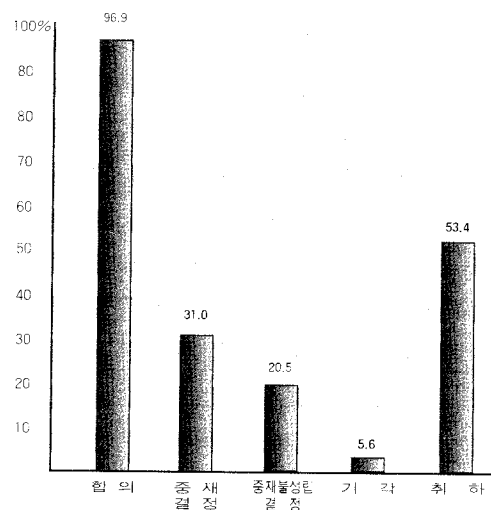
중재신청사건청구별 피해구제보도 현황

청 구 명	총 건수	피해 구제 보도 건수	피 해 구 제 보 도 내 용									기타	피해 구제 보도율 (%)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반론보도청구	221	144	122		3	9	1	3	4	1	1		65.2
정정보도청구	418	233	85	1	4	110	6	3	9	2	12	1	55.7
추후보도청구	20	15								15			75.0
계	659	392	207	1	7	119	7	6	13	18	13	1	59.5

중재결정 이의신청률 추이



중재결과별 피해구제보도율



II. 중재신청인 유형별 현황

신청인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안은 %

신청인 유형 \ 침해유형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
개 인	298	6	3	104	7	61	3		132	307 (46.6)
국가기관	48			14	7	9			18	48 (7.3)
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23			11		6		1	5	23 (3.5)
정 당	4			2		1			1	4 (0.6)
조합 및 협회	86		1	33	3	17	12		22	87 (13.2)
공공단체	14			4	1	3			6	14 (2.1)
일반단체	60		1	25	2	10	2	1	21	61 (9.3)
종교단체	7			3	1	2	1			7 (1.1)
기업체	61	3	2	20	2	12			32	66 (10.0)
금융기관	3			1					2	3 (0.4)
언론사	19			5	2	10			2	19 (2.9)
교육기관	10			7	2	1				10 (1.5)
의료기관	10				2				8	10 (1.5)
계	643 (97.6)	9 (1.4)	7 (1.0)	229 (34.8)	29 (4.4)	132 (20.0)	18 (2.7)	2 (0.3)	249 (37.8)	659 (100)

신청인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신청인 유형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기타	보도율 (%)
개 인	307	187	82	1	3	58	5	5	8	17	17	1	60.9
국가기관	48	24	20			4							50.0
지방법원/ 지방자치단체	23	17	9		1	5				1	1		73.9
정 당	4	3	1			2							75.0
조합 및 협회	87	45	36			8	1						51.7
공공단체	14	7	3			4							50.0
일반단체	61	40	29			9			2				65.6
종교단체	7	5	2			3							71.4
기업체	66	41	13		3	18		1	1		5		62.1
금융기관	3	2	2										66.7
언론사	19	10	4			5	1						52.6
교육기관	10	9	4			3			2				90.0
의료기관	10	2	2										20.0
계	659	392	207	1	7	119	7	6	13	18	13	1	59.5

신청인(개인의 경우) 직업별 침해유형 및 중재처리결과

()안은 %

개인의 직업 \ 침해유형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
회사원	12			2		4	1		5	12 (3.9)
공무원	36			15	2	4	2		13	36 (11.7)
국회의원	8			4	1	1			2	8 (2.6)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27			12	2	4			9	27 (8.8)
정당/정치인	3					2			1	3 (1.0)
공공기관장	9			3	1	1			4	9 (2.9)
교육자	39			16		5			18	39 (12.7)
종교인	6			4					2	6 (2.0)
언론인	4		1	1		2			2	5 (1.6)
문화예술인	5					3			2	5 (1.6)
사업가	109	6	1	35	1	27			53	116 (37.8)
제1차산업 종사자	4					2			2	4 (1.3)
연예인	2								2	2 (0.7)
조합대표 회장	5			1		2			2	5 (1.6)
의료인	4		1			1			4	5 (1.6)
학생	3			2					1	3 (1.0)
사회운동가	8			2		1			5	8 (2.6)
주부	5			3		1			1	5 (1.6)
부적	7			4		1			2	7 (2.3)
기타	2								2	2 (0.7)
계	298 (97.0)	6 (2.0)	3 (1.0)	104 (33.9)	7 (2.3)	61 (19.8)	3 (1.0)	0 (0.0)	132 (43.0)	3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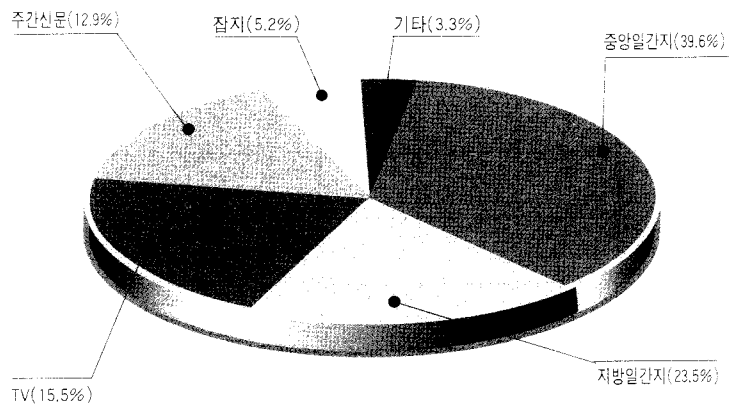
Ⅲ. 중재대상 매체별 현황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안은 %

매체유형 \ 처리결과		합 의	중재 결정	중재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신문	중앙일간지	75 (28.7)	13 (5.0)	59 (22.6)	6 (2.3)		108 (41.4)	261 (100)
	지방일간지	77 (49.7)	2 (1.3)	9 (5.8)	10 (6.4)		57 (36.8)	155 (100)
	주간신문	45 (52.9)	2 (2.4)	17 (20.0)		1 (1.2)	20 (23.5)	85 (100)
방송	T V	16 (15.7)	9 (8.8)	33 (32.3)	2 (2.0)	1 (1.0)	41 (40.2)	102 (100)
	라디오						3 (100)	3 (100)
	C A T V	2 (22.2)		2 (22.2)			5 (55.6)	9 (100)
잡지		11 (32.4)	3 (8.8)	11 (32.4)			9 (26.4)	34 (100)
통신		2 (25.0)		1 (12.5)			5 (62.5)	8 (100)
기타		1 (50.0)					1 (50.0)	2 (100)
계		229 (34.8)	29 (4.4)	132 (20.0)	18 (2.7)	2 (0.3)	249 (37.8)	659 (100)

매체별 중재신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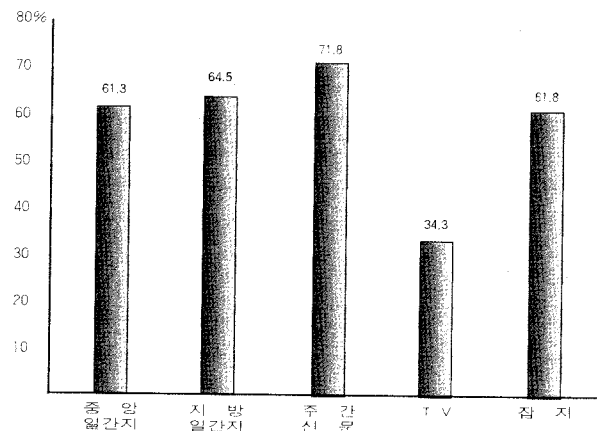


매체유형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단위: %) 1

매체유형	신청건수	보도건수	반론보도	반론및사과보도	반론및PR보도	정정보도	정정및사과보도	정정및PR보도	정정및반론보도	추후보도	PR보도	기타	보도율(%)
신문	중앙일간지	261	160	94	1	5	44		3	1	3	9	61.3
	지방일간지	155	100	51		1	29	1	1	8	7	2	64.5
	주간선분	85	61	24		1	27	3	1	4	1		71.8
방송	TV	102	35	17			6	3			6	2	34.3
	라디오	3	1	1									33.3
	CATV	9	5	2			3						55.6
잡지	지	34	21	13			7		1				61.8
통신	신	8	7	4			2				1		87.5
기타	타	2	2	1			1						100
계		659	392	207	1	7	119	7	6	13	18	13	59.5

매체별 피해구제보도율 비교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재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중 앙 일 간 지	경 향 신 문	14	14			6		1			7
	국 민 일 보	7	7			3		2			2
	내 일 신 문	5	5			1		1			3
	노 동 일 보	1	1			1					
	대 한 매 일	10	10			3		2			5
	동 아 일 보	41	39		2	9	7	9	1		15
	문 화 일 보	17	16	1		5	1	5			6
	세 계 일 보	8	8			2		2	1		3
	신 한 일 보	1	1			1					
	조 선 일 보	50	49		1	9	1	19	2		19
	중 앙 일 보	31	31			13	2	8			8
	한 거 래	10	10			4		2			4
	한 국 일 보	11	11			5		2	1		3
방 일 간 지	소 계	206	202	1	3	62	11	53	5	0	75
	부 산										
	국 제 신 문	8	8			2	1	1	1		3
	부 산 일 보	5	5			1					4
	대 구 · 경 북										
	대 구 신 문	4	4			3					1
	매 일 신 문	6	6			1		2			3
	영 남 일 보	1	1			1					
	영 남 투 데 이	3	3			2					1
	광 주 · 전 남										
	광 주 매 일	2	2					1	1		
	광 주 타 임 스	5	5			2			2		1
	무 등 일 보	1	1			1					
	전 남 매 일	5	5			3			1		1
	전 남 일 보	1	1						1		
	호 남 매 일	3	3			3					
	호 남 신 문	1	1						1		
	대 전 · 충 남										
	대 전 매 일	3	3			2					1
	대 전 일 보	2	2			1					1
	중 도 일 보	2	2			2					
	충 남 일 보	2	2			1					1
	경 기 일 보	8	8			3					5
	경 인 매 일	4	4			1					3
	경 인 일 보	4	4			3					1
	기 호 일 보	3	3								3
	서 울 일 보	4	4			3		1			
	수 도 권 일 보	3	3			2					1
	시 대 일 보	3	3			3					
	인 천 · 경 기										
	인 천 일 보	4	4			1					3

매체 유형	구 분		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명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재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방 일 간 지	인천·경기	전 국 매 일	1	1			1						
		중 부 일 보	13	13			5	1	1	1		5	
		현 대 일 보	2	2								2	
		강원도민일보	2	2			1					1	
	충북	동 양 일 보	2	2			1		1				
		중 부 매 일	1	1								1	
		충 청 일 보	4	4			1		1			2	
		한 빛 일 보	3	3			2					1	
	전북	새전북신문	6	6			3					3	
		전북도민일보	2	1	1		2						
		전 북 매 일	2	1	1		2						
		전 북 일 보	9	8	1		6		1			2	
	전북	전북제일신문	5	4	1		2			1		2	
		전 주 일 보	6	6			3			1		2	
		울산·경남	경남도민일보	2	2			1					1
			경 남 신 문	4	4			4					
	경 남 일 보		4	4			3					1	
	울 산 매 일		1	1			1						
	제주	한 라 일 보	1	1								1	
		소 계	157	153	4	0	79	2	9	10	0	57	
경 제 지		내 외 경 제	2	2			1					1	
		매 일 경 제	9	9			1			1		7	
		서 울 경 제	3	3								3	
		제 일 경 제	2	2			2						
		파이낸셜뉴스	2	2				1	1				
		한 국 경 제	7	7			2					5	
		소 계	25	25	0	0	6	1	1	1	0	16	
스 포 츠 지		goodday	1	0	1							1	
		스포츠서울	4	3		1	1					3	
		스포츠조선	1	1								1	
		스포츠투데이	6	6			3					3	
		일간스포츠	1	1								1	
		소 계	13	11	1	1	4	0	0	0	0	9	
특 수 일 간 지		국 방 일 보	1	1				1					
		농 민 신 문	2	2					1			1	
		디지털타임즈	2	2								2	
		머니투데이	2	1	1		1	1					
		전 자 신 문	6	6					1			5	
		환 경 일 보	2	2			1		1				
통 신		소 계	15	14	1	0	1	1	5	0	0	8	
		연 합 뉴 스	8	8			2		1			5	
		소 계	8	8	0	0	2	0	1	0	0	5	

매체유형	구분	매체명	계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중앙방송		KBS-1TV	21	21			2	1	4	2	12
		KBS-2TV	4	4					2		2
		MBC-TV	40	38		2	9	7	15		9
		SBS-TV	13	11	2		3		6		4
		CBS-R	2	2			1				1
		소 계	80	76	2	2	15	8	27	2	28
지방방송		광주KBS-1TV	2	2					2		
		대전KBS-1TV	2	2							2
		부산KBS-1TV	1	1							1
		광주MBC-TV	1	1					1		
		대구MBC-TV	1	1					1		
		대전MBC-TV	2	2							2
		부산MBC-TV	1	1							1
		삼척MBC-TV	2	2					1	1	
		전주MBC-TV	2	2					1		1
		전주MBC-TV	2	2							2
		춘천MBC-TV	1	1							1
		충주MBC-R	1	1							1
지역민방		광주CBS-R	1	1							1
		소 계	19	19	0	0	0	0	6	0	12
		J-TV	2	2				1			1
		PSB-TV	1	1			1				
		TJB-TV	1	1							1
		UBC	2	2							2
케이블TV		소 계	6	6	0	0	1	1	0	0	4
		K-TV	1	1					1		
		YTN	6	5		1			1		5
		한강케이블TV	1	1			1				
		한국CATV충청방송	1	1			1				
		소 계	9	8	0	1	2	0	2	0	5
주간지		뉴스위크	1	1			1				
		시사저널	5	5			2		2		1
		주간동아	4	4			1	1			2
		주간조선	5	5			1		2		2
		한겨레21	3	3			2		1		
		소 계	18	18	0	0	7	1	5	0	5
시사주간신문		월요신문	3	3			2		1		
		월요신문	1	1							1
		월요시사	2	2					1		1
		소 계	6	6	0	0	2	0	2	0	2
지열주간신문		고성신문	1	1			1				

2001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매채 유형	구 분 매채명	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재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주 간 신 문	고양과주시민연합신문	1	1							1
	관악자치신문	2	2			2				
	김제시민의신문	1	1			1				
	김 제 신 문	1	1			1				
	김포미래신문	2	2			2				
	나주투데이	1	1					1		
	남 서 신 문	1	1			1				
	남 해 뉴 스	1	1			1				
	남 해 신 문	1	1			1				
	동대문신문	1	1			1				
	동두천신문	1	1			1				
	디지털성동저널	2	2			2				
	리빙타임즈	1	1						1	
	목 포 21	1	1					1		
	목포투데이	1	1							1
	문 경 신 문	1	1					1		
	보 은 신 문	1	1							1
	부천포커스	1	1			1				
	삼 군 신 문	1	1			1				
	서 령 신 문	1	1			1				
	설 악 신 문	1	1			1				
	시민의소리	1	1					1		
	시민의신문	1	1			1				
	양구인제신문	2	2			1				1
	양 주 신 문	1	1			1				
	여 수 신 문	3	3							3
	원주투데이	1	1							1
특 수 주 간 신 문	의정부시민신문	2	2			2				
	진남타임즈	1	1					1		
	조 양 신 문	1	1			1				
	주간노원우리신문	1	1			1				
	진 남 신 문	1	1			1				
	청 도 신 문	2	2				1	1		
	충 청 리 뷰	3	3			2		1		
	통 영 소 식	1	1			1				
	하 동 뉴 스	1	1				1			
	소 계	47	47	0	0	29	2	7	0	8
	기 독 교 보	2	2					2		
	리빙타임즈	1	1			1				1
	목원대신문	1	1							
	목회자신문	1	1			1				
	미디어오늘	2	2			1		1		

매체 유형	구 분	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기 타	합 의	중 재 결 정	중 재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특 수 주 간 신 문	미 용 신 문	2	2			1					1
	미용정보신문	1	1			1					
	방송대학보	1	1								1
	서울교사신문	1	1			1					
	서울시정신문	2	2			2					
	세미나리뷰	1	1								1
	수산경제신문	1	1								1
	시민연합신문	1	1			1					
	시민의신문	1	1								1
	CMN	1	1			1					
	언 론 노 보	1	1					1			
	영상산업신문	1	1					1			
	인 채 마 당	1	1								1
	전 기 뉴 스	1	1								1
	정론기독신보	1	1			1					
	주간어민신문	1	1					1			
	치 의 신 보	1	1								1
	크리스찬헤럴드	1	1			1					
	PD연합회보	1	1					1			
	한국기독신문	1	1			1					
	한국아파트신문	1	1					1			
	화장품신문	2	2			1					1
	소 계	32	32	0	0	14	0	8	0	0	10
월 간 지	베스트라이프	1	1								1
	Enfant	1	1			1		1			
	신 동 아	2	2					1			1
	여 론 광 장	1	1								
	월 간 말	3	3				2				1
	월간인물과사상	1	1			1		3			
	월 간 조 선	4	4			1					
	월간한국양록	1	1								
	월간PROPOSE	1	1			1					
	젊 은 구 리	1	1								1
기 타	소 계	16	16	0	0	4	2	6	0	0	4
	구리시의회소식	1	1			1					1
	국제매일뉴스	1	1								
	소 계	2	2	0	0	1	0	0	0	0	1
총 계		659	643	9	7	229	29	132	18	2	249

Ⅳ. 중재대상 기사 현황

매체유형별 중재대상기사 내용 분류

매체 유형	구분	기사 내용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환경	문화	생활 정보	종교	의료 건강	스포츠 연예	부고 및 인물동정	교육	언론	기타	계
일간신문·통신	중앙지		40	24	89	3	3	2	7	13	1	2	12	11		207
	지방지		6	6	99	5	5		3	14			15	2		155
	경제지		11	10						3				1		25
	스포츠지		1	3			1			3	5					13
	특수일간지		7	4	1								1	3		16
	통신		2	3					1	1			1			8
	소계		46	51	208	9	8	3	11	34	6	2	29	17	0	424
	전국방송		3	10	48	1	1	1	1	12	3		6	3	1	90
	지역방송		6	7									1		1	15
	CATV		1		6			1					1			9
방송	소계		4	16	61	1	1	1	2	12	3	0	8	3	2	114
	시사종합지		1		3				1				1			6
	지역생활정보지		4	2	37	1			3			1	1	2		51
	종교지		2				1	2					1			6
	문화/교육관련지		1		5					1	1	1	1			10
	경제/산업관련지			4												4
	언론관련지			3												4
	의약/환경관련지								2					1		2
	기타		1		1											2
	소계		7	4	53	1	0	1	6	3	1	2	4	3	0	85
주간신문	시사종합지		4	4	13					2			3	1		27
	여성지			1												3
	언론관련지			1										2		1
	의약/건강관련지			1												1
	경제/산업관련지		1													1
	기타		1													1
	소계		4	6	16	0	0	0	0	2	0	0	3	1	2	34
	기타		1													2
	소계		0	1	0	0	0	0	0	0	0	0	0	1		2
	총계		61	78	338	11	9	5	19	51	10	4	44	24	5	659

매체유형별 중재대상 기사의 종류

매체	기사종류	빈도	백분율
일간신문·통신·동신	소트레이트기사	366	86.3
	해설기사	1	0.2
	사설	11	2.6
	논단 및 칼럼	22	5.2
	가십기사	6	1.5
	인물·동성	1	0.2
	인터뷰	5	1.2
	심층조사기사	11	2.6
	기타	1	0.2
	계	424	100
방	뉴스·해설	87	76.3
	시사고발	23	20.1
	연애·오락	2	1.8
송	토론	1	0.9
	드라마	1	0.9
	계	114	100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안은 %

매체유형	취재원	직접 인지 취재	민원 및 제보	민·형사 사건 기록	보도 자료 발표	기타	계
일간신문·통신		188	212	6	5	13	424
	방송	43	65	1		5	114
	주간신문	27	56	1	1		85
	잡지	13	21				34
	기타		1			1	2
계		271 (41.1)	355 (53.9)	8 (1.2)	6 (0.9)	19 (2.9)	659 (100)

V.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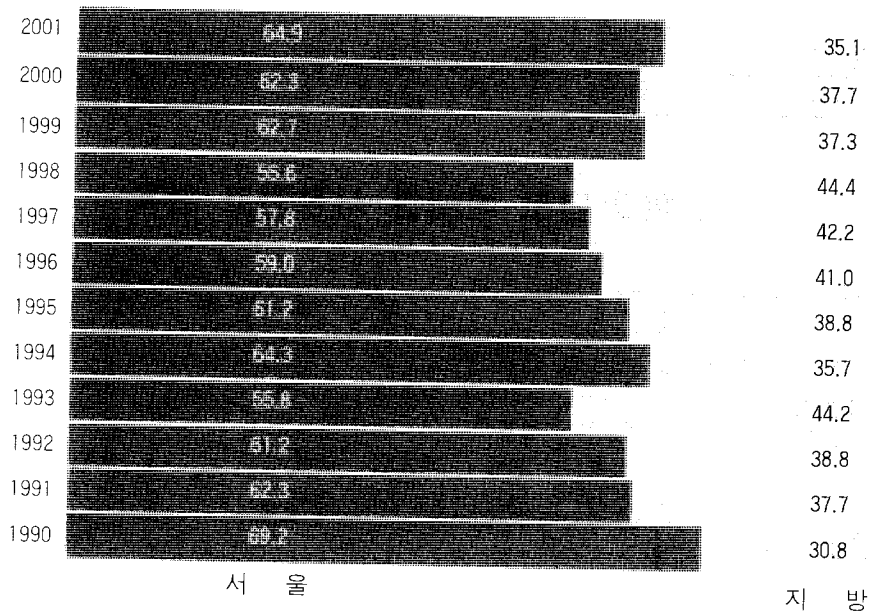
()안은 %

중재부	신청건수	처 리 결 과							비고
		합 의	중재결정 동의	이의	중재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서울중재부	428 (100)	120 (28.0)	4 (0.9)	20 (4.7)	110 (25.7)	8 (1.9)		166 (38.8)	
부산중재부	21 (100)	6 (28.5)		1 (4.8)	1 (4.8)	1 (4.8)		12 (57.1)	
대구중재부	18 (100)	7 (38.9)		1 (5.5)	5 (27.8)			5 (27.8)	
광주중재부	32 (100)	11 (34.4)			8 (25.0)	6 (18.7)		7 (21.9)	
대전중재부	19 (100)	11 (57.9)						8 (42.1)	
경기중재부	62 (100)	32 (51.6)	1 (1.6)		2 (3.2)	1 (1.6)	1 (1.6)	25 (40.5)	
강원중재부	9 (100)	3 (33.3)			1 (11.1)		1 (11.1)	4 (44.4)	
충북중재부	16 (100)	7 (43.8)			3 (18.7)			6 (37.5)	
전북중재부	36 (100)	20 (55.6)	1 (2.7)		2 (5.6)	2 (5.6)		11 (30.5)	
경남중재부	17 (100)	12 (70.6)		1 (5.9)				4 (23.5)	
제주중재부	1 (100)							1 (100)	
계	659 (100)	229 (34.8)	6 (0.9)	23 (3.5)	132 (20.0)	18 (2.7)	2 (0.3)	249 (37.8)	

중재부별 피해구제보도의 내용

중재부	신청 건수	보도 건수	반론 보도	반론 및 사과보도	반론 및 PR보도	정정 보도	정정 및 사과보도	정정 및 PR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PR 보도	기 타	보도율 (%)
서울중재부	428	250	131	1	6	82	5	5	3	5	11	1	58.4
부산중재부	21	11	5			5					1		52.4
대구중재부	18	7				6				1			38.9
광주중재부	32	14	8			5			1				43.8
대전중재부	19	15	5			2				8			78.9
경기중재부	62	43	27			8	1		6		1		69.4
강원중재부	9	5	3				1			1			55.6
충북중재부	16	11	5			3		1	1	1			68.8
전북중재부	36	22	14		1	5				2			61.1
경남중재부	17	13	9			2			2				76.5
제주중재부	1	1				1							100
계	659	392	207	1	7	119	7	6	13	18	13	1	59.5

서울·지방간 중재신청 구성비율추이



Ⅵ.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현황

()안은 법원제소 후 보도

매 체 명	제소건수	1 심 결 과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속
경향신문	1(1)	1					
국민일보	1(1)					1	
동아일보	8(3)	3	5				
문화일보	2(1)					2	
조선일보	5(3)	3				2	
중앙일보	1(1)	1					
한국일보	1(1)	1					
머니투데이	1					1	
연합뉴스	1(1)					1	
주간조선	1(1)	1					
사사저널	1(1)	1					
한겨레21	1		1				
청도신문	1						1
신 동 아	1(1)	1					
월간조선	2(1)	1			1		
월간한국양록	1						1
KBS-TV	1		1				
MBC-TV	4(1)	1	1			1	1
SBS-TV	2(1)	1					1
계	36(18)	15	8		1	8	4

◇ 2001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

(대상기간 : 2001. 1. 1.~2001. 12. 31)

매 체			침 해 유 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사회 질서 침해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중앙 지	경 향 신 문	5		1					4	
	국 민 일 보	1								

매체 시정권고 건수 침해유형			침해유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중 앙 지	내 일 신 문	2			1				1	
	대 한 매 일	4				1			3	
	동 아 일 보	3							3	
	문 화 일 보	2							2	
	세 계 일 보	2							2	
	조 선 일 보	2							2	
	중 앙 일 보	4							4	
	한 겨 레	2	1						1	
	한 국 일 보	2							2	
	굿데이	1							1	
	일간스포츠	1							1	
	스포츠서울	2							2	
	스포츠조선	2							2	
	스포츠투데이	1							1	
	내 외 경 제	0								
	매 일 경 제	0								
	서 울 경 제	1							1	
	한 국 경 제	1							1	
	코리아타임즈	0								
	코리아헤럴드	0								
소 계		38	1	1	1	1	0	0	34	0
부 산 대 구 · 경 북 · 광 주 · 전 남 지	국 제 신 문	3							3	
	부 산 일 보	3							3	
	경 북 매 일	6	1			2			3	
	경 북 일 보	2	1						1	
	대 구 일 보	0								
	대 구 신 문	8	1	1		4			2	
	매 일 신 문	6	1	1		3			1	
	영 남 일 보	5				4			1	
	광 주 매 일	5		1	1	1			2	
	광 주 일 보	2							2	
	광주타임즈	5		2	1	1			1	
	목 포 일 보	0								
	무 등 일 보	5		1		3			1	

매체			침해유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기타	사회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적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지	광주·전남	전광일보	6		1	1	2			2		
		전남매일	3				1			2		
		전남일보	2	1			1					
		호남매일	4		1		1			2		
		호남신문	2				1			1		
	대전·충남	대전매일	2	1						1		
		대전일보	1							1		
		충도일보	1							1		
		충남일보	0									
	인	경기일보	4	1			1			2		
		경도일보	2				1			1		
		경인매일	8			1	3			4		
경인일보		3				1			2			
기호일보		5			1	2			2			
천·경	서울일보	3				1			2			
	수도권일보	6	1			4			1			
	시대일보	7	2		1	2			2			
	인천일보	7				5			2			
	조국일보	1							1			
기	중부일보	5	1			1			3			
	전국매일	1				1						
	현대일보	6	2			3			1			
	강원도민일보	1				1						
강원	강원일보	2				2						
	동양일보	0										
	중부매일	3							3			
	충청일보	2	1		1							
	한빛일보	3	2			1						
전	새전북신문	1				1						
	전북도민일보	0										
	전북매일	1							1			
	전북일보	4				3			1			
	전북제일신문	3				1			2			
북	전주일보	4	2			2						

2001년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성폭행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내 체											
지 방 지 주	울산·경남	가 야 일 보	2								
		경 남 신 문	6	1			1			1	
		경 남 일 보	3				1			4	
		경 상 일 보	1							3	
		울 산 매 일	4							1	
	제주	제 민 일 보	2				1	1		2	
		제 주 일 보	0							2	
		한 라 일 보	2								
		소 계	173	19	8	7	64	1	0	74	0
		연 합 뉴 스	13	2	1	1	5			4	
통 신	소 계	13	2	1	1	5	0	0	4	0	
	뉴스메이커	0							4	0	
	주간지·주간신문	뉴 스 위 크	0								
		뉴 스 피 플	0								
		시 사 저 널	1								
		이코노미스트	0							1	
		일 요 시 사	4								
	월간지	일 요 신 문	1							4	
		주 간 동 아	1							1	
		주 간 조 선	0							1	
주 간 한 국		0									
한 겨 래 21		0									
월 간 지	한경비즈니스	0									
	소 계	7	0	0	0	0	0	0	7	0	
	레이디경향	0									
	말	0									
	신 동 아	0									
	우 먼 센 스	0									
	월 간 조 선	0									
	월 간 중 앙	0									
	한 국 논 단	0									
	소 계	0	0	0	0	0	0	0	0	0	
총 계		231	22	10	9	70	1	0	119	0	

* 심의대상매체 : 일간지 75종, 주간신문 2종, 주간지 10종, 월간지 7종, 통신 1종

◇ 연도별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1. 언론중재신청 처리현황

처리결과

()안은 %

연 도	구 분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계 속					
1981	44	9				12	1	2	20	
1982	50	19				19		2	10	
1983	71	21				22	1	1	26	
1984	54	12				29	3		10	
1985	59	12				28	4		15	
1986	49	14				10	1		24	
1987	47	10				9	1		27	
1988	55	16				12		1	26	
1989	121	29				35		6	51	
1990	159	42				43	1	2	71	
1991	220	52				48	3	1	116	
1992	381	81				79	19		202	
1993	423	132				96	8	2	185	
1994	541	162				127	7		245	
1995	528	111				150	26	3	238	
1996	556	129	2	7		169	9	1	239	
1997	490	161	10	5		79	8	4	223	
1998	602	226	14	10		97	5		250	
1999	641	244	11	18		102	24	5	237	
2000	607	198	10	15		66	14	2	302	
2001	659	229	6	23		132	18	2	249	
계	6,357 (100)	1,909 (30.0)	53 (0.8)	78 (1.2)		1,364 (21.5)	153 (2.4)	34 (0.5)	3,766 (43.5)	

연도별 실질적 피해구제율

연 도	구 분	신 건 청 수	중 건 재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 제 율 (%)
				합 의	중재결정		중재불성립 결정	취 하	소 계	
					동 의	이 의				
1981		44	41	9			5	2	16	39.0
1982		50	48	19			5	4	28	58.3
1983		71	69	21			7	8	36	52.2
1984		54	51	12			8	5	25	49.0
1985		59	55	12			5	7	24	43.6
1986		49	48	14			2	11	27	56.3
1987		47	46	10			4	2	16	34.8
1988		55	54	16			5	13	34	63.0
1989		121	115	29			10	21	60	52.2
1990		159	156	42			10	40	92	59.0
1991		220	216	52			9	43	104	48.1
1992		381	362	81			12	107	200	55.2
1993		423	413	132			16	84	232	56.2
1994		541	534	162			10	128	300	56.2
1995		528	499	111			25	124	260	52.1
1996		556	546	129	2	1	21	137	290	53.1
1997		490	478	161	10	1	13	108	29	61.3
1998		602	597	226	14	2	8	106	356	59.6
1999		641	612	244	11	2	16	92	365	59.8
2000		607	591	198	10	2	10	156	376	63.6
2001		659	639	229	6	3	27	133	398	62.3
계		6,357	6,170	1,909	53	11	228	1,332	3,533	57.3

중재부별 중재신청건수

()안은 %

연도 \ 중재부	신청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981	44	37	5	1					1			
1982	50	44	3		1		1	1				
1983	71	61	8		1		1					
1984	54	46	3		1	2	1	1				
1985	59	48	3	2		1	1	1	1		2	
1986	49	38	3				1	3	2		2	
1987	47	42	1	1	1		1		1			
1988	55	41	2	1	3	1		2	3	1	1	
1989	121	78	14	2	8	1	6		3	2	4	3
1990	159	110	12	3	7	3	10	1	5	2	4	2
1991	220	137	20	7	9	5	10	3	3	10	12	4
1992	381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1993	42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1994	541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1995	528	323	27	9	15	23	55	14	16	25	13	8
1996	55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1997	490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1998	602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1999	641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2000	607	378	23	29	28	27	52	14	21	18	15	2
2001	659	428	21	18	32	19	62	9	16	36	17	1
계	6,357 (100)	3,976 (62.5)	326 (5.1)	201 (3.2)	329 (5.2)	198 (3.1)	561 (8.8)	108 (1.8)	187 (2.9)	217 (3.4)	199 (3.1)	48 (0.8)

II.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법원제소 현황 (1심)

()안은 %

연 도	제소건수	인 용	기 각	각 하	화 해	취 하	계 속
1981	4		2		2		
1982	3	2	1				
1983	7	4	2			1	
1984	8		4			4	
1985	12		2		1	9	
1986	2	1				1	
1987	4	1				3	
1988	7	3	1			3	
1989	10	7	1			2	
1990	12	3	2	2	1	4	
1991	6	3	1			2	
1992	33	4	11		3	15	
1993	20	9	2	3	1	5	
1994	30	14	1		2	13	
1995	53	20	14	1	4	14	
1996	30	9	1			20	
1997	10	5	3			2	
1998	22	15	2			5	
1999	31	21		2		8	
2000	8	4	1		1	2	
2001	36	15	8		1	8	4
계	348 (100)	140 (40.2)	59 (17.0)	8 (2.3)	16 (4.6)	121 (34.8)	4 (1.1)

III. 시정권고 현황

연 도	구 분 시정 권고 건수	침 해 유 형								간 별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사회 질서 침해	공중도덕침해		일 간 지	주 간 지 / 주간 신문	월 간 지	통 신
		성폭행 당한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미성년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기 타		향정신성 의약품 용량, 용법공개	기 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	109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계	3,856 (100)	668 (17.3)	127 (3.3)	1,386 (35.9)	649 (16.8)	227 (5.9)	1 (0.1)	774 (20.1)	24 (0.6)	3,694 (95.8)	33 (0.9)	12 (0.3)	117 (3.0)

언론중재와 판결

황 성 재

중재위원 ·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선에서 열매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혜택을 받으려면 조금 성가시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독재의 시대에서는 짧은 기간에 역동적으로 에너지를 결집하여 경제의 수레바퀴를 원하는 방향으로 힘있게 돌아 갈 수 있게 하였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권을 희생해야 했고 부패정치인과 부패관료의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경험했던가.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에 이름과 동시에 - 개발독재로 인하여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이 정말 해결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나 - 인권에 대한 갈망과 사람대접 받는 풍토조성의 총아로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게 되었다. 허나 따지고 보면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굶뎠던 속도이나 하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접하는 일상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절차와 원칙을 지켜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고 억울함을 시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함은 물론 약간의 비용도 드는 것이다.

사람이 물려드는 물건이나 입장표를 사려면 지루하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가장 자기를 위하고 남을 배려하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개발독재의 논리에 의하면 엄청나게 불편한 우회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 논리에 의하면 단번에 저 끝에 있던 사람을 앞 쪽으로 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힘과 사술(詐術)에 의한 새치기는 꼭 필요한 행사요원 내지는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게 필요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등 단숨에 이득을 보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 있게 되어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지만 뒤쳐지는 무수한 사람들은 좌절감과 허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고, 개중에는 금력과 권력과 같은 비정상적인 힘에 의존하거나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는 자가 생기는가 하면 나아가 주먹과 폭력의 세력에 합류하고자 하는 무리도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비이성적인 방법을 용인할 수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뒤범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이러한 위대한 인간의 이성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라는 불멸의 업적을 이루어 내었다. 그 명작을 오늘날 사람들은 잘 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인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 위 작품보다 더 나은 인간지배의 방법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인간들이 욕심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최고의 작품이면서도 그 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일상생활에

서 무수히 많은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구제가 실제 재판을 통해 실현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법부에서는 그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속된 말로 엔간히 집요한 사람 아니고는 엄두도 못낼 일이다. 본인이 법적 구제의 최일선인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사재판의 경우를 보건대 특별히 유별난 사람이 아니고는 몇십만원 손해본 일에 선뜻 재판에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그 이상의 손해를 보았거나 보았다고 느껴져야 재판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소장을 내게 된다.

국가에서 아무리 변호사 없는 재판에 대하여도 친절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재판에서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니 당사자는 자기가 따로 법률공부라도 하지 않는 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뿐 아니라 변호사만 선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재판이 왜 그렇게 오래 끄는지 돈받고 억울한 일 고치는 것도 지치고 지쳐서 거의 포기하는 심정이 되어 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판사들은 놀고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늘 기록과 씨름하면서 읽고 또 읽고 있다. 결론이 쉽게 나면 다행이지만 결론이 잘 안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읽어야만 한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기까지 20년 가까운 기간 법관생활을 하면서 정말 읽고 또 읽었다. 성격이 치밀한 사람이면 토씨까지 읽으니 눈이 아플 지경일 것이고, 다소 편안한 성격의 사람으로서 요령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읽지 않고는 판결을 쓰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본인이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러한 읽고 또 읽기가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제 본인 나이 50이 되기까지 읽고 써 왔던 판결작성의 작업이 언제 마감될 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친다.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최일선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소명을 하느라 온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보람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법관 생활을 하면 여러 국가기관 중 정치적 색채가 없고 중립적인 기관에 점적을 하게 된다. 본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촉된 것이 1999년 10월경이니 벌써 2년 6개월이 흘렀다. 힘이 좀 빠져서 그런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기록을 보노라면 머리가 멍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언론중재사건을 처리하러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 전에 읽던 것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 빠질 시간만큼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도 지루하지 않게 더욱 정력적으로 일

언론중재 절차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짧은 기간에 높은 중재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을 하게 되었고, 의욕의 증진에 맞추어 몸도 따라주어 어느새 하던 일을 마무리한 다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소속 승용차를 타고 차창 밖으로 근무시간 중의 서울풍경을 감상하면서 피곤함을 없애 버리던 적이 어찌 한 두 번이었던가.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언론계나 학계에서 상당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기쁨 외에도 그 분들 도움으로 쉽게 언론중재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인상에 남는다. 법원에서조차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그것은 판결이라는 위압적인 지침이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조정 내지는 화해가 가능할 수 있음에 반하여, 언론중재는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도 상당한 성과(지난 2001년도 언론중재를 통한 피해구제율이 62% 정도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언론중재위원들의 탁월한 능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건대, 먼저 앞서 언급한 재판을 통한 법적 구제가 인간이 고안한 가장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기까지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 비용 및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웬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재판 걸기가 쉽지 않으나 언론중재는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에 중재성공률 62%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언론의 중요성은 다언(多言)을 요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만큼 정확치 않은 보도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독자들의 구미에 맞추려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 그 과정에 개인적인 법익 침해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경우 언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의 하나라고 여기게 되기까지 이르렀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활동의 홍보에 늘 힘을 쏟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중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번이나 금강산 답사여행을 다녀온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중재위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해외여행을 거의 하지 못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눈보라 치는 겨울 개골산과 찌는 복더위 속에서도 시원했던 여름 봉래산의 절경이 장관이었음은 그 다음의 일이다.

언론중재부장으로 비슷한 시기에 봉직하였던 동료 판사들은 고등법원 영전 등으로 많이들 짧은 기간 근무를 마친 것으로 기억하나 나는 이런 저런 이유로 꽤 장기간 중재부장으로 봉직하게 되었다. 어떤 점에서든 미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길지는 않을 것이나 앞으로 언론중재위원으로 근무하는 한 직무에 충실할 것이고, 소중한 검직으로 기억할 것이며, 다른 언론중재위원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총장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한 고마움을 길이 간직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

통신사 기사를 전제한 신문사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로스’ 의혹사건으로 살인죄 혐의가 추궁되었던 三浦和義 씨가 共同通信의 송고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共同通信과 통신기사를 게재한 신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19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2002년 1월 29일, 통신사 기사를 게재한 매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통신기사전재의 항변(配信サービスの抗弁)”을 인정한 3건의 2심 판결을 파기, 도쿄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다른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비롯한, 원고의 주장은 19건 중 17건이 받아들여졌다.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이 쟁점이 되었던 소송은 共同통신사, 데일리스포츠사, 일간스포츠신문사 등이 당사자가 되었던 9건(스포츠닛뿐 신문 도쿄본사 단독의 1건을 포함하여)으로 2심인 도쿄고등법원은 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을 인정했었다.

金谷利廣 재판장은 “일본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보도에 있어서 통신사의 송신기사를 포함하여, 보도가 과열된 나머지 취재에서 신중성이 결여된 진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가 간혹 보이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송고받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의 진실성면에서 높은 신뢰성이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 “사인의 범죄나 ‘스캔들’에 관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통신사 송고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인의 범죄·‘스캔들’보도 이외의 분야의 기사에서는) ‘통신기사전재의 항변’ 법리를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인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보도분야에서도 사정에 따라서는 그 통신사 송고기사에 근거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에도 일정한 이해를 표시했다.

시효의 기산일이 문제가 된 소송은 共同통신사와 下野신문사가 피상고인이 된 소송 등 모두 4건. 이 가운데 3건에 대하여 2심인 도쿄고등법원은 민법724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약간의 노력으로 손해가 해자를 용이하게 인식해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인정, 원고가 송고기사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제소할 때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시효의 기산일을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으로 해석해야만 한다”고 판단, 원고측이 패소한 2심 판결 3건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밖에 7건에서는 기사내용의 진실성 등이 쟁점이었다.

北海道신문사가 共同통신사를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상고한 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도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2심에서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진실성은 기사게재 당시에 존재했던 자료에 근거하여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 기사게재 후에 원고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은 기사의 진실

성 입증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北海道신문사측이 패소했었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재판소는 기사의 진실성을, 구두변론 종결시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명예훼손행위의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를 고려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전처의 증언에 근거하여, 원고가 대마(大麻)를 소지한 의혹을 보도한 共同통신의 1985년 9월의 송고기사가 문제가 된 소송에서는 共同통신사가 승소의 2심판결을 파기,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동사 기자는 원고의 전처의 증언을 수사당국에서의 취재에서 입수했다고 했으나 최고재판소는 “기자가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전처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뿐이며 결국은 전처의 진술 이외에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에 관한 상고심 판결요지

민사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판례이다.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본건 송고기사와 같이 사회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혹은 이와 관련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분야의 보도에 있어서는, 통신사의 송고기사를 포함하여 보도가

과열되는 탓에, 취재에 신중함이 결여된 진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가 간혹 발견된다.

취재를 위한 인적 물적 체제가 정비되어, 일반적으로는 그 보도내용에 일정한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통신사 송고기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당해 송고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높은 신뢰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 기사가 위에서와 같은 보도분야의 것이고,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게재기사가 통신사의 송고기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당해 송고기사에 적시된 사실에 확실한 자료와 근거가 있다고 받아들여 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그 밖의 보도분야의 기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보도분야의 기사에서는 그러한 법리를 적용 받기 위한, 송고기사의 신뢰성에 관한 정평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통신사의 송고기사가 사인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보도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여하에 따라서는 송고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共同통신사의 경우 본건 송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신문사들의 불법행위를 부정할 수 있

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신문사들이 본건 송고기사에 근거하여 본건 각 기사를 게재하여 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없다. (『新聞協會報』, 2002년 2월 5일) □

일본신문협회, 비판여론이 팽배한 '집단적 과열취재'에 대한 견해 발표

최근 일본에서는 사건·사고 때 볼 수 있는 집중호우형의 '집단적 과열취재'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는 언론매체가 자주적으로 대응, 해결해 가는 것이 보도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응하게 된다는 인식아래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2001년 12월 6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신문협회의 견해〉

'집단적 과열취재'란 "대형 사건, 사고의 당사자나 그 관련자에게 다수의 언론매체가 쇄도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관련자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혹은 그 밖의 지대한 고통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게 하는 취재"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피해자, 용의자, 피고인과 그 가족이나 주변주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집단적 취재에 의해 한층 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집단적 과열취재'는 소수 언론에 의한 취재일 경우 일탈된 취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수의 언론매체가 모여들게 됨으로써 부적절한 취재방법이 되는 것이다. 특히 사건·사고의 발생 직후에 일어나기 쉬운데 초기단계에서의 규제는 용이하지 않다.

때문에 취재현장을 필요이상으로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모든 취재기자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점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당사자나 관계자를 집단적으로 억지 포위한 상태에서의 취재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대방이 초등학교생이나 유아인 경우는 취재방법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② 장례식이나 시신 운구 등을 취재할 경우 유족이나 관계자의 심정을 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복장, 태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주택가나 학교, 병원 등 평온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취재는, 취재차량의 주차방법을 포함하여 근처의 교통이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불행하게도 '집단적 과열취재'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도기관은 지혜를 모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해결책을 협의할 조정기능을 갖춘 조직을 미디어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조정은 일차적으로는 현장차원에서 시도하고, 각 현장 기자 등으로 조직된 기자클럽이나 각사의 그 지역 취재책임자로 구성된 지국장회 등이 그 역할을 맡도록 한다. 해결책으로는 각사의 취재인원 억제, 취재장소·시간의 제한, 질문자를 제한한 공동취재, 나아가서는 대표취재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현장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차원에서도 조정기능이나 일정한 권한을 가진 각사의 횡적 조직을 신문협회

편집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집단적 과열취재’의 피해방지는 각종 언론의 일치된 행동 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신문협회로서는 방송·잡지 등 신문 이외의 언론단체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

한편 집단적 취재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공인 혹은 공공성이 높은 인물로, 공공성이 있는 취재 내용인 경우에는 일반사인의 경우와 구별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견해를 재평가하여 ‘집단적 과열취재’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각 취재현장에 있어서도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협회견해’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新聞研究』, 2002년 1월호)



독일언론평의회, 보도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내용 담은 새로운 보도강령 채택

독일언론평의회는 2001년 11월 27일 ‘신문·잡지가 보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한 ‘신보도강령’을 마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해, 독일에서는 공적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보도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2001년 5월 정부와 언론사간에 합의했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앞으로 종래의 보도내용에 관한 불만처리와 함께 신문·잡지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불만도 함께 처리한다.

독일정부는 당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임명한 감독관을 신문사내에 배치하여 정보관리상황을 점검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와 관계단체는 협의를 거듭한 끝에 언론평의회를 이용한 자율규제에 합의했다.

새로운 보도강령은 “언론매체는 조사와 보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개인의 생활과 정보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보도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보도의 근거가 된 데이터베이스에 관해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언론평의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불만에 관해서는, 보도상의 문제를 취급해 온 지금까지의 위원회와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응하기로 했으며 또 2년마다 보도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보고를 공개하기로 했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신문발행인협회, 잡지발행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동자조합으로 구성되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등 보도내용에 관한 불만처리를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新聞協會報』, 2001. 12. 18)



Wakeham 영국 PCC 위원장, 엔론 파문 관련 일시 사임

영국 PCC 위원장인 Wakeham경이 미국 에너지 전문 기업 엔론(Enron)사 파문과 연루되어 지난 1월 31일 PCC 위원장직을 일시적으로 사임했다.

엔론사의 비상임 이사로 있었던 Wakeham PCC 위원장은 엔론사 파산과 관련하여 조사

를 받을 때까지 PCC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지 말 것을 정치권과 언론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내각에서 에너지장관을 지낸 Wakeham PCC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년간 PCC 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여론의 시선을 받을 경우 개인과 기관에게 가해질 수 있는 타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Wakeham 위원장은 “언론사 파산 이후 법률적 이유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인터뷰에 응할 수 없었다”며 “이같은 입장이 PCC 위원장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는 PCC에서 이룬 모든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PCC가 단기적인 추측에 의해 타격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언론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고 평가를 받을 때까지 위원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있는 것은 명예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Wakeham 위원장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더 이상은 발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PCC를 세간의 추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Press Gazette, 2002. 1. 31.)



영국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된 법원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가 정부나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획득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자율규제를 둘러싼 법원과의 대결에서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PCC의 사생

활보호 위원인 Robert Pinker 교수는 지적했다.

한 언론법 세미나에서 Pinker 교수는 지난 10년간 영국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협하는 요인의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강연했다. 한때는 신문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정 움직임이 위협적이었으나 지금은 유명인사가 인권법(Human Rights Act)에 의거 사생활 침해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향이 자율규제의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에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배적이었고, 정부와 신문업계간의 관계도 극도로 대립되었다. 또한 그 시기 대부분의 시간은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협하는 법령 제정의 위험성에 시달리며 흘러갔다고 Pinker 교수는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자율규제의 장래를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이 대두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통제 대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인권법 제정으로 인한 새로운 상황은 법률적 마찰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율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매체의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나 법원을 통한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다.

한편 Westmorland Gazette지 Mike Glover편집장은 지역신문이 범죄보도와 사건·사고보도를 비롯한 지역 뉴스를 보도하는데 있어 인권법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Glover편집장은 유명 축구선수의 불륜을 기사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전국지의 행태가 대중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름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는 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영역을 넓혀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전국지의 행태로 인해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Proudlar 변호사는 앞으로 신문사는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웹사이트의 기사로 인해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불만이 제기되는 즉시 웹상의 기사를 자진 삭제할 것을 충고한다.

(Press Gazette, 2001, 11, 30.)

□

영국 법원,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고액 배상 경향

2001년 총선거일에 Daily Star지는 독자들이 무언가 흥미로운 기사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틀간에 걸쳐 게재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영화배우인 Amanda Holden과 코메디언이자 쇼프로 진행자인 그의 남편 Les Dennis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두 사람 모두 유명 인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 신문은 보도 직전에 있었던 연예 행사장에 멋진 옷차림으로 등장한 두 사람의 도착 장면보다 Tuscany에 소재한 그들의 별장에서 Holden이 토폴리스 차림으로 일광욕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표지와 속기사에 보도했다. Holden은 자신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가슴선이 노출된 드레스를 입은 사진은 예상하였겠지만 수영장에서의 노출은 전혀 예견치 못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 사진으로 인해 몹시 불쾌감을 가졌다. 그런데 두 사람의 변호인은 신문사가 첫 보도일 다음날에 보다 충격적인 사진을 게재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보도실천강령을 집행하는 PCC에 불만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PCC는 더 이상의 사진 공표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더 이상의 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얻고자 했다.

Daily Star지는 별장의 정원은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보이며 망원렌즈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 아닌 만큼 사진의 공표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규에 의하면 사적 장소에 있는 피촬영자를 사전 동의 없이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성탄절 바로 전일, Daily Star지는 불법행위 인정 없이 손해배상금 4만 파운드와 소송비용 그리고 사과문까지 게재해야만 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사건에서도 이번 사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편집자는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4만 파운드의 금액은 변호사나 언론인에게 상당한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는 그리 동요할 만한 액수가 아니다. 법적으로 4만 파운드의 금액은 악의 없는 사고로 눈이나 다리를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액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리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이 그 자체를 잃은 것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면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사항과 관련되나 프라이버시는 비밀을 유지하고 싶은 사실의 폭로와 관련된다. 법원 판사들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오랜 기간 힘써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액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인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험가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Press Gazette, 2002, 1, 25.)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실관계 등의 권익을 위해
공표가 가능하다고
판정 인용할 때는
가주신 가장 통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중개수수료 덤핑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김 부 원)

피신청인 : 한국주택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2. 1. 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주택신문 : 『노원구 '제2단체' 회원업소 수수
료 50% 할인 '과문'』 제하의 기
사 (2001년 12월 26일자 3면)

내 용 : 최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이하
제2단체)에 가입한 서울 노원구 지역의 4~5
개 중개업소들이 "법정 중개수수료의 50%를
할인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 배포 및 현수막
을 게시하는 등 변칙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어
중개업계 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너 죽고 나 살자"식 수수료
덤핑으로 중개거래질서문란을 주도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업계 내 제2단체인 대한공인중
개사협회 주요 임원이며, 또 이들은 소속협회
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
고 있어 업계 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문제의 이들 전단지 내용을 보면 "IMF 고
통분담 차원에서 현행법정수수료의 요율을 완
전히 무시하고 매매는 0.25%, 전세 등 임대차
는 0.2%의 턱없이 낮은 요율을 받겠다"는 것
이다. (중략)

아울러 '중개수수료 할인'을 내걸며 이들
업소로의 고객유치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은
오히려 여타 다른 중개업소가 마치 중개수수
료를 폭리하고 있는 양 국민적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이들 제2단체 노원지역 일부 회직자들
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전국의 중개업자들은
"이는 전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포기·공멸
을 조장하며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라며 격앙된 심기를 드러내기
도 했다.

특히 이러한 파격할인을 앞세워 업소광고에
열을리고 있는 중개업소들의 대표들이 제2단
체의 주요 임원임에 따라 그들의 주장처럼 과

연 제2단체가 “공인중개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인 노원구 지역의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소속 회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업계 공멸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도 문제의 전단지를 입수,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중개업계 내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주택신문 2001. 12. 26.자 3면 『노원구 ‘제2단체’ 회원업소 수수료 50% 할인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을 근거로 하여 1999년 11월 27일 건설교통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은 20,000여 명이고 전국 시·도에 16부지를 두고 있다.

피신청인 한국주택신문은 부동산전문지로서 주간이며 주된 독자층은 약 4만5천여 중개업자로 이 중에는 3만여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포함되어 있고, 유가지로 판매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지역(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청인의 소속단체 회원 중 8명이 중개수수료를 50%할인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사건발단의 배경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신청인이 이를 묵인하고 있어 업계 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허위보도를 하는가 하면 “제2단체가 공인중개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여 신청인을 음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는 등기된 공식명칭이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라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중개인 중심의 단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의도적으로 폄하시키고자 제2단체라는 불쾌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지역에서는 신청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한국부동산정보통신이라는 기존의 중개업자의 조직단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을 펼치는 회사가 자신의 단체나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무기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 내지 횡포를 부리고 있어도 이 사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에 따르지 않으면 중개업을 영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 사건 지역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지만 이러한 부당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청인 협회의 회원 8명이 공인중개사로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자, 신청외 단체와 회사는 이를 이유로 다른 회원들과의 물건정보교류 및 공동중개를 봉쇄하는 등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을 가하여 완전 고립시켜 생계를 위협당할 정도로 어렵게 된 상태이다.

이에 대항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으로 중개수수료를 주택의 매매나 전월세에 대하여 50%할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사전에

신청인에 대하여 협의나 사전통지 등이 전혀 없었던 일로 신청인과는 무관하다. 신청인은 사후에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의 행위가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강력한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원회 등이 신청인 협회의 이사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청인이 묵인하거나 방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결탁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회원들에 대하여 신청인을 오도하도록 하는 허위보도를 하였으며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잃고 한쪽에만 편중되어 신청외 기존단체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대변하는 고정지면을 할당하는 등 불공정 보도를 하였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은 회원들로부터 장차 회원이 될 12만 공인중개사들에게 신청인 협회의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입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2001년 12월 26일자 3면에 “노원구 ‘제2단체’ 회원업소 수수료 50% 할인 ‘과문’”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한 중개업소 회원들이 협회의 묵인아래 중개수수료 덤핑행위를 일삼아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격할인을 앞세워 업소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개업소들의 대표들이 제2단체의 주요 임

원임에 따라 그들의 주장처럼 과연 제2단체가 공인중개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원 중 4~5명이 중개수수료를 할인한 것은 서울시 노원지역에서 한국부동산정보통신이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이들을 배제시킴으로 인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되자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부동산정보망이용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의 행위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는 무관한 것이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바가 전혀 없고 강력한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부동산중개업계에 제2단체라는 명칭의 단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공식명칭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1년 12월 26일자 3면 『노원구 ‘제2단체’ 회원업소 수수료 50% 할인 ‘과문’』 제하의 기사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한 중개업소 회원들이 협회의 묵인하에 중개수수료 덤핑행위를 일삼아 중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제2단체가 공인중개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노원 지역 회원 4~5명이 중개수수료를 할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한국부동산정보통신이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이들 회원을 배제시켜 영업이 곤란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

의 행위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는 무관하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2단계'의 정식명칭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의 취지가 포함된 내용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주택신문 2002년 1월 30일자 3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반론보도문)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노원구지역 중개업자...)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주택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1월 30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독일제 착유기의 A/S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1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김 종 무 외 12인

피신청인 : 축산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2. 1.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축산신문 : 『농진청, 현장조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01년 12월 22일자 4면)

내 용 : 웨스트파리아 착유기 이용 농가들 사이에 A/S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쇄도함과 관련, 농촌진흥청이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현장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종합민원실 축산분야 위원 황성중 박사는 “독일제 착유기 웨스트파리아를 이용하는 낙농가들 중 A/S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농가가 3백50여 농가에 달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평택에 야곱목장(대표 최옥연)을 비롯 보령 장현목장(대표 김원동), 서산 김복환 씨등 피해사례가 아주 심각한 목장만 해도 수십 농가에 달할 정도”라고 밝혔다.

서산에서 젖소 60여 두를 사육 중인 김복환 씨는 “조·석으로 매일 착유해야 하는 착유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젖소유방염 등으로 목장경영은 쇠퇴하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착유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웨스트파리아 한국대리점에 A/S를 요청했는데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해 목장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독일 웨스트파리아 한국 총대리점으로 착유기 및 부품을 독점 수입, 설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축산신문 2001년 12월 22일자 “농진청, 현장조사에 나서”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한다.

농진청에 질의한 바 농진청에서는 본사의 기계사용 농가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는 회신공문을 받았

다. 농진청 공문에 의거 상기 보도가 허위보도임이 확인되었고, 농업진흥청에서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축산신문에 통보하였다.

또한 농진청 공문에 의하면 황석중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 기자는 황석중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줄 알면서도 교묘히 황석중의 직책을 이용하여 마치 농진청의 공식적인 행위인 양 허위보도하였다.

축산신문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본사에 확인 취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사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일방적인 허위, 편파보도를 하였다.

신청인은 축산신문의 허위보도로 인한 심각한 피해(계약파기, 신규상담중지, 수금지연 등등)가 발생되고 있어 본사와 대리점들의 생존차원에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보 2001년 12월 21일자 보도 “웨스트파리아 착유기 A/S 안된다” 민원쇄도”에 대하여 바로잡습니다.

1. 농진청, 현장조사에 나서 제목 기사에 대하여

농진청 회신공문에 의하면 농진청에서는 진상조사 나선 바 없습니다.

2. 농진청 종합민원실 축산분야위원 황석중에 대하여

보도내용 중 황석중은 농진청 공무원신분이 아니며 촉탁 일당직으로 출근시 ₩30,000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농진청에서는 황석중에게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황석중을 파면시켰습니다.

축산신문은 본의 아니게 웨스트파리아 착유

기계 한국본사(세사미)와 각 지역 대리점 및 소비자 여러분들께 상기와 같이 잘못된 보도를 정정보도 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웨스트파리아 착유기 A/S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2001년 12월 21일자 5면 “웨스트파리아 착유기 A/S 안된다” 보도 관련, 농진청은 진상조사에 나선 바 없고 소비자 피해사태가 접수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웨스트파리아 착유기 한국본사(세사미)가 농진청에 확인 요청하고, 이에 농진청이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농진청은 웨스트파리아 착유기 A/S와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공문은 또 “황석중은 농진청 공무원 신분이 아닌, 촉탁 일당직”이라며 민간인 신분이라고 확인하고 또 “농진청에서는 황석중에게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웨스트파리아 착유기 한국본사(세사미)는 “웨스트파리아 착유기 A/S에 관한 어떠한 불만 사항도 농가들로부터 (세사미에) 접수된 바 없고, A/S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축산신문 2002년 2월 1일자 4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웨스트파리아 착유기 A/S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웨스트파리아 착유기 A/S 안된다” 민원쇄도)과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축산신문 : 『웨스트 파리아 착유기 A/S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2월 1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조합이 농민이 개발한 쌀 피자 제조법을 가로채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송탄농협동조합 (조합장 문 창 호)

피신청인 : 한국농어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2. 1.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농어민신문 : 『농민이 개발한 ‘쌀 피자 제조
방법’ 농협이 가로채 ‘물의’』
제하의 기사 (2002년 1월 17일
자 2면)

내 용 : 농민이 개발한 쌀 피자 제조
방법을 농협이 중간에서 가로채 특허권까지
획득,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개발농가가 최근 쌀 피자점을 운영하
려 하자 특허권자인 농협은 사용승낙(전용실
시권)을 해주는 조건으로 판매 매출액의 3%
를 농협에 납부토록 하는 계약서까지 작성케
해 농가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정인순(41·평택시 진위면 마산리)씨는 93
년부터 개발을 추진, 95년 쌀 피자 제조에 성

공한 후 농촌생활개선회와 농가주부모임 등과
공동개발을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부 시
장 등에 보급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변리사를 통해 정씨의
아이템을 가로채 해당지역 송탄농협과 공모해
97년 특허출원, 99년 9월 송탄농협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또 정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시 서정동에 쌀
피자 전문점 ‘라이보리’를 개점하려 하자 송
탄농협은 특허권자를 주장, 정씨에게 전용실
시권(사용승낙) 허가조건으로 판매대금의 3%
를 수수료로 연2회 농협에 납부토록 하는 계
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정씨는 “농민이 개발한 소중한 재산을 협의
도 없이 농협에 빼앗겨 권리행사는 커녕 오히
려 농협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남아도
는 쌀을 쌀 피자를 통해 해결하려 했는데 이
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송탄농협측은 “정씨와 사전 협의
를 통해 특허출원을 한 것이며 특허권은 당연
히 농협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송탄농협으로서 한국농어
민신문 2002년 1월 17일자 2면 “농민이 개발
한 쌀 피자 제조방법 농협이 가로채 물의” 제
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을 한다.

“농민이 개발한 쌀 피자 제조방법을 농협이
중간에서 가로채 특허권까지 획득, 물의를 빚
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사실은 정인순(농민)이 97년도 당시 송
탄농협(이하 “농협”)의 부녀협동조직인 젊은
농가주부모임(이하 농가모임)의 회장을 역임
하면서 아이디어 상품으로 쌀 피자를 소개하
여, 농협에서는 정인순의 아이디어를 높이 평

가하여 농가모임의 공동 소득사업으로 연결해 개발비 및 홍보, 기타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정인순 역시 아무 욕심없이 공동소득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정인순이 개발한 쌀 피자의 제조방법을 제출받아 출원자 송탄농협, 발명자 정인순으로 97년 9월 8일에 아시아나 특허법률 사무소(서울소재)에 특허출원을 하여 농가모임의 공동사업으로 쌀피자 판매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또한, “특허 개발농가가 최근 쌀 피자점을 운영하려 하자 특허권자인 농협은 사용승낙(전용실시권)을 해주는 조건으로 판매 매출액의 3%를 농협에 납부토록 하는 계약서까지 작성케 해 농가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2001. 6월경 정인순이 당 조합에 내방하여 쌀 피자 제품을 상품화하여 개발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구상과 특허 사용권 이전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을 사전에 변리사를 통해 파악하여 제시하였으며, 본인의 요구내용 그대로 승낙 수용해주었으므로, 2001년 6월 22일 작성된 계약서는 정인순과 농협에서 협의된 사안으로 농협에서는 정인순의 쌀 피자점 운영을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쌍방간의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서로가 확인 작성했고 위에서 언급된 판매매출액의 3%는 농협 1.8%, 농가모임 1.2%로 쌍방이 협의한 사항이다.

또한, 송탄농협에서는 당시의 농가모임 회장인 정인순의 쌀 피자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여 농가모임의 공동소득 사업으로 적극육성 지원(판매지원, 자금지원 등) 했고, 특허출원 이후 정인순은 매주 금요일 농협 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쌀 피자 직판코너를 지원받아 계속하여 쌀 피자를 판매했으나, 농가모임에 공동사업 소득분배를 전혀 나누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판매장을 운

영하는 문제로 농가모임과 불화가 발생하는 등 쌀 피자운영에 대하여 농가모임의 공동소득사업 취지와 농협의 사업지원 목적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취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한국농어민신문)가 2002년 1월 17일자 2면 종합보도면에 『농민이 개발한 쌀피자 제조방법을 농협이 가로채 물의를 빚고 특허권 취득후 수수료 납부 요구까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농협(송탄농협과 농협중앙회)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인즉 농협은 부녀협동조직인 농가주부모임의 공동소득 개발사업으로 쌀피자를 97년 지역특색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97년 9월 4일자 농협 담당직원과 당시 농가주부모임 연합회장인 정인순과 특허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특허를 신청하여 농가모임의 공동소득 개발사업으로 쌀피자 판매사업을 적극 홍보 지원하였으며, 수수료 배분 문제도 정인순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한 것으로 밝혀져 본지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하여 송탄농협을 비롯한 계통사무소의 이미지 실추 등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에 사과를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1월 17일자 2면 『농협이 가로채 ‘물의’』 기사에서 농민 정모 씨가 개발한 ‘쌀 피자 제조방법’을 농협이 중간에서 가로채 특허권까지 획득하고, 오히려 ‘쌀 피자 전문점’을 개점하려던 정씨에게 사용승낙 허가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탄농협(조합장 문창호)은 “97년 당시 농가주부모임의 회장이던 정씨의 ‘쌀 피자’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해 농가모임의 공동소득사업으로 선정,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정씨와 협의하에 특허권자를 송탄농협으로 발명자를 정씨로 하는 특허를 출원했던 것이므로 ‘가로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하는 계약도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농어민신문」 2002년 2월 7일자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신청인은 본 건 중재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더 이상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농어민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2월 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맹물로 하는 코청소법이 감기예방 비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김 희 남)외 1개 단체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2. 1. 2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MBC-TV :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
(2001년 12월 30일 18:10)

내 용 : ▷양미라 : 송년특집 2001 건강보감 베스트!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은 가장 재미있고, 가장 유익했던 알짜배기 건강 정보와 MC들의 활약상을 모았습니다. (중략)

다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던 건강정보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생활건강정보 베스트를 모아 보았습니다.

자막 : 감기 예방 세 가지 방법

콧속 물 세척법

▷양미라 : 코 청소법 정말 많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코 청소법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 : 코 청소법 1단계

코로 물을 들이마시고 내뿜기를 5회 반복하여 코를 세척한다.

▷김소형 한의사 : 코로 흡(손을 모아 흉내를 내며)해서 이 코끝까지만 갈 정도로 해서 다시 뿜어내고 하기를 5번을 반복하세요.

-조형기가 손에 물을 따르고 시범을 보인다.

▷김용만 : 코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갔다 다시 뿜어요.

▷김소형 한의사 : 그 다음에 이렇게 코를 통해서 목으로 마시는 거거든요.

자막 : 코 청소법 2단계

세척한 코로 물을 들이마신다.

▷김소형 한의사 : 이렇게 되면 코의 점막

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코가 건강해 지거든요.

자막 : 코 점막층을 강화시켜 가벼운 코질환의 60%를 치유한다.

▷이경규 : 자 하세요! 꼭 참고. 몸에 좋고 그러는데.

▷김용만 : 코가 시원해지잖아요.

-조형기가 사발의 물을 코로 들이마신다.

▷양미라 : 아까 보단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김용만 : 지금 드시기 시작합니다.

▷이경규 : 근데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김용만 : 좀 많이 드시는 것 같네요.

그만 드세요. 이제 (중략)

▷김소형 한의사 :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경규 : 아~ 좋아요.

▷김소형 한의사 : 굉장히 시원하시죠?

자막 : 하루에 아침 저녁 5번 반복.

▷김소형 한의사 : 이것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번만 반복을 하시면 코가 굉장히 건강해 지실 수 있어요.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민국의 개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의 단체인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로서 의사의 임무인 의료와 보건 지도에 지장을 준 2001년 12월 30일 오후 6시 10분부터 7시 40분까지 MBC-TV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 중 “건강보감”에 대해서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상기 시간에 한의사인 김소형 씨의 지도하에 코미디언 이경규 씨와 TV 텔런트 조형기 씨 및 김보성 씨가 시원한 물을

코로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로부터 지난해에 가장 호응이 높았던 감기에방법을 다시 소개하는 오락프로그램을 연말 특집으로 편성하여 방영했다.

자막에는 이렇게 물로 하는 코 청소법이 감기에방의 비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위 한의사는 코가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이를 날마다 다섯 번 따라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물을 코로 들여 마시면 코의 섬모운동에 지장을 주어 코의 정상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원한(체온보다 낮은) 물이 코에 들어가면 낮은 온도에 의해서 코 점막의 과민성이 증대되어 비염 및 부비동염(축농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폐기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물을 코로 목까지 들이마시는 행동을 어린이가 따라하다가 마신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경고나 주의 없이 위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신청인의 질문에 대하여 위 한의사는 “물이라고 자막 처리된 것은 생리 식염수를 의미했다”고 하였으나, 방송의 대상인 일반대중은 “물”이라는 자막을 보고 이것이 생리식염수를 의미하리라고는 당연히 상상하지 못한다.

위 한의사 자신도 오해의 소지를 인정했고 이미 나간 방송이 의학적 논쟁의 여지가 “유보”되어 있는 민간요법임을 강조하여 방송에 임하였지만 MBC의 편집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문제의 시원한 물로 하는 코 청소법의 위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고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체온과 같은 섭씨 37도의 생리식염수

와 같은 등장성용액으로 코 세척을 해야 한다고 지도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들과 국민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상기 프로그램을 보고 맹물로 코세척을 따라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무책임하게 코질환의 60%가 치료된다는 불확실한 자가치료를 믿게 만든 프로그램을 두 번이라 방영을 해놓고도 MBC-TV는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청을 그대로 수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코세척 방법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 분량만큼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자문을 받아 방영해 주기를 바라며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2001년 11월 4일과 2001년 12월 30일에 연말 특집으로 재방영된 “물로 하는 코 청소”는 코 점막을 손상시켜 비염이나 축농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생수의 차가운 온도 자체가 콧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이염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소아에게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잘못된 의학지식을 염려하는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의 정정보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제공하는 검증된 코세척 방법은 물이 아니라 섭씨 37도의 생리식염수(0.9%)로 코를 세척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힙니다. 국민의학지식의 향상을 위하여 향후 방송에서는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합의사항

• 본 문 : 이전에 이 코너를 통해 소개되었던 “물로 하는 코 청소”는 코 점막을 손상시켜 비염이나 축농증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물이 차가울 경우 콧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 위험이 높다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청소법에 사용한 물은 섭씨 37도의 생리식염수(0.9%)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3월 3일까지 MBC-TV 『일요일밤에』 프로그램 「건강보감」코너 중 출연자들 인사 직후 방송하되, 본문을 전문MC(양미라)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본문전체를 화면하단에 흐르는 자막으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
(2002년 3월 4일 18: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취업문제에 관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문 영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2. 2.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일보 : 『“매번 서류심사서 탈락 대부분 취업 포기 상태”』 제하의 기사 (2002년 1월 4일자 30면)

내 용 : “벌써부터 설날이 걱정돼요. 친척들에게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까봐요”

다음달 졸업하는 충북대 심리학과 4년 이문영(24·여·사진)씨는 ‘지방대 비인기학과생에게 취업은 언감생심’이라던 선배들의 경험담을 비로소 절감하고 있다. 이씨가 2학기 들어 취업원서를 낸 것은 모두 20여 차례. 그러나 매번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면접까지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는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는 다급한 마음에 닥치는대로 원서를 써서 몇 번 지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중략)

97학번인 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졸업해야 했다. 그러나 취업재수가 무서워 3학년때 1년간 휴학. 졸업이 늦어졌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과 동료들 중 절반 이상이 이씨처럼 억지로 졸업을 늦췄다.

“휴학 기간 죽도록 취업준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대부분 동네 독서실에 처박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어요.” 그는 “택시를 몰거나 막노동 판에서 일하는 남자 선배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지방대생들의 소외가 뿌리깊은 ‘학력지상주의’에서 비롯됐다고들 떠드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한건가요?” 그는 자신과 이 사회가 점점 더 야속하고 미워지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문영이다. 한국일보 2002년 1월 4일자 사회면 “‘매번 서류 심사서 탈락 대부분 포기상태’ 충북대 4년 이문영 씨의 한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이 위 보도에서 작성한 기사 내용 (“벌써부터 설날이 걱정돼요. 친척들에게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하겠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까봐요”, 97학번인 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에 졸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취업재수가 무서워 3학년때 1년간 휴학. 졸업이 늦어졌다. “휴학기간 죽도록 취업준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대부분 동네 독서실에 처박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어요.” 그는 “택시를 몰거나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남자 선배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은 신청인이 직접 얘기하고 경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그 보도는 전부 신청인이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저기서 들은 말을 짜깁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인터뷰 도중에도 기자에게 확실하게 말했는데 1년간 휴학을 한 이유는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몸담고 있는 영상문화단체의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였다고 분명히 말했다. 따라서 휴학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죽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다. 그리고 사진 촬영 과정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 기자는 사진이 신문 지면에 실릴 가능성은 전혀 없고, 단지 본사에 보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름과 학교도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고, 알파벳 약자로 들어가게 될 것이

다라고 했는데 약속 사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친척들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원치 않는 동정을 받았다. 또한 이 기사로 인해 초상권 및 인권 침해를 당했으며 건강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한국일보)가 지난 1월 4일자 사회면에 “‘매번 서류 심사서 탈락 대부분 포기상태’ 충북대 4년 이문영 씨의 한숨”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벌써부터 설날이 걱정되요. 친척들에게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하겠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까요”, “97학번인 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에 졸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취업 재수가 무서워 3학년때 1년간 휴학, 졸업이 늦어졌다.”, “‘휴학기간 죽도록 취업준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대부분 동네 독서실에 처박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어요.’ 그는 ‘택시를 몰거나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남자 선배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문영 씨는 그러한 사실을 인터뷰한 적이 없으며 기자의 개인적

인 생각과 추측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1월 4일자 30면 충북대 이문영 양의 취업관련 인터뷰 기사 중 “친척들에게 대학원에 가겠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라고 이야기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1년간 휴학, 졸업이 늦어졌다”는 내용은 이양의 발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오피니언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2년 2월 16일 이내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2년 2월 9일자 2면)

내 용 : 1월 4일자 30면 충북대 이문영 양의 취업관련 인터뷰기사 중 “친척들에게 대학원에 가겠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까요”, “취업준비를 위해 1년간 휴학, 졸업이 늦어졌다”는 등의 내용은 이양의 발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검찰이 축소수사했다고 입힐 우려가 있는
일부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적절하지만
전제사실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의견이라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2. 2. 7.자 판결 (2000나31320)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002년 2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김태현 부장검사 및 9인의 검사가 한겨레신문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중 원고들이 고의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어 축소수사를 하였다고 입힐 우려가 있는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보아 잘못된 의견이라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들의 의견표명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견표명의 한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사가 검찰 직원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며 이는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보다 그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부분의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 “입맞추기 시간 충분...”이라고 한 부분과 “...축소수사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과적으로 박씨와 공씨 등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등의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1999년 9월 16일자에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소속직원에 대한 수뢰혐의사건 수사에 있어서 소속 직원이 사전에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러 늦게 체포함으로써 결국 검찰은 당초 고소내용에 나타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다른 혐의로 구속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검찰 수사의 의문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관계, 특히 원고들이 검찰직원을 싸고돌기 위해 사건

을 축소하여 수사하였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1심 판결문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8집, pp.94~107 참조)

판 결 문

사 건 : 2000나3132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김태현
2. 차유경

원고, 항소인 : 3. 신경식

4. 최해중
5. 김호정
6. 김선철
7. 박성수
8. 김용남
9. 이봉상
10. 이종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최학래

2. 이상현
3. 김태경
4. 김창석

피고들 주소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한겨레신문사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 조 광 희, 이 상 희,
윤 복 남

변 론 종 결 : 2002. 1. 17.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 6. 7. 선고

99가합88873 판결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태현, 차유경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김태현, 차유경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위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들과 원고 김태현, 차유경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태현, 차유경에게 각 3억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6.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자로 발행되는 일간지 '한겨레'의 사회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만약,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매일 각 100만씩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5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정정보도문(다만 네 번째 문단을 “본 신문사의 위와 같은 왜곡보도로 인하여 서울지검 형사 4부 소속 10명의 검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0. . .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본 신문사 및 사회부장 이상현, 기자 김태경, 김창석 등은 각자 위 검사 10명에게 각 금 5천만원씩 총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로 변경한다)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제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매일 각 100만씩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63, 갑제5, 7, 8, 9호증, 을제1, 2, 4호증, 을제5호증의 4 내지 7, 을제6호증의 6, 7, 10, 11, 12, 13, 29, 5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피고 김창석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실 소속 박대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였던 서울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이라 한다) 소속 검사들로서, 이 사건 수사 당시 원고 김태현은 형사 4부장, 원고 차유경은 부부장으로 주임검사, 나머지 원고들은 형사 4부 소속 검사들이었다.

(2) 피고 회사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간지 ‘한겨레’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상현은 이 사건 보도 당시 사회부장이었으며, 피고 김태경, 김창석은 이 사건 기사를 취재, 작성하였던 피고 회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이 사건 수사 및 보도 경위

(1) 김부전은 1999. 7. 13. 서울지검에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박대만(직급: 주사보)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 사실의 요지는 김부전의 남편 김석중이 1998. 10. 26.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되자 위 박대만이 김부전에게 김석중의 피의 사실을 축소하고 석방되도록 도와준다는 금품을 요구하여 1998. 10. 27. 김용현을 통하여 2,000만원(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1998. 11. 4. 김용현, 최대성을 통하여 2,000만원(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등 모두 4,000만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건 처리를 하여주지 않았으니 박대만을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김부전은 당시에 증거자료로서 돈을 인출한 통장사본, 박대만의 전화를 받고 최대성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김용현이 작성한 진술서와 박대만의 지시로 2,000만원을 찾아 김용현에게 주어 김용현이 2,000만원을 박대만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의 조명호가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2) 고소사건을 접수한 서울지검은 위 고소장을 접수한 1999. 7. 13. 사건을 형사 4부에 소속된 원고 차유경에게 배당하였으나 원고 차유경은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1999. 8. 3. 고소인 김부전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고 그가 제출한 김석중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문을 제출받았을 뿐 피고 회사가 1999. 8. 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기까지 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를 작성한 김용현, 조명호는 물론 박대만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1999. 7. 24. 당시 피고 회사 사회부 기동취재팀에 근무하던 피고 김태경은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이 사건에 대한 제보전화를 받고 데스크에 보고한 뒤 취재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26. 오전 서울지검 사건과에서 김부전이 박대만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전의 집으로 찾아가 고소내용을 취재하면서 고소장을 복사하였다.

그 후 피고 김태경과 당시 서울지검 출입기자이던 피고 김창석은 함께 1999. 8. 초경 이 사건 주임검사이던 원고 차유경을 만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취재하면서 원고 차유경으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른바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있으니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 후 수사에 진전이 없자 위와 같은 취재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여, 1999. 8. 12. '한겨레' 사회면(15면)에 '뒤통챱긴 대검 직원, 공동만 챱긴 변호사'라는 제목의, 같은 달 17. '한겨레' 사회면(14면)에 '피의자 등친 대검직원 계좌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의 각 기사가 보도되었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기에 이르자 원고 차유경은 1999. 8. 12. 곧바로 김부전과 김석중의 각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1998. 10. 27. 김부전의 계좌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이, 같은 해 11. 4. 김석중의 계좌에서 역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1999. 8. 25.부터 위 각 수표의 최종 사용자로 나타난 사람들을 소환하여, 손연희(공만식의 경리) 등 11명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박대만 및 이 사건의 중요참고인들로 지목된 김용현, 최대성 등은 '한겨레'의 1999. 8. 12.자 첫 보도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999. 8. 30. 이후 서울지검에 출석하여, 김용현, 조명호, 조승만에 대하여는 1999. 8. 30., 공만식에 대하여는 1999. 9. 6., 범호균에 대하여는 같은 달 7., 최대성에 대하여는 같은 달 8., 윤희

준에 대하여는 같은 달 9. 각 첫 조사가 실시되었고, 박대만에 대하여는 같은 달 13.에 이르러서 신병이 확보되어 첫 조사가 실시되었다.

(5) 원고 차유경은 위 참고인들 조사 직후 참고인들이 입을 맞추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형사 4부 부장검사인 원고 김태현과 위 문제를 상의하면서 위 박대만의 신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고려하여 형사 4부 검사 전원을 수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99. 9. 13. 형사 4부에서는 원고 김태현이 사건을 총괄하고, 주임검사인 원고 차유경은 박대만에 대한 조사를, 원고 신경식과 박성수는 적용법조에 대한 법리검토를, 원고 최해종은 공만식에 대한 조사를, 원고 김호정은 최대성에 대한 조사를, 원고 김선철은 공만식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고 김용남은 김부전에 대한 조사를, 원고 이봉상은 김용현에 대한 조사를, 원고 이종근은 박대만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6) 위 수사 결과 원고 차유경은 애초 김부전이 고소하였던 내용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김부전은 1998. 10. 27. 남편 김석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에서 일이 빨리 해결되도록 할 목적으로 조명호를 통하여 김용현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면서 이를 박대만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으나, 김용현은 위 돈을 박대만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돈 중 100만원은 조승만에게 경비조로, 100만원은 그 날 저녁 술값으로 각 지급한 후 나머지 1800만원은 공만식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1998. 11. 4. 김용현이 김부전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보관하다가 그 중 100만원은 술값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900만원을 최대성을 통하여 공만식에게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원을 전달받은 위 공만식은 위 돈을 김용현

과 마신 술값으로, 최대성의 경비조로, 피해자 범호균의 치료비 및 생활비조로, 피해자 유희준과의 합의를 위한 경비조로, 기타 변호사 비용조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위 수사과정에서 원고 차유경은 박대만에 대하여는 그가 범호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0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김석중과 범호균간의 합의를 알선하였고 1998. 11. 28, 범호균이 김석중으로부터 합의금으로 8500만원을 받게 되자 그 가운데 2000만원을 자신의 채권으로 회수한 사실을 밝혀 내어 이를 토대로 1999. 9. 13, 박대만, 김용현, 최대성, 공만식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한 후 1999. 9. 21, 기소하였다.

(7)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애초 김부전의 고소내용과 달리 나오자, 1999. 9. 16, '한겨레' 사회면(15면)에는 위 사건에 관해서 "검찰 '자기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과 "돈 받은 혐의 대검계장 조사 한 달 보름 뒤 체포", "입맞추기 시간 충분 ... 뒤늦게 다른 혐의로 구속"이라는 소제목 하에, "구속된 피의자 부인에게 잘 봐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된 대검찰청 직원 등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검찰이 고소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다른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같은 달 22일 서울 지검 형사 4부에 배당했으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한 달 보름이 훨씬 넘는 지난 13일에서야 박씨와 사채업자 공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부인 김씨가 4천만원을 박씨에게 전달했다는 고소내용은 밝히지 못한 채 이를 중간에서 공씨 등이 가로챈 것으로 결론 내면서, 폭행사건의 피해자 범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과적으로 박씨와 공씨 등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충분한 시

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박씨는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속된 김씨 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과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 김창석, 김태경이 작성한 별지 제1 기사내용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별지 제1 기사내용을 '이 사건 기사'라 한다).

(8)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후, 원고 김태현이 피고 회사에 위 보도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그 이후에는 별지 제2 기사내용과 같이 수정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9) 한편,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만, 김용현, 최대성, 공만식은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 10. 26, 각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박대만은 벌금 1000만원, 김용현과 최대성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공만식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대만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000. 2. 1, 형 및 추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 원고 김태현, 차유경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이 사건 기사가 원고 김태현과 차유경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은 기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위 원고들이 구속된 피의자 부인에게 잘 봐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된 대검찰청 직원을 뒤늦게 체포하여 그로 하여금 관련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시간을 줌으로써 당초의 혐의를 밝혀 내지 못하고 다른 사소한 혐의만을 밝혀 내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익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할 위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

가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사실의 적시와 논평이 혼재된 것인데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나 논평의 전제가 된 사실들이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는 달리 그 의견 또는 논평 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혹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표현의 공공성에 있어서는 함께 판단하되 진실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공성

이 사건 보도는 검찰에 근무하는 직원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의문점이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2) 진실성

(가) 의견의 표명인지의 여부

이 사건 기사 중에서 제목 부분의 “돈 받은 혐의 대검계장 조사 한 달 보름 뒤 체포”, “뒤늦게 다른 혐의로 구속”이라고 한 부분과 기사 부분의 “구속된 피의자 부인에게 잘 봐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된 대검찰청 직원 등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검찰이 고소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다른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서울지검 형사 4부(부장 김태현, 주임 검사 차유경)는 15일 구속된 피의자를 빨리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가로채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 계장 박대만(38·7급)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고향친구인 사채업자 공만식(38)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됐던 김 아무개(39) 씨와 피해를 당한 건축업자 범아무개 씨 사이에서 사건 합의를 알선해주고 범씨가 받은 피해 합의금 8500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받아 채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씨 등 3명은 가해자 김씨한테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거나 유혹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애초 박씨는 구속된 김씨의 부인 김부전(39) 씨에 의해 ‘남편이 풀려나려면 담당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혐의를 줄여 주겠으니 4천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지난 7월 13일 고소됐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같은 달 22일 서울지검 형사 4부에 배당했으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한달 보름이 훨씬 지난 13일 예야 박씨와 사채업자 공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부인 김씨가 4천만원을 박씨에게 전달했다는 고소내용은 밝히지 못한 채 이를 중간에서 공씨 등이 가로챈 것

.....

으로 결론내면서, 폭행사건의 피해자 범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실제로 박씨는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속된 김씨 가족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과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바 있다”는 부분은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중 제목 부분의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 “입맞추기 시간 충분...”이라고 한 부분과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과적으로 박씨와 공씨 등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떠한 기사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위 부분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구속된 피의자 부인에게 잘 봐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된 대검찰청 직원을 뒤늦게 체포한 위 원고들이 당초의 범죄 혐의를 밝혀 내지 못하고 그보다 가벼운 혐의 사실로 기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아 관련자들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시간을 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검찰이 검찰직원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진실성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표현 행위 자체가 어떠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 있어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나머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전제사실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전제가 되는 사실들은 진실성이 있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다만, 어떠한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의 표명 자체가 전제사실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잘못된 의견이라면 이는 허위 사실의 주장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면책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기사 중 피고들의 의견을 표명한 부분이 나머지 사실을 적시한 부분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잘못된 결론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사 중 위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원고들이 고의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어 축소수사를

하였다고 읽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고, 특히 고소인이 증거자료로서 통장사본과 관련 참고인의 진술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사건을 배당받은 후 20여 일이 지난 1998. 8. 3. 고소인 조사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1998. 8. 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도한 뒤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김부전과 김석중의 예금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한 점, 김용현, 최대성 등을 비롯한 중요 참고인들이 자취를 감추었다가 1999. 8. 30.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박대만에 대하여도 1999. 9. 13.에야 조사가 이루어진 점, 박대만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반복되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기사는 검찰 직원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며 이는 사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보도보다 그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 중 앞서 본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는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보아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들의 위 의견표명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김태현, 차유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소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에 '서울지검 형사 4부', '검찰'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실제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기사가 형사 4부 소속 검사 전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의 정정보도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태현, 차유경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2. 7.

재판장 판사 채영수
판사 정진경
판사 권기훈

제1 기사 내용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

돈 받은 혐의 대검계장 조사 한 달 보름 뒤
채포 입맛추기 시간 충분 ... 뒤늦게 다른 혐의로 구속

구속된 피의자 부인에게 잘 봐 주겠다며 거

.....

액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된 대검찰청 직원 등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검찰이 고소된 혐의는 밝혀내지 못한 채 다른 수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 4부(부장 김태현, 주임검사 차유경)는 15일 구속된 피의자를 빨리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 계장 박대만(38·7급)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고향친구인 사채업자 공만식(38)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됐던 김아무개(39) 씨와 피해를 당한 건축업자 범아무개 씨 사이에서 사건 합의를 알선해주고 범씨가 받은 피해 합의금 8500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씨 등 3명은 가해자 김씨한테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거나 유혹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애초 박씨는 구속된 김씨의 부인 김부전(39) 씨에 의해 “남편이 풀려나려면 담당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 혐의를 줄여 주겠으니 4천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지난 7월 13일 고소됐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같은 달 22일 서울지검 형사 4부에 배당했으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한달 보름이 훨씬 지난 13일에야 박씨와 사채업자 공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부인 김씨가 4천만원을 박씨에게 전달했다는 고소내용은 밝혀지 못한 채 이를 중간에서 공씨 등이 가로챈 것으로 결론내면서, 폭행사건의 피해자 범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결과적으로 박씨와 공씨 등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 등을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박씨는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속된 김씨 가족들을 여러차례 만나 사과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바 있다.

제2 기사내용

합의 알선 뒤편 검찰직원 구속

거액요구 혐의는 못 밝혀

서울지검 형사 4부(부장 김태현, 주임검사 차유경)는 15일 구속된 피의자 부인에게 잘 봐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소(〈한겨레〉 8월 12일치 15면)된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실 계장 박대만(38·7급)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고향친구인 사채업자 공만식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됐던 김아무개(39) 씨와 피해를 당한 건축업자 범아무개 씨 사이에 사건 합의를 알선해주고 범씨가 받은 합의금 8,500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씨는 구속된 김용현(단란주점운영), 최대성(회사원) 씨 등 2명과 함께 가해자 김씨의 부인 김아무개(38) 씨한테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뒤 합의추진과정에서 술값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인 김씨는 ‘박씨가 남편이 풀려나려면 담당 직원에게 손을 쓰고 압수된 장부를 없애 혐의를 줄여야 한다며 4천만원을 요구해 박씨 후배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고

소했지만, 이 돈이 박씨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공씨 등이 가로챈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한테서 변호사비용으로 2천만원을 받고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김아무개(53)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징계 통보할 방침이다.

정정보도문

본 신문사에서는 지난 1999. 9. 16.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라는 제목과 “돈 받은 혐의 대검계장 조사 한 달 보름 뒤 체포, 입맞추기 시간 충분 ... 뒤늦게 다른 혐의로 구속”이라는 소제목 아래 이른바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 소속 박대만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소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지검 형사 4부 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위 사건을 축소하였고 위 박대만으로 하여금 다른 관련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줌으로써 검찰이 자신의 직원들과 관련된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위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지검 형사

4부에서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진실규명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였고, 결코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위 박대만으로 하여금 사건 관련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신문사에서는 위 보도로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위 ‘대검 정보담당관실 소속 박대만 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소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지검 형사 4부 검사들이 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였던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본 신문사의 위와 같은 왜곡보도로 인하여 서울지검 형사 4부 소속 10명의 검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1999. . .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본 신문사 및 사회부장 이상현, 기자 김태경, 김창석 등은 연대하여 위 검사 10명 중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에게는 각 금 3억원씩, 나머지 검사들에게는 각 금 2억원씩 등 총 2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신문사가 1999. 9. 16.자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게재하였던 위 기사는 허위의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

미국 판결

영양보조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에 대한 소송은 전략적 소송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Metabolife International Inc. v. Wornick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 2001년 9월 5일 선고)

판결 요지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원고 회사가 제조하는 다이어트 보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방영한 텔레비전 방송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캘리포니아주 법률상의 '공공의 참여를 겨냥한 전략적 소송 금지 조항(Anti-SLAPP)'에 근거하여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사건 개요

1999년 5월에, WCVB-TV라는 보스턴의 한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은 Susan Wornick 기자가 취재한 3편의 집중 취재물을 방영하였다. 이 취재물은 영양 보조 식품인 Metabolife 356의 안전성과 과거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제조 혐의로 중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Metabolife의 설립자 Joseph Ellis의 사회적 영향력을 비판하였다.

방송국이 보도 내용을 철회하려 하지 않자, Metabolife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법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Metabolife가 문제를 제기한 8가지 항목의 방송 내용 중 다음 4가지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졌다.

1) "이 상품을 먹을 경우 당신은 사망할 수 있다."라는 비만 전문가인 하바드 의과대학원 George Blackburn 교수의 발언

2) "우리가 질문한 모든 전문가들은, 주된 성분인 Ma huang 때문에 Metabolife 356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는 Wornick의 발언.

3) Metabolife 356이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된 Wornick의 발언

4) Metabolife와 메스암페타민은 에페드린(ephedrine)이라는 동일한 주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Wornick의 발언.

Wornick, Blackburn 박사, 방송국 그리고 방송국의 모회사인 피고들은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Cal. Civ. Proc. Code §425.16)상의 '공공의 참여를 겨냥한 전략적 소송을 금지하는 조

항(Anti-SLAPP)'에 따라 Metabolife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다.¹⁾

지방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상품을 먹을 경우 당신은 사망할 수 있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그 발언이 글자 그대로, 또는 Metabolife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시된 대로 이 상품을 먹어도 당신은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심은 Metabolife가 허위성을 일견(prima facie)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시된 대로 먹을 경우의 안전성을 증명한다고 주장되는 Metabolife의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의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징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Daubert v. Merrell Dow Pharms., Inc.(43 F3d 1311) 판례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지방법원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또한 지방법원은, 위 발언이 Metabolife와 같은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확립되지 않은 상태의 과학 지식에 대한 합리적 해석으로서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가 질문한 모든 전문가들은, 주된 성분인 Ma huang 때문에 Metabolife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는 발언에 대한 주장을, 위와 마찬가지로 Daubert 판례에 근거하여 배척하였다. 지방법원은 또한 그 발언이 과학계의 통일된 견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는 Metabolife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etabolife 356이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된 Wornick의 발

언에 관한 주장은, Vanderbilt 대학의 연구결과에 대한 그녀의 발언이 글자 그대로 진실이라는 이유에서 배척되었다. 지방법원은 또한 설사 Vanderbilt 대학의 연구결과에 대한 그녀의 발언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도, Metabolife가 긍정적인 안정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허용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Metabolife는 그 명예훼손적인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Metabolife와 메스암페타민은 모두 그 주요 성분이 에페드린(ephedrine)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Wornick의 발언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실이라고 판단하였다. Ma huang과 에페드린 사이에 얼마 안 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묘사하기 위하여 Metabolife가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작은 차이점이 시청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신하게 해 준다는 이유에서, 지방법원은 Metabolife측의 전문가 증언을 무시하였다.

Metabolife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판결 이유

1. “이 상품을 먹을 경우 당신은 사망할 수 있다.”는 발언.

지방법원은, Metabolife가 “이 상품을 먹을 경우 당신은 사망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관하여 허위성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1) Anti-SLAPP는 Anti-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줄임말이다. 이 조항의 목적은 보호받아야 할 의사표현을 억제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무의하고, 성가신 소송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은 Metabolife와 같은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확립되지 않은 상태의 과학 지식에 대한 합리적 해석(rational interpretation)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였다. Metabolife 356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을 고려해 볼 때, 피고 Blackburn의 발언은 현실적 악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불가능하다고 지방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서, Blackburn 박사의 발언이 전후 문맥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 Wornick과의 인터뷰 중 단지 일부분만이 방영되었고, 그 나머지는 편집에서 잘려나갔다. 인터뷰 중 관련 부분의 전체 내용을 보면, Blackburn 박사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DA의 청문회 서류들은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인 1999년에 인터넷에 올려졌고, 그들은, 내가 알고 있듯이 오늘도, 이 상품과 비슷한 유형의 것을 먹은 사람들로써 심장병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따라서 남용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품을 먹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Blackburn 박사는 자신의 인터뷰 이후 그 인터뷰 내용이 추후 편집된 것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발언은 두 가지 주장을 담고 있다. 첫째, Metabolife 356과 유사한 제품을 이용한 사람들이 심장병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는 것과, 둘째, Metabolife의 남용은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Metabolife측은 이 사건에서 위 두 가지 사항의 진실성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Blackburn 박사에게 대한 소송을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합리적 해석 원칙(rational interpretation doctrine)’이라는 것은, Wornick과 나머지 피고들에 의하여 편집된 내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리적 해석에 대한 보호는 작가에게 모호한

내용을 표현할 때 필요한 해석 권한을 용인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조에 이바지한다. (Masson v. New Yorker Magazine Inc., 501 U.S. 496, 519) Blackburn 박사의 발언에 대한 나머지 피고들의 편집행위가 발언의 의미를 변화시킨 것은 분명하다. 비록 전체 발언 내용이 합리적 해석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남용이 사망을 낳을 수 있다는 핵심적인 제한을 잘라내어 그 발언의 의미를 바꾸어버린 후에는 Wornick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은 그 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우리가 질문한 모든 전문가들은, 주된 성분인 Ma huang 때문에 Metabolife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발언

과학적 증거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Metabolife가 지시된 대로 이용하였을 때의 Metabolife 356의 안전성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지방법원은, 위 발언의 내용이 Metabolife 356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과학계에서 어떠한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처럼 명예훼손적으로 해석된다는 Metabolife의 주장에 대하여, Wornick의 ‘모든 전문가(every expert)’라는 표현이 그와 같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Metabolife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과학계에 의견의 일치가 있다는 의미라는 주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Metabolife는 표현된 단어들이 합리적으로 볼 때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피고들이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의도하였다는 점을 배심원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로써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Dodd v. Am. Broad. Co.,

145 F3d 1053, 1063-1064)

“우리가 질문한 모든 전문가들은, 주된 성분인 Ma huang 때문에 Metabolife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발언은 적어도 Metabolife가 주장하는 의미, 즉 과학계에서의 의견 일치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현실적 악의에 관한 쟁점은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전혀 행하여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에 의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 발언이 Metabolife측에서 주장하는 명예훼손적인 의미일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을 파기한다.

Wornick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들의 신원도 Metabolife측으로서는 중요하다. 그 전문가들의 진술 없이는, 의견 일치가 있다는 점을 반박하려는 Metabolife의 시도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증거개시절차는 이 사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3. Vanderbilt 대학의 연구결과와 관련된 발언

Metabolife는, Vanderbilt 대학의 연구 결과를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된 방송 내용은 Metabolife가 안정성 테스트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은 주로 “임상적으로 테스트를 거친 Metabolife라고 부르던 그 광고를 기억하십니까?”라는 서두의 부분에 기초한 것이다. 그 주장은 Wornick이 알고 있던 다른 연구결과를 언급함이 없이 Vanderbilt 대학의 연구결과를 도외시함으로써 방송에서 유효한 안전성 테스트가 행하여지지 않은 것처럼 암시하였다는 것이다.

Vanderbilt 대학의 연구결과에 관한 발언은 말 그대로 진실이었고, 설사 그 발언이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암시한다고 하더라도 Metabolife는 안전성에 대한 유효한 긍정적인 연구결과

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암시적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방법원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방법원이 아시아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배제한 결정을 파기하고, Daubert 판례의 고려사항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바이며, 위 발언이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암시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마찬가지로 파기하고 환송한다. 환송 후 심리결과 아시아 동물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시 배제되더라도 그 때에는 그 지방법원의 분석결과가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Metabolife 356과 메스암페타민이 동일한 주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

Metabolife측은 Metabolife 356과 메스암페타민이 강력한 심장 자극제로서 규제받는 물질인 에페드린을 주성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권리구제를 청구하였다. 그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Metabolife 356의 활성 성분인 합성 에페드린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페드린인 Ma huang과 다르다는 내용의 전문가 증언을 제시하였다.

지방법원은, Ma huang과 에페드린 사이에 얼마 안 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묘사하기 위해 Metabolife가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법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작은 차이점이 시청자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신하게 해 준다는 이유에서, Metabolife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지방법원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만약 어떠한 발언이, 진실이라고 주장되는 발언이 끼칠 영향과 다른 영향을 독자 또는 시청자의 생각에 미칠 수 있다면, 그 발언은 실질적으로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Metabolife는 메스암페타민에 사용된 합성 에페드린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에페드린과 상당히 다른 효능과 흡수 작용을 갖는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지방법원은 특히 이 주장이 너무 기술적이어서 시청자들이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주장을 바로 배척하였다.

우리는, 자연적인 형태의 물질과 합성적인 형태의 물질간의 차이, 특히 그 차이가 효능과 흡수 작용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지방법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더블 에스프레소와 레귤러 커피 한 컵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리적이 배심원은 효능과 흡수 작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중대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합성 에페드린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페드린이 기술적으로 동일한 물질이라는 반대의견이 옳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기록만으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 불충분하다. 우리는, Metabolife 356과 메스암페타민의 주된 성분이 동일하다는 발언이 실질적으로 진실이라고 법률적인 판단으로서(as a matter of law) 결론을 내린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환송된 후 지방법원은, 효능과 흡수 작용에 관하여 Metabolife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그 증거들이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는 한 고려할 때, 합성 에페드린과 자연적으로 생성된 에페드린이 동일한 주성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진실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험 평가,

아시아의 동물 연구 결과 등에 관하여 Metabolife측이 제출한 과학적 증거를 배제시킨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허위성에 관한 쟁점과 관련하여 연방 민사 소송규칙 56(f)항에 의거하여 Metabolife측이 신청한 증거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Metabolife가 오로지 피고들에게만 접근이 가능한 정보를 특정하여 그 증거개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파기한다.

한편, 언론 자유를 둘러싼 쟁점과 관련하여, Blackburn 박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한다. Blackburn 박사에 대한 청구는, 그의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다. 나머지 피고들은 편집을 통하여 그의 발언을 중대하게 변경시켰기 때문에, '합리적 해석 원칙(rational interpretation doctrine)'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전문가를 언급한 Wornick의 발언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Metabolife 356과 메스암페타민이 동일한 주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Blackburn 박사의 Anti-SLAPP 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법원의 결정은 유지한다. 다른 피고들의 Anti-SLAPP 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법원의 결정은 파기한다. 이 사건을 좀 더 심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29권 pp.2505-2525.

번역 : 장상균 판사 (서울고등법원)



독일판결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의 사용은 상표법에 위배된다

Oberlandesgericht Hamburg Urteil vom 21. September 2000 -3 U 89/00
(함부르크 고등법원 2000년 9월 21일 자 판결)

관련조문 : 상표법 제14조 2항 2호 및 3호, 민법 제823조 1항, 제1004조

사건 개요

당사자는 'derrick.de'라는 표시를 인터넷 주소로 이용하는 피고의 권리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원고는 1974년 10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범죄사건을 다룬 TV드라마 'Derrick'을 281회 제작·방송한 공영 TV방송국으로 이 프로그램은 평균 8백만명 이상이 시청하였고 약 2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이 작품은 100여 국에 수출되어 외국에서도 방영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 방영되었고 이 작품과 관련한 상품도 판매되었다. 이 외에 인터넷팬사이트, 코믹 연재물 및 인터넷 방영을 위해 제작된 영화가 있다. 2001년에는 연재물을 기초로 영화 'Derrick'이 기획되어 있었다.

1981년 원고는 1979년 3월 31일자(표시에 대한 신청일) 내지 1979년 4월 2일자(노무급부에 대한 신청일)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표시로서의 'Derrick'(번호 1022323)을 등기하였다.

피고는 1997년 11월, 인터넷 주소(제2도메인) 'derrick.de'를 등록하였다. 이 주소 및 회

사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인터넷 해결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고객들이 인터넷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 평균 약 2천번의 접속이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 원고의 TV 연속물 팬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와는 약 10번의 접속이 행해졌다.

1999년 11월, 원고는 다툼이 있는 도메인의 이용 금지 및 도메인의 양도를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원고는 범죄연속물 'Derrick'은 가장 성공한 연속물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하게 인지되어 있다는 것은 양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또한 인터넷팬사이트는 연속물 Derrick은 피고의 진술과는 달리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단지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동명의 인터넷도메인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표시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성이 'Derrick'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메인 이름의 선택을 정당화할 사유는 피고에게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공통적이며

중립적인 진입사이트는 원고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구하였다.

1. 인터넷 주소(도메인) 'Derrick.de'의 거래상 사용을 피고에게 금지한다.

2. 도메인 'derrick.de'를 변경할 경우 그 등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여 DENIC.eG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토록 한다. 추가로, 인터넷주소(도메인) 'Derrick.de'를 피고가 말소토록 한다.

3. 인터넷주소(도메인) 'derrick.de'의 이용으로 인한 손해 및 발생되고 있는 동종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이유

피고의 항소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없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등기된 표시 'Derrick'과 관련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 지방법원이 피고가 문제의 인터넷 도메인 derrick.de를 상표법 제14조 2항 3번을 위반하면서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법 제14조 5항에 의거하여 부작위청구권(I호) 및 상표법 제14조 6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II호)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이 외에 피고의 동의에 의한 인터넷 도메인 derrick.de의 말소와 관련, 발생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도메인의 양도청구권은 없다. 이 범위에서의 항소는 성공했다.

1. 원고를 위하여 등기된 표시(TV방송프로그램) 및 상표법 제14조 2항 2호의 의미에서의 문제가 된 인터넷 도메인간의 혼동위험은 존재치 않는다. 혼동위험에 관한 판단은 개별사실에 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표가 비슷하다는 것과 상표로 특징되는 물품이 비슷하다는 것 및 이전에 있던 상표의 특정력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물품의 유사성과 상표의 유사성은 서로 조정될 수 있고 상호작용한다(EuGH, NJW 1999 S.933 - Canon: BGH AfP 2000 S. 279 = WRP 2000 S. 529 (531)- ARD-1:WRP2000S.535- ATTACHE/ TISSERAND). 문제가 제기된 상표가 특히 특정력이 크면 클수록 혼동의 위험에 대한 보호범위는 더욱 더 증가된다.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원고는 Derrick의 표시를 광범위하게 원고가 방영한 TV범죄물시리즈 및 이와 연관되어 부수적으로 제작된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표시는 "TV방송프로그램"이라는 특정력을 획득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문제가 된 인터넷도메인을 가지고 "인터넷 해결책"이라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자신의 고객들이 인터넷에 진입토록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TV방송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유사점이 없다. 피고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와 피고가 밝히고 있는 내용을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표현하고 때에 따라서는 잠정적인 이용자와도 접촉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의 범죄물시리즈는 TV를 통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순수한 오락에 관한 것이다. TV에서는 수용자에게 의미 있는 범죄에 관한 역사들을 또 다른 매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동반적 내지 보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범죄시리즈의 주요 배우들이 거의 문화적 인물로서 자리매김했고 독자적인 것이 되었다. 이는 피고가 제3자를 위하여 인터넷프리젠테이션을 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프리젠테이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의 범죄

연속물은 이른바 인터넷 영화 또는 원고가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 등장하는 목적물이므로 물품 내지 노무급부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 물품 내지 노무급부가 비슷하다는 것은 물품이나 노무급부가 동일한 매체(이곳에서는 인터넷)에 등장한다는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노무급부가 비슷하다는 것은 노무급부가 제3자를 위하여 제공되고, 제3자가 물품 또는 노무급부를 이행하고 상품이나 노무급부가 상표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하다는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노무급부 제공이 비슷하다는 것은 피고가 급부를 라디오방송국(라디오 RPR)에게 이행하였다는 것으로부터는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TV프로그램의 방영을 위한 Derrick 표시의 증대된 특정력에도 불구하고 혼동의 위험은 없다.

2. 지방법원이 타당하게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derrick.de는 원고의 표시를 상표법 제14조 2항 3호에 따라 침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표시 Derrick의 의미가 내국에서 '알려진' 표시에 관한 것이고 그 표시의 구별력 및 가치평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약 25년이 넘는 기간동안 범죄연속물의 이름으로서 사용한 표시 Derrick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획득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이미 판례가 의미(BGHZ 28 S. 320 ff. - Quick, Baumbach/Hefermehl, Wettbewerbsrecht, 23. Aufl., Allg. Rdn. 138a ff.)하고 있는 바의 유명한 표시로서 보아질 수 있다. 이것에 관하여 원고가 혼동의 위험의 관점 하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한, 민법 제823조 1항 및 1004조에서 도출되는 청구권이 문제가 된 도

메인 derrick.de의 이용에 있어서는 원고의 사업에 대한 침해가 될 경우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한 표시에 대한 그와 같은 특별 보호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고려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홀로 사용되는 표시가 가지고 있는 현저한 거래의 효력을 요건으로 한다. 범죄연속물 'Derrick'의 제목에 그와 같은 현저한 거래의 효력이 귀속되는지 여부는 말하자면 통용정도/인지도는 거의 70~80%에 이르므로(BGH GRUR 1991 S. 468 ff. - Avon; HansOLG GRUR 1973 S. 94 ff. (96)과 비교하시오) 전체 국민과 관련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상표법 제14조 2항 3호에 의한 '알려진' 상표의 보호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높은 인지도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1) 상표법 제14조 2항 2호의 의미에서의 '알려진' 상표인 경우 신고된 상표에 대한 보호는 상표에 의하여 이해되는 물품 또는 노무급부와 관련되어 대중의 중요한 부분이 상표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사례의 모든 중요한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특히 상표의 시장 점유율, 집중도, 지리적 범위 및 그 이용 기간, 기업이 그 축진을 위하여 행한 투자의 범위 등이다(EuGH, WRP 1999 S. 1130 ff. (1132) - Chevy).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원고의 표시는 동명의 TV시리즈를 통하여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진 표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원고의 'Derrick'이란 표시는 상표법 제14조 2항 3호의 의미에서의 알려진 표시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 인터넷 도메인 derrick.de의 이용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는 문제가 되는 이차적 도메인에도 이의가 제기된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이용하고 있다. 도메인의 끝부분 'de'(말하자면 일차적 도메인)는 말할 것도 없이 지리적인 출처 즉 독일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 derrick.de에 있어 유일하게 특징적인 것은 derrick이라는 구성요소이다.

피고는 derrick.de를 자신의 특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메인은 인터넷상에서 단지 주소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숫자로 표시되는 IP주소를 사용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단순하고 수월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소가 형성되기 위해 숫자로 된 주소 외에도 논리적으로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이것에 관하여 이른바 die Darstellung von Renck, Kennzeichenrechte versus Domain-Names, NJW 1999 S. 3587 ff. (3588)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나 좀 더 수월하게 표시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기능은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주소화됨으로써 특징인 또는 특정 영업의 출처를 동시에 나타내 주는 데에 기여한다(das Urteil des Senats v. 5. 11. 1998 in NJW-RR 1999 S. 625 -emergency.de 과도 비교하십시오). 이곳에서의 사례가 바로 이와 같다. 피고는 도메인을 명백하게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인터넷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에 있는 그의 노무급부가 바로 derrick.de의 표시 하에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3)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재화 개념의 양도는 앞서 상술한 상황을 이유로 물론 인정될 수 없다. 그밖에도 이 점에 대한 항변은 분명치 않다.

개별적 '방문자'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장래에도 접속할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제공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표시를 이용함으로써 Derrick 표시가 나타내고 있는 거래계의 특별한 가치평가가 피고 및 그가 제공한 노무급부에 있어서 양도된다고 꼭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혼동은 있을 수 있다.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자는 물론 'derrick.de'에 있는 'derrick'표시가 원고의 표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미지 전도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노무급부는 첫째로 피고의 주소가 성공리에 선정되고, 원고의 표시와 연결된 물품에 관한 관념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와의 관련 및 그의 노무급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알려진 상표가 지닌 가치평가를 직접적으로 자신의 노무급부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지 전도는 일어나지 않으나 그가 자신의 인터넷 도메인으로 그 알려진 표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호되는 상표를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해당 표시의 인지도를 이용하고 주의를 불러모으는 광고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실제로 상표법 제14조 2항 3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려진 상표의 매력 및 광고 가치는 두드러지는 개성 또는 제작품의 특별한 성질과는 관계없이 상업화되고, 그리하여 상표의 구별력이 침해, 왜곡된다(Fezer, Markenrecht, 1999, Rdn. 427 zu §MarkenG). 이곳에서의 사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피고는 'Derrick'의 표시를 자신의 인터넷 도메인에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주의를 끌어 모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derrick의 단어가 단지 사소한 정도가 아닌 범위에서 비자의적으로 범죄연속물과

독일판결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의 사용은 상표법에 위배된다

Oberlandesgericht Hamburg Urteil vom 21. September 2000 -3 U 89/00
(함부르크 고등법원 2000년 9월 21일 자 판결)

관련조문 : 상표법 제14조 2항 2호 및 3호, 민법 제823조 1항, 제1004조

사건 개요

당사자는 'derrick.de'라는 표시를 인터넷 주소로 이용하는 피고의 권리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원고는 1974년 10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범죄사건을 다룬 TV드라마 'Derrick'을 281회 제작·방송한 공영 TV방송국으로 이 프로그램은 평균 8백만명 이상이 시청하였고 약 2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이 작품은 100여 국에 수출되어 외국에서도 방영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 방영되었고 이 작품과 관련한 상품도 판매되었다. 이 외에 인터넷팬사이트, 코믹 연재물 및 인터넷 방영을 위해 제작된 영화가 있다. 2001년에는 연재물을 기초로 영화 'Derrick'이 기획되어 있었다.

1981년 원고는 1979년 3월 31일자(표시에 대한 신청일) 내지 1979년 4월 2일자(노무급부에 대한 신청일)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표시로서의 'Derrick'(번호 1022323)을登記하였다.

피고는 1997년 11월, 인터넷 주소(제2도메인) 'derrick.de'를 등록하였다. 이 주소 및 회

사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인터넷 해결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고객들이 인터넷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월 평균 약 2천번의 접속이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 원고의 TV 연속물 팬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와는 약 10번의 접속이 행해졌다.

1999년 11월, 원고는 다툼이 있는 도메인의 이용 금지 및 도메인의 양도를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원고는 범죄연속물 'Derrick'은 가장 성공한 연속물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하게 인지되어 있다는 것은 양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또한 인터넷팬사이트는 연속물 Derrick은 피고의 진술과는 달리 인터넷 이용자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단지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동명의 인터넷도메인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표시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성이 'Derrick'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메인 이름의 선택을 정당화할 사유는 피고에게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공통적이며

중립적인 진입사이트는 원고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구하였다.

1. 인터넷 주소(도메인) 'Derrick.de'의 거래상 사용을 피고에게 금지한다.

2. 도메인 'derrick.de'를 변경할 경우 그 등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에 반대하여 DENIC.eG에 대하여 피고가 승인토록 한다. 추가로, 인터넷주소(도메인) 'Derrick.de'를 피고가 말소토록 한다.

3. 인터넷주소(도메인) 'derrick.de'의 이용으로 인한 손해 및 발생되고 있는 동종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판결이유

피고의 항소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없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등기된 표시 'Derrick'과 관련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 지방법원이 피고가 문제의 인터넷 도메인 derrick.de를 상표법 제14조 2항 3번을 위반하면서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법 제14조 5항에 의거하여 부작위청구권(I호) 및 상표법 제14조 6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II호)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이 외에 피고의 동의에 의한 인터넷 도메인 derrick.de의 말소와 관련, 발생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도메인의 양도청구권은 없다. 이 범위에서의 항소는 성공했다.

1. 원고를 위하여 등기된 표시(TV방송프로그램) 및 상표법 제14조 2항 2호의 의미에서의 문제가 된 인터넷 도메인간의 혼동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혼동위험에 관한 판단은 개별사실에 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표가 비슷하다는 것과 상표로 특징되는 물품이 비슷하다는 것 및 이전에 있던 상표의 특정력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물품의 유사성과 상표의 유사성은 서로 조정될 수 있고 상호작용한다(EuGH, NJW 1999 S.933 - Canon: BGH AfP 2000 S. 279 = WRP 2000 S. 529 (531)- ARD-1:WRP2000S.535- ATTACHE/ TISSERAND). 문제가 제기된 상표가 특히 특정력이 크면 클수록 혼동의 위험에 대한 보호범위는 더욱 더 증가된다.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원고는 Derrick의 표시를 광범위하게 원고가 방영한 TV범죄물시리즈 및 이와 연관되어 부수적으로 제작된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표시는 "TV방송프로그램"이라는 특정력을 획득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문제가 된 인터넷도메인을 가지고 "인터넷 해결책"이라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자신의 고객들이 인터넷에 진입토록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TV방송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유사점이 없다. 피고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와 피고가 밝히고 있는 내용을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표현하고 때에 따라서는 잠정적인 이용자와도 접촉의 가능성을 열어 놓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의 범죄물시리즈는 TV를 통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순수한 오락에 관한 것이다. TV에서는 수용자에게 의미 있는 범죄에 관한 역사들을 또 다른 매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동반적 내지 보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범죄시리즈의 주요 배우들이 거의 문화적 인물로서 자리매김했고 독자적인 것이 되었다. 이는 피고가 제3자를 위하여 인터넷프리젠테이션을 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프리젠테이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의 범죄

연속물은 이른바 인터넷 영화 또는 원고가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 등장하는 목적물이므로 물품 내지 노무급부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 물품 내지 노무급부가 비슷하다는 것은 물품이나 노무급부가 동일한 매체(이곳에서는 인터넷)에 등장한다는 것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노무급부가 비슷하다는 것은 노무급부가 제3자를 위하여 제공되고, 제3자가 물품 또는 노무급부를 이행하고 상품이나 노무급부가 상표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하다는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노무급부 제공이 비슷하다는 것은 피고가 급부를 라디오방송국(라디오 RPR)에게 이행하였다는 것으로부터는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TV프로그램의 방영을 위한 Derrick 표시의 증대된 특정력에도 불구하고 혼동의 위험은 없다.

2. 지방법원이 타당하게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derrick.de는 원고의 표시를 상표법 제14조 2항 3호에 따라 침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표시 Derrick의 의미가 내국에서 '알려진' 표시에 관한 것이고 그 표시의 구별력 및 가치평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약 25년이 넘는 기간동안 범죄연속물의 이름으로서 사용한 표시 Derrick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획득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이미 판례가 의미(BGHZ 28 S. 320 ff. - Quick, Baumbach/Hefermehl, Wettbewerbsrecht, 23. Aufl., Allg. Rdn. 138a ff.)하고 있는 바의 유명한 표시로서 보아질 수 있다. 이것에 관하여 원고가 혼동의 위험의 관점 하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한, 민법 제823조 1항 및 1004조에서 도출되는 청구권이 문제가 된 도

메인 derrick.de의 이용에 있어서는 원고의 사업에 대한 침해가 될 경우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한 표시에 대한 그와 같은 특별 보호는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고려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홀로 사용되는 표시가 가지고 있는 현저한 거래의 효력을 요건으로 한다. 범죄연속물 'Derrick'의 제목에 그와 같은 현저한 거래의 효력이 귀속되는지 여부는 말하자면 통용정도/인지도는 거의 70~80%에 이르므로(BGH GRUR 1991 S. 468 ff. -Avon; HansOLG GRUR 1973 S. 94 ff. (96)과 비교하시오) 전체 국민과 관련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상표법 제14조 2항 3호에 의한 '알려진' 상표의 보호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높은 인지도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1) 상표법 제14조 2항 2호의 의미에서의 '알려진' 상표인 경우 신고된 상표에 대한 보호는 상표에 의하여 이해되는 물품 또는 노무급부와 관련되어 대중의 중요한 부분이 상표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사례의 모든 중요한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특히 상표의 시장 점유율, 집중도, 지리적 범위 및 그 이용 기간, 기업이 그 축진을 위하여 행한 투자의 범위 등이다(EuGH, WRP 1999 S. 1130 ff. (1132) - Chevy).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대 원고의 표시는 동명의 TV시리즈를 통하여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가진 표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다.

원고의 'Derrick'이란 표시는 상표법 제14조 2항 3호의 의미에서의 알려진 표시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 인터넷 도메인 derrick.de의 이용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2) 피고는 문제가 되는 이차적 도메인에도 이의가 제기된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이용하고 있다. 도메인의 끝부분 'de'(말하자면 일차적 도메인)는 말할 것도 없이 지리적인 출처 즉 독일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메인 derrick.de에 있어 유일하게 특징적인 것은 derrick이라는 구성요소이다.

피고는 derrick.de를 자신의 특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메인은 인터넷상에서 단지 주소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숫자로 표시되는 IP주소를 사용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단순하고 수월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소가 형성되기 위해 숫자로 된 주소 외에도 논리적으로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이것에 관하여 이른바 die Darstellung von Renck, Kennzeichenrechte versus Domain-Names, NJW 1999 S. 3587 ff. (3588)과 비교하시오). 그러나 좀 더 수월하게 표시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기능은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주소화됨으로써 특징인 또는 특정 영업의 출처를 동시에 나타내 주는 데에 기여한다(das Urteil des Senats v. 5. 11. 1998 in NJW-RR 1999 S. 625 -emergency.de 과도 비교하시오). 이곳에서의 사례가 바로 이와 같다. 피고는 도메인을 명백하게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인터넷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에 있는 그의 노무급부가 바로 derrick.de의 표시 하에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3)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재화 개념의 양도는 앞서 상술한 상황을 이유로 물론 인정될 수 없다. 그밖에도 이 점에 대한 항변은 분명치 않다.

개별적 '방문자'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고 장래에도 접속할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제공하는 것과 관계가 있고, 표시를 이용함으로써 Derrick 표시가 나타내고 있는 거래계의 특별한 가치평가가 피고 및 그가 제공한 노무급부에 있어서 양도된다고 꼭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혼동은 있을 수 있다.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자는 물론 'derrick.de'에 있는 'derrick'표시가 원고의 표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미지 전도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노무급부는 첫째로 피고의 주소가 성공리에 선정되고, 원고의 표시와 연결된 물품에 관한 관념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와의 관련 및 그의 노무급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알려진 상표가 지닌 가치평가를 직접적으로 자신의 노무급부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지 전도는 일어나지 않으나 그가 자신의 인터넷 도메인으로 그 알려진 표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호되는 상표를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해당 표시의 인지도를 이용하고 주의를 불러모으는 광고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실제로 상표법 제14조 2항 3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려진 상표의 매력 및 광고 가치는 두드러지는 개성 또는 제작품의 특별한 성질과는 관계없이 상업화되고, 그리하여 상표의 구별력이 침해, 왜곡된다(Fezer, Markenrecht, 1999, Rdn. 427 zu §MarkenG). 이곳에서의 사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피고는 'Derrick'의 표시를 자신의 인터넷 도메인에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주의를 끌어 모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derrick의 단어가 단지 사소한 정도가 아닌 범위에서 비자의적으로 범죄연속물과

함께 원고의 표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지방법원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래에, derrick의 표시는 더 이상 원고가 한 표시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공하는 것도 연상케 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정도에서 원고의 표시의 구별력이 침해되는데, 왜냐하면 다름이 있는 표시가 원고가 제공하는 것 외의 관계에서도 다시 발견된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이의가 제기된 표시가 가진 매력의 점점 상실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침해에 대한 위험을 원고는 인내할 필요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범피연속물을 접하지 않은 젊은 층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Derrick이 장년층에게만 널리 알려졌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장래에도 젊은 세대만이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결코 고려될 수 없는 것으로서 오히려 인터넷이용이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연령층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조건은 보다 단순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표시는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받으며, 인터넷의 활발한 이용 행태를 언급하는 것은 피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4) 피고가 도메인 derrick.de를 등록하여 이를 이용한 점을 살펴 보건대 이미 언급한 규정의 의미상 보다 더욱 부당하게 행위하였다. 도메인 이용의 정당화 사유는 존재치 않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표시에 대한 위험을 저지하

기 위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는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성인 'Derrick'을 사용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그의 생년월일을 일별하여도 그가 우선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는 동조할 수 없다. 피고는 동명인의 권리를 가지고 보호받을 수는 없다. 사실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영업운영자로서 자신의 이름하에 활동할 권리가 있다(BGH GRUR 1960 S. 33 ff. -Zamk; GRUR 1966 S. 623 ff. (625) -Kupferberg). 이 원칙은 상표법 제23조 1호에서도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성명보호가 이름에만 해당되는지 여부(so Fezer, a.a.O. Rdn. 20 zu §23 MarkenG), 성이 이름과 동시에 사용될 경우 특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이것에 관하여는 Ingerl/Rohnke, MarkenG. 10 zu §23 MarkenG m.w.N.과 비교하시오)는 확실치 않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성명사용은 혼동을 야기할 의도에서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의 성실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성실한 성명사용은, 성명자가 이른바 거래에서 혼동의 위험을 가능한 한 없애기 위해 필요하고 과도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성명권을 남용한 것이 된다(BGH GRUR 1985 S. 389-Familiennamen; GRUR 1993 S. 579 ff. (580) -Roemer GmbH). 따라서 상표법 제14조 2항 3호의 의미에서의 유명상표를 방해하는 사례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측의 표시와의 구별력에 대한 침해를 가능한 피하기 위해 그에게 가능하고 과도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자신의 성을 특히 드러나게 했으며 그것을 제1차적 도메인 'de'를 첨부한 채 그냥 놔두고 회사로서

성으로서 인터넷주소로서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성의 일부분을 단절시켜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표시에 대해 드러난 위험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피고의 성은 거래 영역에서-피고가 생각한 바와 같이 그의 이름(Koestner)보다는 더욱 특징적으로 두드러져 나타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이의가 제기된 표시의 인지도의 정도에 있어서 피고의 성이 특별히 독특하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이유는 대중의 대부분이 그를 동일한 이름의 범죄연속물로써 연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와 같은 사례는 아닐지라도 피고 성의 특별한 특징성이 문제가 된 사용을 정당화시키기에는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의가 제기된 알려진 표시를 고려해 보건대 구별력이 있는 것을 첨부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의가 제기된 표시와 거리를 두는 것이 요구되고 피고에게 그것은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 이른바 'derrick.koestner.de'가-이의가 제기된 표시와의 제기된 연상과는 관계없이-문제가 된 주소보다 덜 특징적인 것인지 분명치 않다. 다른 첨부물도 물론 고려할 만 하다.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을 첨부할 의무는 표시의 우선권에 있어서 앞선자인 피고에게 있다.

5) 피고는 실제로 이의가 제기된 표시에 대하여 우선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견해에 반대하여 그의 생년월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업상의 거래계에서 도메인 'derrick.de'의 이용시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Derrick Koestner라는 피고의 이름이 아니라 영업상의 거래에서 'derrick.de'의 사용은 우선권의 문제에 있어서 척도가 되는 표시인데, 그 이유는 후자만을 피고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이름만 다름 중에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표시신청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인 1997년 11월 10일

이후에 비로소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원고에게 'derrick.de'의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피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상표법 제14조 6항). 피고가 자신의 성 및 원고의 표시간의 동일성에 대해 알았다면, 범죄연속물 'Derrick'이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은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인터넷도메인의 등록 시점에서 이름의 구성요소인 Derrick을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표시에 대한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야기된 이의가 제기된 표시에 대한 위험을 피고는 고려했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침해를 구별력이 있는 첨부물에 의해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것이다. 원고는 손해산정이 권리다툼의 기판력이 있는 종결까지는 아직 결정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

4.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양도청구권은 원고에게 없다. 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변경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지방법원의 견해를 따를 수 없다.

이와 같은 청구권은 민법 제823조 1항, 1004조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민법 제12조에 대한 OLG Muenchen in WRP 1999 S. 955 ff. (960) - 'shell.de': 이에 반하여 제한적으로 GRUR 2000 S. 519 ff. (520 f.) - 'rolls-royce.de': 견해를 표명치 않고 있는 것으로 OLG Ffm., WRP 2000 S. 645 - 'weideglueck.de').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장애제거청구권은 침해의 제거에 관한 것이다. 침해자는 이 외에 피해자의 위치를 개선하는데에 동참할 의무는 없다(OLG Hamm, CR 1998 S. 241 ff. (243) - 'krupp.de'). 그러나 그와 같은 개선은 어떤 경우에도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해 권리가 있는 DENIC eG가 자신의 등록조건에 따라 가능하고 요구되는 바를 양도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행해질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가 다툼이 있는 도메인 이름의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의심할 바 없다 할 지라도 장애제거에 단지 이바지하는 규정으로부터 양도청구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뮌헨의 고등법원(WRP 1999 S. 955 ff. (960) - "shell.de") 이 양도청구권을 이유있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해 행한 고려를 당해 고등법원은 고지할 수 없다. 문제가 제기된 양도청구권에 관하여 특허법 제8조 1항 2 또는 민법 제894조를 수용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정의 흠결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치 않다. 피해자에게 제거청구권, 이곳에서는 다시 말하면 말소청구권 외에 문제가 된 인터넷도메인에 대한 양도청구권을 부여할 불가피성은 없다. 그 양도청구권의 수여는 장애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을 피해자에게 주게 될 것이다. 양도청구권은 - 이제 권리침해로 인하여 - 피해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특정한 인터넷도메인의 사용이 이른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상황으로부터 피해자는 그의 편에서 생각하여 현재의 도메인의 사용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다라는 결론을 아직은 강요하듯이 도출해 낼 수는 없다.

이밖에 양도청구권은 비교할 수 있는 사례에 있어서도 존재치 않는다. 특허법 제8조 1항 2의 규정은 다툼이 있는 사례와 비교될 수 없는 사례를 규율한다. 그 규정의 적용은 신청에 관한 권리자라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요건으로 한다. 이는 실질적 상황에서 등기 부예의 등기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요하는 민법 제894조의 규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상표권은 중개상표(상표법 제11, 17조)의 허가되지 않는 등록에 관한 사례에 있어서만 동일하게 양도청구권을 인정한다. 이 밖에 법률은 악의의 경우에 말소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다(상표법 제50조 1항 4호).

장애 제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피고가 자신의 차단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충분하고, 그리하여 다툼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원고에 대한 계속적인 침해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 이는 DENIC eG에서 도메인 'derrick.de'의 말소로써 행해질 수 있고, 그 말소에 대하여 원고는 'Derrick'의 표시에 대한 자신의 절대권에 대한 확정된 침해로 인하여 청구권을 보유한다.

이 사안에서는 양도를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배척되고, 위임없는 영업운영 및 부당이득에서 나오는 양도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배척된다.

따라서 피고는 추가적으로 행한 원고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말소하여야만 한다.

출처 : AfP Zeitschrift fuer Medien- und Kommunikationsrecht 32. Jahrgang Heft 3-2001, ss. 219-224

번역 : 손원선 (법학박사)

□

영국사례 1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받을 만한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 및 게재는 보도실천강령에 위배

신청인 Cilla Black양은 2001년 6월 17일자 Sunday Sport지에 게재된 “놀랍군 놀라워! Cilla가 토플리스를” 제하의 기사와 사진이 보도실천강령 제3조(사생활)를 어겼다고 PCC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그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신청인은 문제의 사진이 스페인에 소재한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촬영된 것으로 이 곳은 공공장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도 볼 수 없는 장소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될 만한 장소에 있었고 사실 목욕을 하기 위해 토플리스 차림으로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사진은 신청인의 사생활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홀로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공표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은 한 신문사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신문사도 이와 같은 사진을 게재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Sunday Sport지 편집장은 신청인의 불만 해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다른 제삼자에 의해 사진이 재공표되는 것을 유발하려 하지는 않았다. 편집장은 문제의 사진 복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으나 신청인은 여전히 PCC가 이 사안에 대해 판단해 주

기를 원하고 있다.

평 결

PCC는 신청인 Black양이 자신의 사생활이 충분히 보장될 만한 장소에 있었다는 점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대중에게 관찰되지 않을 곳에 있었다. PCC는 문제의 사진을 보도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정당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획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편집자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진의 촬영 및 게재는 보도실천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저없이 결론지었다.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이성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리라 믿는 장소에 있을 때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

영국사례 2

특정 종교나 민족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보도실천강령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한 신문독자가 Daily Express지의 2001년 11월 15일자 “단지 이슬람교인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광신도라는 비난을 참아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기사가 이슬람교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부정확하고 차별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13조(차별)를 위배한 것이라며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부정확할 뿐더러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슬람교인들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기자의 비평은 일반적인 통념상 부정확하고 그 기사작성 동기 측면에서 보면 민족주의자임을 엿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이슬람교인들이 빈라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아내를 구타하거나 자녀들을 동의 없이 결혼시키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사실 절대 다수의 이슬람교인들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신문사측은 문제의 기사는 논

평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보도실천강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도실천강령 제1조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내용이 개인의 종교나 인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보도실천강령 제13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신문사측은 문제 기사에 대한 이슬람교위원회측의 입장을 추후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 결

PCC는 보도실천강령 제13조(차별)는 개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의 기사가 종교나 인종을 이유로 특정 인물들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거나 경멸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도실천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정확성에 대해서도 기자가 모든 이슬람교인들에 대한 실제

적 묘사를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슬람 사회에서 발생했다고 보이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보았다.

문제의 기사는 기자가 자신의 견해를 전체적으로 보도실천강령의 범주 내에서 서술하였으며, 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작성한 내용이 모두 순수한 사실에 입각한 설명 내지 논평임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C는 이 기사의 부분적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했으나 신문사가 이슬람측을 대표할 만한 집단의 반박문을 원 보도와 동등하게 게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불만신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PCC는 이 불만신청사건에 대해 평결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안의 보도에 있어 대부분의 신문사 보도 기준이 높은 수준이며, 비주류나 소수 집단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PCC가 수많은 불만신청 사건을 처리하지만, 신청인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논평의 대부분은 보도실천강령을 위배하지 않은, 비난할만한 보도내용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PCC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도할 때 적용되는 보도실천 강령의 주된 조항에 대해 설명하며, 편집자는 기사의 사실적 주장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과 사실적 주장과 논평의 구별을 확실히 할 것 그리고 기사 내

용이 특정 종교 및 인종적 차별에 근거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을 때 공정한 반박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을 신청인에게 지우고 있으므로 문제의 보도내용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신문평의회에서 이 사실을 다루기 전에, 신청인 부부가 1992년 10월 이래로 Robertson지역에서 선거인 자격이 있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났다.

신청인 부부는 Woy Woy주소는 자신들의 주된 거주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수년 동안 ALP의 Woy Woy지회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청인은 또한 Woy Woy지역에 소재한 자신의 집 주소와 주택자금의 게재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이러한 신문사의 행동이 자신의 생활과 소유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청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호주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의 주소를 모두 밝힌 것은 불필요한 처사라는 점에 동의했다. □

호주사례 1

정치인의 부모인 신청인이 주소를 변경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불만신청은 정당

호주신문평의회는 Vincent Fazio씨가 The Australian지를 상대로 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인은 The Australian지 2000년 12월 7일자 기사에서 신청인 부부가 Woy Woy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Robertson지역 연방 의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여 자신이 소속 정당 지부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여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이 미국 노동당(ALP)의 종신 당원이며, 뉴사우스웨일즈의 주의회(NSW Legislative Council)의 의원인 Amanda Fazio의 부모라고 밝히

고 있다. 또한 다른 노동당 정치인들과 연관돼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호주신문평의회는 관점에서 볼 때, 그 기사는 신청인이 "중요한 자리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불리한 선거상황'을 조장한 책

호주사례 2

자살사건을 공익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 보도하였으므로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호주신문평의회는 한 청소년이 자살한 배경에 대해 취재보

도한 Sunday Mail지를 상대로 제기된 불만신청을 기각했

다.

지난 2001년 8월 1일, 한 10대 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와 동료 학생들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Sunday Mail지는 8월 12일 이 학생의 사진을 거의 1면 전면에 걸쳐 게재하고, 두 개의 관련 기사와 가족 사진 등을 2면에 걸쳐 구성하였다.

이 학교 교사인 신청인 O'Dwyer씨는 이 비극적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인은 Sunday Mail지가 게재한 사진으로 인해 또 다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보도의 주요 기사내용은 신문평의회의 자살보도에 관한 보도준칙, 즉 고인의 친지나 동료의 고통을 배가하는 보도,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부추기는 보도, 자살 장소 혹은 자살행위 도구를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하는 보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Sunday Mail지는 이 사건은 공중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으로 공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안이며, 고인가족들의 전적인 협조 속에서 신중을 기해 보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신문평의회의 보도준칙을 포함하여 정부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살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충고와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편지를 포함하여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독자의 편지와 함께, 문제기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독자들의 편지가 있어 이를 함께 보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은 긍정적이라는 내용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 신문사의 설명이다.

신문평의회는 이 사건 보도와 관련 Sunday Mail지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려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 보도의 주된 기사는 특별히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젊은이들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있으며, 보다 작은 기사는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방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의 이 보도는 자살한 청소년 가족의 슬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위험성을 줄여 보고자한 데 그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기사작성 배경과 관계없이, 신문평의회는 Sunday Mail지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무시하

여 비난받아야 마땅하며, 비양심적인 보도행위라는 신청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만한 신문사의 무감각한 보도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다른 10대 청소년에게 모방 자살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청인을 비롯한 몇몇 독자들은 이 보도로 인해 상처를 받았겠지만 Sunday Mail지는 이 사건 보도 후, 정신분석학자를 비롯 자신들의 보도를 비판하는 독자들의 편지를 게재했다는 점을 신문평의회는 고려했다.

자살관련 보도와 실제 자살행위 증가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어떠한 연구결과도 아직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나, 책임있는 보도는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고려된다고 할지라도 Sunday Mail지의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 형식과 내용은 일부 대중과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보도준칙을 위배했다는 어떠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불만신청은 기각되었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비방 목적으로 기사작성한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종언 판사)는 지난 2월 6일 국창근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내일신문 신명식, 진병기 기자에 대해 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해 “법률적 허위사실은 성립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무죄이나 국창근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여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내일신문, 2002. 2. 8.(2면)

MBC, '총령본존...' 대북분 승소 "프로 목적 공식적이고 진실성 있다" 손해·정정보도 기각

98년에 방송됐던 MBC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 (연출 윤길용·이용석 방송 11월 24일)에 대해 지난 1월 16일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위법성만 인정하고 세계정교측이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 방송 등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안영률)는 판결문에서 “제작진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목적이 상당부분 공익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취재과정에서 제작진들이 무단으로 원고의 침실 등을 촬영한 점 등은 사생활 침해로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MBC 법무팀은 “이번 소송은 3년여 동안 31회의 변론과 15명의 증인이 나오는 등 MBC 소송 역사상 가장 길고 격렬했던 소송”이라며 “그러나 세계정교측의 항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건 외에도 세계정교측이 제기한 방영금지처분에 대해서는 MBC가 승소를, 반론보도청구소송은 MBC가 1심에서 일부 패소했지만 3심에서는 승소했다.

또 윤길용 PD는 주거침입으로 피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벌금형에 불복해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같은 이유로 9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해자들도 모두 고소당한 상태로 벌금형 선고 및 명예훼손에 걸려있기도 하다.

'총령본존...'은 자신을 세계정교의 창시자이라며 인류를 구원할 신으로 자처하며 숭배의 대상으로 군림해오던 하정효란 인물의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과 현금 강요 등을 파헤쳤던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 세계정교측에서는 안상운 변호사가 MBC측에서는 박형상 변호사가 각각 대리인으로 나와 관심을 끌기도 했다.

PD연합회보, 2002년 2월 1일자(2면)

언론피해구제 시민단체 출범, 피해임은 80여 명 발기인으로 참여

언론의 오보나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단체의 피해구제를 지원할 전문적인 시민언론단체가 출범했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지난 31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에는 그동안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던 변호사,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 8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창립대회에 앞서 언론피해구제운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벌이기 위해 센터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기인에는 최장집 교수(조선일보 보도피해자), 이장희 교수(월간조선 보도피해자), 황석영 씨(조선일보 보도피해자), 한상진 교수(조선일보·KBS 보

도피해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언론피해구제 외에도 정보공개청구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언론보도 피해자들의 온라인 및 정례 상담 활동을 벌이고 언론소송 지원과 시민강좌도 열 예정이다.

PD연합회보, 2002년 2월 1일자(2면)

검사들, 한겨레신문에 패소

언론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추론 가능한 의견을 제시했다면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7일 김모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는 ‘...축소수사라는 지적’ 등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과 ‘돈받은 혐의 대검계장 조사 한 달 보름 뒤 체포’ 등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 적시 부분으로 구성됐다”며 “사실 적시 부분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는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았

다”고 밝혔다.

검사들은 지난 99년 대검계장 박모 씨가 구속된 남편의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사건 처리를 안했다며 김모 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 뒤늦게 박씨 신병을 확보, 고소내용과는 다른 혐의로 구속하자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 2. 7.

민변 등 4개 단체 한국농단판권 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2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을 좌익운동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9개 단체가 원한 한국농단과 발행인 이도형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민주노총, 현대자동차노조 등 5개 단체에 대해 원고 승소 판

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변과 전국언론노조 등 4개 단체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 “1억8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변 등은 “한국농단은 97년 2월호에

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 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와 노조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연합뉴스, 2002. 1. 22.

MBC, ‘시청자주권위원회’ 발족

MBC가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자율기구인 ‘시청자주권위원회’를 오는 2일 공식 발족하고, 자사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시청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MBC는 이와 관련 서규석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을 위원장에, 주동황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황덕남 변호사를 각각 위원으로 선임했다.

MBC 박우성 시청자부장은 “방송권력이라는 구태와 낡은 의식을 버리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MBC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시청자주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됐다”며 “MBC방송으로 시청자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앞으로 MBC가 직접 나서서 손상된 시청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 TV 또는 라디오로 방송된 뉴스나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청자가 방송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 ‘시청자주권위원회’는 해당 국·실장에게 통보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 피해구제 방법을 의결하게 된다.

MBC는 특히 ‘시청자주권위원회’를 사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규정해 의결사항에 대해 해당 국·실장이 이행하고

록 구속력과 강제력을 부여했으며, 심의결과를 시청자 프로그램인 ‘TV속의TV’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안에 따라 물질적 보상 등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MBC는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자격을 프로그램에 의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으로 한정하고 기업 또는 단체의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이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자협회보, 2002. 1. 1.(2면)

"보도자료서 식명처리, 명예훼손 안돼"

보도자료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더라도 위반자가 식명 처리됐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5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6일 벤처기업 P사가 고발단계에서 법규위반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을 통해 실명이나 공개돼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금감원의 보도자료 자체는 법규위반 사실을 기술하면서 위반 주체를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보도자료 내용만으로 위반자가 특정화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0년 2월 발표한 인터넷 직접공모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P사가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주식을 공

모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고 이 내용은 곧 언론을 통해 P사와 이 회사 대표이모 씨의 실명이 공개된 채 보도됐다.

이에 따라 P사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금감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02. 1. 6.

국정원 직원 선통사 손배소 제기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31일 "국정원 직원이 윤태식 씨의 패스2의 설립·성장에 유착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세계일보와 국민일보를 상대로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국정원측이 패

스21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한 적도 없고 국정원 관계자들도 로비 명목으로 윤씨에게서 금품이나 주식을 받은 일이 없는 데도 국정원과 윤씨가 유착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 언론사는 "구 안기부와

국정원이 15년 동안 윤씨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국정원 전 직원이 윤씨 회사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 등이 드러났고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1. 12. 31.(29면)

신광속 차관, 중앙일보상대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신광속 법무부 차관은 13일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 씨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중앙일보사와 담당기자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차관은 소장에서 "진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이

른바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중앙일보가 터무니없고 근거없는 보도로 명예와 인격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2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신차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진씨에게서 현금 1억원이 든 골프가방을 건네 받았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신차관의 소송은 성급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2001. 12. 14

기사내용 진실되면 명예훼손 안돼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8일 작가 박모 씨가 "사생활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신의 스토킹 범행사실을 보도한 여성일간지 및 주간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익성을 위한 사실보도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이 박씨를 특정, 스토킹 사실을 적시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토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되며 '릴레이 스토킹' 등 다소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여성소설가 S씨에게 자신의 나체사진과 음란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주간지 등이 이를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모 일간지와 시사월간지 등에 칼럼을 쓰고 소설을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1. 12. 28

진승현 씨, 조선일보 상대 16억 소송

‘진승현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받고 있는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 씨는 21일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담당기자 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진씨는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본인이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으로 조성

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일이 없다”며 “일부 문제가 되는 대출금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조선일보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왜곡보도해 기업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보도한 것일 뿐이며, 검찰 재수사를 통해 로비의혹이 드러나

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진승현 씨 600억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진씨가 열린금고 등에서 불법대출받은 2300억원 가운데 600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거나 가차명 금융상품에 숨겨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 2001. 12. 22.

조선일보, 유시민 씨에 1천만원 지급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주)문화방송과 ‘MBC 100분 토론’의 사회자 유시민 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조선일보와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 등을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유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토론도중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로 유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 이미 부분적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의 일부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과 유시민 씨는 조선일보가 지난 4월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사회자’라는 사실을 통해 “신문고시 관련 TV토론을 진행한 유씨가 ‘100인 모임’에 가입, 방송진행자 자격이 없으며 신문고시 찬성쪽으로 편파 진행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1. 12. 20.

정보공개 쇼구 문화방송 원소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중 재판관)는 20일 “1999년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검사 2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감찰조서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방송이 제

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법원에 기록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제기, 권리를 구제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11월 대전 법조비리 관련 검사들의 비리연루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며 해당 검사들의 징계기록 등 공개를 대검찰청 등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중앙일보, 2001. 12. 20.

가수 신해철 씨, 스포츠지 상대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9일 인기가수 신해철(33) 씨와 윤모(24) 씨가 자신들이 곧 결혼할 사이인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모 스포츠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문사측은 신씨에게 1천만원, 윤씨에게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기가수인 신

씨의 결혼 관련 소식은 일반인들도 관심있는 일이지만 윤씨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결혼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나 가족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한 점 등으로 미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99년 뉴욕에서 소개로 만나 간혹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인데도 결혼이 임박한 사이인 것처럼 보도돼 명예 훼손되고 장차 사회생활과 이성교제에도 지장을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1. 12. 19.

- 이효성, 『언론과 민주정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한국언론재단, 『선거보도핸드북』, 2002.
- 한국언론재단, 『세계언론법제동향(2001, 하)』, 2002.
- 한국언론재단, 『언론소송 10년의 판례 연구』, 2001.
- 김도연, “디지털 시대 지상파 방송 재송신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3권, KBS 방송문화원, 2001.
- 김동규, “여론조사 보도 / 조사결과 차이의 원인과 문제”,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 김상우,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사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 김성규, “공공기관 보도자료 인용에 대한 책임한계”, 『관혼저널』, 2001. 겨울.
- 김승수, “방송법 개정 쟁점과 주요 이슈”, 『방송21』, 2002. 1.
- 김영호, “의혹만 있고 실체는 없다”, 『저널리즘』, 2001년 겨울호.
- 김재협, “‘정정보도청구권’ 용어 쓰지 말아야 - 반론보도와 절대적 구별 유감”, 『신문과방송』, 2002. 1.
- 김재협, “언론의 국가기관 비판 어디까지”, 『신문과방송』, 2002. 3.
- 김정탁, “권력기관의 언론소송, 그 안과 밖”, 『관혼저널』, 2001. 겨울.
- 김주연, “언론법제 개선운동의 성찰과 전망”, 『저널리즘』, 2001년 겨울호.
- 김창룡, “한국과 미국의 참사보도 준칙과 취재기자 윤리”, 『관혼저널』, 2001. 겨울.
- 김창룡, “재외 한국의 피의자관련 보도태도 분석”, 『방송21』 2002년 3월호.
- 김호일, “기자윤리 재확립 및 실천방안”, 한국언론재단 · 한국기자협회 개최 제17회 기자포럼 발표논문, 2002. 1. 30.
- 류한호, “의혹 · 폭로 중계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2001년 겨울.
- 박정희, “여론조사 보도 / 조사주제와 의제화의 문제”,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 방정배, “선거, 여론 그리고 방송: 지방 선거와 TV 토론 방송을 중심으로”, 제주방송인클럽 주최 <2002 지방선거와 TV토론> 세미나, 2002. 1. 23.
- 배금자, “검사의 언론상대 명예훼손소송을 반대함”, 『시민과변호사』, 2002년 1월.
- 배병일, “언론사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언론중재』, 2001년 겨울.
- 성낙인,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18회 기자포럼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2002. 2. 19.
- 양삼승,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개선 방안”, 『관혼저널』, 2001. 겨울.
- 양승혜, “동아일보 독자인원위와 MBC 시청자주권위”,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 염규호, “방어 저널리즘과 변호사의 역할” 『언론중재』, 2001년 겨울.
- 윤영철, “공영방송과 공론권 :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 『방송문화연구』 제13권, KBS 방송문화원, 2001.
- 윤재운, “언론평해분쟁판결의 경향”, 『관혼저널』, 2001. 겨울.
- 이규진, “언론자유와 사전제한의 법리”, 『언론중재』, 2001년 겨울.
- 이미경, “반론보도청구소송 추이에 관한 연구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2002. 2.
- 이상식,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기구의 변화 방향”, 『한국방송학보』(통권 15-3호), 2001. 가을.
- 이승선, “언론의 저작물에 나타난 취재행위의 형사법적 위법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1년 겨울(46-1호).
- 이승선, “반론권 행사에 있어서 전략적 회피와 역이용의 문제점 : 방송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통권15-3호), 2001. 가을.
- 이용식, “현장에서 본 선거보도의 문제”, 관훈클럽 주최 〈선거와 언론〉 세미나, 2002. 3. 1~2
- 이원락, “언론학자가 본 주식수수 사건”,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 이재진, “최근 언론소송의 추세와 특징”, 『관훈저널』, 2001. 겨울.
- 이필재, “기자가 본 주식수수의 문제”,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 이효성, “저널리즘 : 언론의 후보 공개 지지의 득과 실”,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 이효성,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와 그 법적 문제”,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18회 기자포럼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2002. 2. 19.
- 임상원, “비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 관훈클럽 주최 〈선거와 언론〉 세미나, 2002. 3. 1~2
- 임 항, “제언21 : 이런 관행 고치자 / 인용 똑바로 하자”,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 장호순,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의 문제점”, 『관훈저널』, 2001. 겨울.
- 장호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립을 위한 과제”, 방송위원회 주최 〈선거방송 전문가 토론회〉 발표논문, 2002. 1. 30.
- 정재철, “자사이익, 정파 성향따라 보도 제각각”, 『저널리즘』, 2001년 겨울호.
- 정진석, “대한제국 최초의 신문지조례 제정과 그 내용”, 『언론중재』, 2001년 겨울.
- 정희성, “호주 및 뉴질랜드의 언론피해구제기구 현황과 활동”,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
- 조동시, “언론인 패스21 주식 수수 / 국내외 언론윤리강령”, 『신문과방송』, 2002년 2월호.
- 조동시, “언론사 공정보도기구 58개사에 설치 실제 운영은 38개사”, 『신문과 방송』, 2002년 3월호.
- 조성겸, “선거예측조사 보도의 발전 방안”, 『방송문화연구』 제13권, KBS 방송문화원, 2001.
- 조준원, “늘어나는 언론소송,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널리즘』, 2001년 겨울호.
- 조준원, “퇴색된 전가의 보도, 알 권리”, 『방송문화』, 2002년 3월호.
- 최 경,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취재대상자와의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언론중재』, 2001년 겨울.
- 홍성주,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의 현황과 위헌성 논란”, 『관훈저널』, 2001. 겨울.
- 황성기, “경찰공무수행시 동행취재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언론중재』, 2001년 겨울. □

2002년도 정기총회 개최, 박영식 위원장 선출

남궁 진 문화관광부 장관은 3월 27일과 31일, 법원인사이드와 일부 언론중재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원 31명을 새로 위촉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에 따라 4월 1일 오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영식 현 위원장을 재선출했다. 부위원장에 박인순, 송정제 위원, 감사에 신동식, 최중현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이 날 총

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과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운영위원,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

한편 박영식 위원장은 신임 사무총장에 최정진 연합뉴스 상무이사를 임명했다. 최정 사무총장은 연합뉴스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실장, 편집·제작담당 상무이사, 사장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위원회 창립 21주년 기념식 및 이병훈 사무총장 이임식 열려

위원회는 창립 21주년을 맞아 3월 29일 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기념식에서 위원장은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목표를 향해 주인의 의식을 갖고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최영훈 기획실 총무팀, 김문성 중재심의실 심의1팀, 우정임 제주사무소 직원에게 유공직원표창을, 조남태 기획팀 차장, 강현석 총무팀 차장, 정희성 조사연구팀 차장, 권오근 심의2팀 차장, 황명자 부산사무소 직원에게 장기관속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1996년부터 6년간 사무총장을 맡아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이병훈 사무총장의 이임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이임식에서 직원들은 감사패와 꽃다

발을 증정했다.

한편 이병훈 사무총장은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사무처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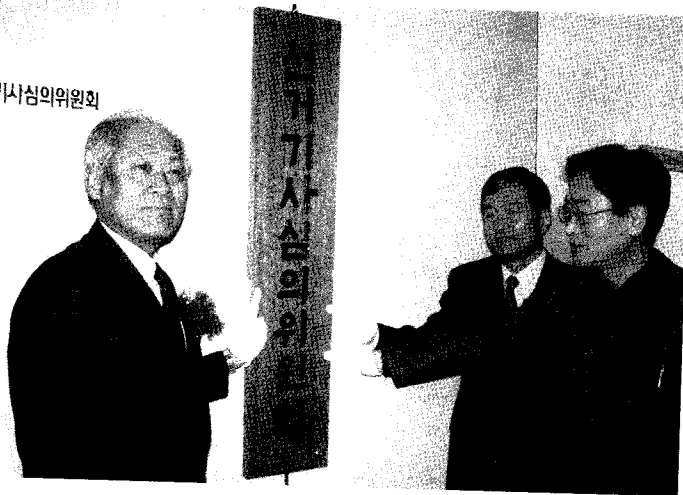
위원회는 2002년 1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사무처 인사를 단행했다.

중재심의실 심의2팀 차장	권 오 근
대전사무소장	임 득 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180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선거기사심의 업무를 시작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으로 양삼승 변호사(서울제3중재위원)를, 부위원장으로 박기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선출한 후 헌판식을 가졌다.

이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 13일까지 5개월 동안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사항을 심의하여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주의·경고결정을 하며, 선거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사건을 처리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양삼승	변호사(현)
부위원장	박기순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현)
위원	김해도	한국일보 논설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현)
	임춘웅	서울신문 논설주간(이사)
	이경일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국언론재단 이사
	이동화	서울신문 논설위원, 상무이사, 경기대 대우교수(현)
	정동익	월간 말 발행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현)
	전민기	변호사(현)
	권동순	중앙일보 편집부장, 일요서울 편집국장

2001년도 연차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2001년도 언론중재신청사례 및 시정권고사례 등을 수록한 "2001년도 연차보고서"를 3월 30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1년도 한 해 동안 접수 처리한 659건의 언론중재신청사례와 시정권고사례, 통계분석 및 2001년도 위원회 주요 업무실적 등이 수록되어 있다. 중재신청사례 책임편에서는 신청인명 가나다순으로 중재대상 매체 및 처리결과, 법원소송 진행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00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지난 1월 3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1년도 하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가 있었다.

이건용, 이영조 감사는 사무처가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와 예산집행자료 등을 근거로 회계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행예산 모두 적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 명단

새로 구성된 각 중재부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굵은 글씨는 새로 위촉된 위원)

◇위원장

박 영 식 변호사

◇부위원장

박 인 순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송 정 제 전 부산일보 사장

◇감사

신 동 식, 최 중 현 위원

◇운영위원

위원장, 송정제 부위원장, 송선무, 이종욱, 이동명, 조균상, 송기태, 임경숙, 신용준 위원

◇시정권고위원

위원장, 박인순 부위원장, 최선열, 박동섭, 윤 기, 이병훈, 박용배 위원

◇서울제1중재부

조 용 구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 용 학 변호사

배 기 철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최 선 열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제2중재부

황 성 제 서울지법 부장판사

송 선 무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박 동 섭 변호사

이 종 옥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 재 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서울제3중재부

윤 재 윤 서울지법 부장판사

최 광 일 전 대한매일 이사

윤 기 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양 삼 승 변호사

박 주 현 변호사

◇서울제4중재부

이 동 명 서울지법 부장판사

신 동 식 한국여성언론인연합 대표

이 병 훈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박 용 배 전 한국일보 이사

이 건 웅 변호사

◇서울제5중재부

조 관 행 서울지법 부장판사

김 재 덕 전 국민일보 부사장

박 인 순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주 동 황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 금 실 변호사

◇부산중재부

황 형 모 부산지법 부장판사

송 정 제 전 부산일보 사장

오 장 희 변호사

이 성 해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이 의 자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구중재부

최 우 식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 용 근 대구언론발전연구회 회장
박 기 성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복 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정 한 영 변호사

◇광주중재부

장 광 환 광주지법 부장판사
허 광 욱 전 전남일보 논설주간
조 재 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이사
이 연 수 전남과학대 방송영상과 교수
곽 준 흙 변호사

◇대전중재부

윤 병 구 대전지법 부장판사
조 균 상 전 대전일보 논설위원
이 문 욱 전 대전광역시 가정복지국장
박 주 봉 변호사
차 재 영 충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경기중재부

정 덕 모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 건 영 전 경인일보 대표이사
최 중 현 변호사
김 광 욱 수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해 숙 아주대 교수

◇강원중재부

안 영 길 춘천지법 부장판사
한 영 달 전 강원도민일보 전무

김 종 식 변호사

지 규 현 전 춘천MBC 상무
부 경 희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충북중재부

이 한 주 청주지법 부장판사
우 종 인 전 청주MBC 보도국장
오 두 범 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장 공 자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재 중 변호사

◇전북중재부

정 창 남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 영 조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송 기 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허 장 협 변호사
신 환 철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경남중재부

홍 광 식 창원지법 부장판사
장 권 현 변호사
임 경 숙 대한YWCA 동부지역 위원장
박 춘 서 경남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이 병 섭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제주중재부

이 태 섭 제주지법 부장판사
신 용 준 전 한라전문대학장
강 정 홍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현 순 도 변호사
한 립 화 제주대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On-Line 중재 상담실


**불법 제품과 무관한 제품을 함께 보도
하였다면**

경찰 수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종종 불법 증거품들을 비추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제품과 관련이 없는 제품이 보도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경찰청에서는 “우리는 불법제품과 비불법제품을 구분하여 증거품을 전시했다”고 하더군요. 즉 국민이 허가제품과 무허가 제품을 구분하라고 이와 관련된 제품을 모두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법제품, 무허가제품, 허가제품을 구분하여 전시했다군요. 그런데 전시 제품들을 화면에 내보내면서 모두 불법제품들로 무허가이며 과대광고로 임건된 제품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경찰측 말이 맞다면 언론사가 경찰청 의도와 달리 보도를 한 것인데, 그럼 누구의 책임인지?

이 보도로 수십억을 손해보고 부도직전에 처한 기업의 직원이 문의합니다.



문제가 된 보도내용에서 귀하가 근무하고 저선 회사의 제품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를 불법제품이라고 보도했는데, 그 제품이 사실은 불법 제품이 아니라면 이는 잘못된 보도라 볼 수 있으므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어떤 식으로 화면이 방영되면서 어떤 링크가 나갔는지 등의 사항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도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과 언론 중 어느 쪽이 책임이 있

는가 하는 문제 등은 저희 위원회가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보도멘트로 이미지 격하

병역특례인들의 모임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 방송 뉴스프로그램의 시사고발코너에서 촬영협조(인터뷰, 섭외)를 요청하여 그 취재 내용이 1월 31일, 2월 1일 양일에 걸쳐 9시 뉴스에 병역특례의 실상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촬영내용은 문제가 없었으나 결정적으로 여자 아나운서가 특례인을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는 “군입대를 피하려는 청년들에게...”입니다.

병역특례는 곧 군 기피라는 방송을 하여 3만여 특례인과 10만이 넘는 특례출신자들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문제가 된 방송 멘트가 특정 개인을 지칭한 바가 없다면 개인의 이름으로 중재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특례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단체가 존재한다면 그 단체의 명의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해 주십시오.


**잘못된 신문광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신문의 대출관련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저희 집 전화번호로 잘못 기재되어 계속되는 대

질문으로 불면에 시달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전화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전화를 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 광고수정을 요청했지만 이마나간 광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간단하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광고로 인한 피해는 저희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도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중재신청을 하려면...

저는 30년째 미국에서 살며,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 라디오 방송국과 한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24일 방송에서 이 진행자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서 e-mail이 왔어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한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에서 싸우겠는가?' 한국사람들이 거기서 '한국이요' 라고 대답하면 바로 돌려보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과 관련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스개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을 상대로 한 방송에서 특정 소수를 빈정거리며 순식간에 매국노로 폄하하는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중재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fax나 전화로도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중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중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하며, fax나 전화로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국내에 있는 법적 대리인(직계 가족이나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중재신청 절차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방송보도에서 귀하 개인을 지칭했거나 문의하신 분과 관련된 사

항을 잘못 보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 명의로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도내용이 문의하신 분께서 인터뷰할 때 그러한 질문과 답변을 했다는 식이었다면 문의하신 분께서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문의한 내용을 볼 때 이런 경우는 특정 개인이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시 그런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언론인이 중재신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흡연에 관한 보도에 관해서

새해 들어 금연 열풍이 불면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금연보조품의 광고도 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각종 질환 등 불치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문구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흡연자가 불치병에 걸릴 확률은 도대체 몇 %란 말입니까? 담배가 정말 살인무기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고 팔고 피는데, 흡연자에게 그런 정신적 피해는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흡연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면 저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에 의한 피해사항은 저희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아니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집단간의 불신을 조장한 기사에 대해

모 일간지 12. 27.자 3면의 자영업자와 직장근로자간의 소득파악률이 30 : 100이라는 기사 내용에 경악하여 상담

합니다

과연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30%만 파악되어 있을까요? 그럼 자영업자들은 모두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자존심 상하고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이 보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70%의 재산을 숨기게 되었으므로 우리 몇 명의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사실 여부에 대해 모 일간지와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바, 좋은 제언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청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보도에 직접 언급되는 등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렇게 볼 때 문의하신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며, 문의하신 분께서 보도에 언급되었거나 개인을 취재대상으로 한 보도라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하실 수는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독자투고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 방송사의 황포에 분노를 느끼며

12월 23일 모 방송 9시 뉴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회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기자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았 습니다.

방송국으로 찾아가 취재에 응했지만 그건 취재가 아니라 취조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방송 전, 익명이나 모자이크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방송에 얼굴과 실명이 나간 것입니다. 범죄자의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를 완전히 묵살하는 처사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다른 취재 대상자의 경우 뒷모습을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관계자로 언급하면서 본인은 인터뷰한 내용을 실명과 함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켜 버린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방송 고발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다른 밤바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어, 방송직후 피해사례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는 취재 및 방영 또는 실명과 초상이 공표된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는 저희 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명보도에 대한 질의

우리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오락수가 방류되어 시청으로부터 개선명령 및 벌과금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해 모일간지에서 본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현장소장의 개인 실명을 게재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였는 바, 이러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항의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중대한 범죄를 자질러도 개인의 인권을 생각하여 이니셜 처리 등 다른 방법으로 기사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기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문제가 된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단지 개인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저희 위원회가 도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지요?

방송이나 신문의 보도 내용이 편파적인 경우에는 어떻

게 해야 합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 기사를 한국기자가 짜깁기 인용하였고 기사 원문과 다른 방향으로 왜곡 보도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중재신청이 가능합니까?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당사자라 함은 보도에 직접 언급되었거나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이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2001년 12월 9일 '모' 라디오방송국에서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보도해서 억울함을 삼키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오뉴스와 3시뉴스 사건사고 기사내용 중에 "문경경찰서에서 김천시 문당동에 사는 강모 씨가 친구인 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강모 씨는 제 오빠입니다. 제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속이 타셔서 일도 못하시고 술만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경북 문경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살해혐의가 아닌 폭력형의에관한법을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을 모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너무나 과장되게 보도했습니다. 당사자가 사회에 나와 격어야할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은 비록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께 힘이 되고 싶고 또 오빠의 명예까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긴 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문의하신 분의 오빠에 대한 혐의내용이 잘못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사자 본인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당사자 본인의 명의로 하셔야 중

재심리에 출석하실 때에는 가족이나 변호사 등 법정 대라인이 대리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라디오 방송이 경북지역에만 방송되었다면 저희 위원회 대구중재부(053-763-0020)로 중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전국방송이라면 서울중재부(02-732-6031)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내용이 실제로 보도되었다는 사실과 혐의내용이 잘못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방송된 내용의 녹음테이프와 당사자의 혐의사실이 기록된 공식문서 등 증빙자료를 우선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십시오.



합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에 신청한 중재사건이 합의되었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상황에 밀려 합의한 것 같고, 실고자 하는 반론보도내용에 만족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원한 것은, 보도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인 양 부각시킨 부분에 대한 저의 주장을 실고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론내용은 너무나 미약하여, 다시 합의하여 반론문을 실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속히 가르쳐 주십시오.



합의한 내용은 중재부의 권유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한 것으로 이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측이 합의한 속보내용과는 별도로 경찰조사결과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추후 정정보도하고, 기자수첩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게재하기로 약속했으므로 경찰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중재위원들의 중재안을 신청인도 수긍하였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중재위원회의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손실에 관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출문의로 불면에 시달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전화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전화를 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경로를 통해 광고수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나간 광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간단하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광고로 인한 피해는 저희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도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중재신청을 하려면...

저는 30년째 미국에서 살며,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 라디오 방송국과 한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24일 방송에서 이 진행자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서 e-mail이 왔어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한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에서 싸우겠는가?’ 한국사람들이 거기서 ‘한국이요’ 라고 대답하면 바로 틀려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과 관련 인터뷰할 때 그런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스개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을 상대로 한 방송에서 특정 소수를 빈정거리며 순식간에 매국노로 폄하하는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중재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fax나 전화로도 중재신청이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중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중재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셔야 하며, fax나 전화로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국내에 있는 법적 대리인(직계 가족이나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중재신청 절차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방송보도에서 귀하 개인을 지칭했거나 문의하신 분과 관련된 사

항을 잘못 보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 명의로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도내용이 문의하신 분께서 인터뷰할 때 그러한 질문과 답변을 했다는 식이었다면 문의하신 분께서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문의한 내용을 볼 때 이런 경우는 특정 개인이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시 그런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해당 일무를 담당하는 미국 어민국이 중재신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흡연에 관한 보도에 관해서

새해 들어 금연 열풍이 불면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금연보조품의 광고도 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각종 질환 등 불치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문구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흡연자가 불치병에 걸릴 확률은 도대체 몇 %란 말입니까? 담배가 정말 살인무기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아닙니까? 물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고 팔고 피는데, 흡연자에게 그런 정신적 피해는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흡연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면 저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와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에 의한 피해사항은 저희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아니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집단간의 불신을 조장한 기사에 대해

모 일간지 12.27.자 3면의 자영업자와 직장근로자간의 소득파악률이 30 : 100이라는 기사 내용에 경악하여 상담

합니다.

과연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30%만 파악되어 있을까요? 그럼 자영업자들은 모두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라, 자존심 상하고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이 보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70%의 재산을 숨기게 되었으므로 우리 몇 명의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사실 여부에 대해 모 일간지와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하고자 하는 바, 좋은 제언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신청 자격이 있는 당사자는 보도에 직접 언급되는 등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렇게 볼 때 문의하신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자영업자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며, 문의하신 분께서 보도에 언급되었거나 개인을 취재대상으로 한 보도라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저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하실 수는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독자투고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 방송사의 황포에 분노를 느끼며

12월 23일 모 방송 9시 뉴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회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기자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았습

니다. 방송국으로 찾아가 취재에 응했지만 그건 취재가 아니라 취조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방송 전, 익명이나 모자이크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양해도 없이 방송에 얼굴과 실명이 나간 것입니다. 범죄자의 경우도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 보호를 완전히 묵살하는 처사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다른 취재 대상자의 경우 뒷모습을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관계자로 언급하면서 본인은 인터뷰한 내용을 실명과 함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켜 버린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방송 고발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다운 받아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어, 방송직후 피해사례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는 취재 및 촬영 또는 실명과 초상이 공포된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는 저희 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명보도에 대한 질의

우리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오탁수가 방류되어 시청으로부터 개선명령 및 벌과금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해 모일간지에서 본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현장소장의 개인 실명을 게재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였는 바, 이러한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항의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개인의 인권을 생각하여 이니셜 처리 등 다른 방법으로 기사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기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문제가 된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단지 개인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저희 위원회가 도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지요?

방송이나 신문의 보도 내용이 편파적인 경우에는 어떻

게 해야 합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 기사를 한국기자가 짜깁기 인용하였고 기사 원문과 다른 방향으로 왜곡 보도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중재신청이 가능합니까?

R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당사자라 함은 보도에 직접 언급되었거나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이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Q 제발 도와주세요

2001년 12월 9일 '모' 라디오방송국에서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보도해서 억울함을 삼키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오뉴스와 3시뉴스 사건사고 기사내용 중에 "문경경찰서에서 김천시 문당동에 사는 강모 씨가 친구인 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강모 씨는 제 오빠입니다. 제 아버지가 택시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속이 타셔서 일도 못하시고 술만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경북 문경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살해혐의가 아닌 폭력 혐의에관한법을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을 모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너무나 과장되게 보도했습니다. 당사자가 사회에 나와 겪어야할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은 비록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께 힘이 되고 싶고 또 오빠의 명예까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긴 했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R 문의하신 분의 오빠에 대한 혐의내용이 잘못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사자 본인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당사자 본인의 명의로 하시되, 중

재절차에 출석하실 때에는 가족이나 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이 대리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라디오 방송이 경북지역에만 방송되었다면 저희 위원회 대구중재부(053-763-6020)로 중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전국방송이라면 서울중재부(02-732-6031)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내용이 실제로 보도되었다는 사실과 혐의내용이 잘못 보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방송된 내용의 녹음테이프와 당사자의 혐의사실이 기록된 공식문서 등 증빙자료를 우선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십시오.

Q 합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에 신청한 중재사건이 합의 되었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상황에 밀려 합의한 것 같고, 싶고자 하는 반론보도내용에 만족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원한 것은, 보도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인 양 부각시킨 부분에 대한 저의 주장을 싶고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론내용은 너무나 미약하여, 다시 합의하여 반론문을 실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속히 가르쳐 주십시오.

R 합의한 내용은 중재부의 권유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수용한 것으로 이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측이 합의한 속보내용과는 별도로 경찰조사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주후 정정보도하고, 기자수첩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게재하기로 약속했으므로 경찰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중재위원들의 중재안을 신청인도 수긍하였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중재위원회의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손실에 관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 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

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

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 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

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

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 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

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47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 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나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보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



아니? 어떻게 이런 기사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찾아 주십시오.

왜곡되고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심의합니다.
- 선거기사에 대한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및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건을 회부받아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제보해 주십시오. (<http://www.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담: (02)732-6023~4

<http://www.pac.or.kr>